



**예술인
조합을
통한**



**예술인
지원정책
연구**



경기문화재단

목 차

01

영국 예술인협동조합
사례 연구

김선영

06

02

프랑스의 예술인 지원 제도와
예술인 조합 사례 연구

목수정

48

03

예술인을 위한
우산협동조합

임병덕

114



영국 예술인협동조합 사례 연구

김선영(홍익대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I. 서론	IV. 영국의 예술인협동조합 현황 분석
II. 협동조합의 정의와 유형	V. 결론 및 시사점
III. 영국의 협동조합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예술인은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제도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특히 많은 예술인들이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4대보험’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예술인 정책’은 예술인이 다른 직업 집단과 유사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직업’으로서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예술인의 사회권을 실현하는 방안이다(박영정, 2012).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2012년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술인을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이를 증명하면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16년 발의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법안의 경우, 예술인들을 자영업자로 규정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동일한 수준에서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형태로 설계됨으로써 논란이 일었다. 2018년 7월 31일에는 고용노동부 고용위원회에서 “특수형태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 심의를 통해 고용보험 확대 방안이 의결되었으나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최근 들어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매년 자연재해나 여타의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인한 계약 파기, 사업 무산 등의 피해를 감수해온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예술인 고용보험’은 아직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직까지 뚜렷한 기준이 없는 예술인의 보수 책정에 대한 기준 마련이 법 시행에 앞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예술가 중에는 이미 자신 명의의 사업자를 내고 ‘자영업자’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미술작가들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임금 중 일부를 고용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도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민해야 할 부분은 개정 고용보험법은 예술인활동증명을 마친 예술가 중 24개월 중 9개월 이상 일을 한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 직업의 특성상 고용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고용보험법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인들의 고용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 대안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 그중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예술가들 간 자조와 협동을 통해 조합을 영위한다면 고용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2011년 말 「협동조합기본법」⁰¹이 제정되고 2012년부터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8,013개(협동조합 15,956개, 협동조합연합회 80개, 사회적협동조합 1,958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9개)⁰²가 설립돼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2020년 기준). 그러나 협동조합의 건강한 자리매김과 본질로부터 기대되는 사회·경제적 효과의 파생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변철환, 2019)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예술분야에서도 최근 협동조합이 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22개로 전체 협동조합의 약 1%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09개로 증가한 데 이어(박정민, 2018), 2018년에는 634개로 증가하여 전체 협동조합의 약 4.4%를 차지하였다(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 예술인협동조합은 매출도 크지 않고 종사자 수도 적을 뿐 아니라(2018년 기준 평균 정규직원 수: 일반협동조합 2.2명, 사회적 협동조합 3.5명, 예술경영지원센터(2019)) 성공 사례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예술인이라는 직업이 가진 다양성(타입)을 어떻게 공공지원기관에서 수용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01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에 시행되었다. 총 119개 조항과 부칙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02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12월 시행)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분하여 명시하였는데,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정의하였다.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처럼 인증 또는 지정을 받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아니라, 설립신고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수행 사업도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면 특별한 제한이 없다. 법정적립금은 잉여금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당도 이용실적에 따라 가능하다. 만약 청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협동조합에서 정한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리하면 된다. 반면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동의자의 수는 일반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5인 이상이지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로 구성되어야 하며,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한해 소액대출과 상호부조가 부수 사업으로 허용된다.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배당은 금지되어 있으며, 법정적립금도 30% 이상 되어야 하며, 청산하는 경우에도 잔여재산을 국고 등에 귀속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협동조합의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이다. 인가가 필요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관리 및 감독의 책임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다. 또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기획재정부에 있다.

영국은 세계 협동조합 운동의 진원지이다. 영국의 협동조합은 산업혁명 직후 자본주의에 대한 응전으로서 등장했다. 18세기 중엽 올위치와 채텀 지역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제분업자들의 가격담합에 반대하여 제분소와 제빵소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 영국 협동조합 운동이 발단으로 알려져 있다(G.D.H Cole, 2015:235). 이후 ‘협동조합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웬(Robert Owen)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사상인 오웬주의(owenism)를 전파함으로써 근대적 협동조합 운동의 사상적 원류가 되었다(윤형근, 2013; 김형미, 2014; 박주희, 2018 재인용).

이에 본고에서는 세계 최초의 근대적 협동조합이 탄생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예술인 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과 이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책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예술인협동조합은 노동조합(Trade Union)과 구별된다. 노동조합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가들 스스로 움직여 만든다. 이들은 예술인들의 급여, 처우, 작업 환경 등의 문제 해결과 사회보험 제도와 같은 혜택을 위해 활동한다(한석진·김선혜, 2017). 영국은 영국배우조합(UK Equity), Artists Union England(AUE), 스코틀랜드예술가조합(SAU), Musicians' Union(MU), BECTU(Broadcasting, Entertainment, Cinematograph and Theatre Union), APTG(Association of Professional Tour Guides)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기본 소득법 실시, 예술인 최저 임금 제도 실시, 기초 공연예술진흥법 입법 운동 등 ‘3대 권리 운동’을 전개한 공연예술인 노동조합이 대표적이다(유연석, 2017). 그러나 본고에서는 노동조합과는 달리 Birchall(2011)이 정의한 ‘조합원 소유 기업(Member Owned Business)’으로서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사례분석 위주의 문헌연구를 통해 협동조합에 관한 학술 문헌 자료 영국의 협동조합 관련 단체들의 보고서 및 논문 비교, 웹사이트, 관련 기관들이 발간한 간행물 및 보고서 등을 참조하였다.

II. 협동조합의 정의와 유형

1. 협동조합의 정의와 운영원리

협동조합(協同組合, cooperative(coop), co-operative(co-op))은 ‘조합원 소유 기업’(Member Owned Business: MOB)이다(Birchall, 2011). 즉,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규모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상호 협력을 통해 상호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를 통해 형성한 기업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기관 투자가나 주주가 아닌 소비자, 직원, 주민, 농부, 택시 운전사, 예술가 등 회원들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협동조합은 시장과 민간영역에 위치한 기업(enterprise)이자 제3섹터에서 활동하는 자발적 단체(association)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중 하나인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데 있다(장승권 외, 2011). 협동조합은 특정 사회이론이나 개념에 얽매이지 않지만 영리보다는 조합원의 경제적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약자의 연대에 의한 착취 없는 사회, 공통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결합과 상부상조, 공정한 배분, 자조, 자본보다 인간이 우선되는 유토피아의 추구하고 같은 다양한 개념을 추구한다.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1995)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협동조합의 운영원리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ICA의 협동조합 운영원리는 다음과 같다(장승권 외, 2011).

제1원칙: 자발적·개방적 조합원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제2원칙: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

제3원칙: 조합원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제4원칙: 자율성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제5원칙: 교육, 훈련과 정보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제6원칙: 협동조합 간 연대(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제7원칙: 지역사회 기여(Concern for Community)

2. 협동조합의 유형

국제협동조합연맹(2011)은 협동조합을 소비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여행협동조합, 산업 및 서비스협동조합, 보험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협동조합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기업조합 등 네 가지로 구분되기도 한다. 첫째, 사업협동조합은 소규모 생산업자들에 의해 조직되는 농업·수산업·축산업·상업 등과 이에 관련되는 각종 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둘째,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협동조합연합회는 일정한 지역 등을 기반으로 결성한 단위협동조합의 연합체이다. 넷째, 기업조합은 조합원의 2/3 이상이 조합의 종업원이어야 하고, 조합종업원의 1/2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현숙, 2017).

또한 기능별로는 생산조합과 소비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활협동조합이라고도 하는 소비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싼값으로 공동구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소비조합은 소매조합이며, 여러 조합이 연합하여 도매조합을 결성하기도 한다. 한편 생산조합은 다시 판매조합, 구매조합, 이용조합(利用組合), 신용협동조합, 생산적 조합(生産的組合) 등으로 분류된다. 판매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을 협동 판매하는 조합이며, 구매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협동하여 구입하기 위한 조합이다. 이용조합이란 조합원이 단독으로서는 갖추지 못하거나 단독사용이 비경제적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금융사업만을 한다. 생산적 조합(生産的組合)은 조합원이 협동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조합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⁰³

0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3262&cid=40942&categoryId=31832>, 2020.05.08. 검색.

III. 영국의 협동조합

1. 영국 협동조합의 전개과정

영국은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400만 명이 조합원이며(영국협동조합연합회, 2020), 협동조합의 가치를 내걸고 활동하는 정당 ‘협동조합당(Co-operative Party)’이 있을 정도로(박유진, 2018)⁰⁴ 이탈리아 등과 더불어 협동조합이 발달한 대표적 국가이다. 그런데 비영리조직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발달한 미국과 달리 영국의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은 지역공동체 기업(Community Enterprise)에 뿌리를 둔 것이다. 지역공동체 기업이란 지역 단위에 기반을 두고 공동체의 개발이나 공동체의 권한 부여에 초점을 둔 기업을 일컫는다(한상진·황미영, 2010).

유럽 특히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이 자발적인 지역의 자선조직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영국의 협동조합은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윤도 이들을 위해 쓰인다는(김명희, 2008; 이은선, 2009) 점이 특징이다.

이는 영국에서 협동조합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맥을 같이 한다.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장시간 노동, 어린이와 여성 착취, 농민의 도시 저임금 노동자 전락, 열악한 생존환경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당시 노동자들은 방적공장과 탄광에서 하루 평균 17시간씩 일했고 몸집이 작아 비좁은 장소에서 일하기 유리했던 아이들과 여성들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9시간을 일했으며(김기섭, 2012:47-49), 로치데일의 실업률은 60%에 달했다. 이에 대한 영국 사회의 다양한 대응 방식 중 경제 활동을 통한 대응이 협동조합 운동이었다. 이처럼 영국의 협동조합 운동은 힘없는 소비자와 배제된 노동자들이 협동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다(김성오, 2006)고 할 수 있다.

04 이로운넷(2018.09.04.), 영국 “협동조합 규모 두 배로 늘리자”,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011>, 2020. 06.11. 검색.

영국은 일찍이 1760년대부터 협동조합 운동의 조짐을 보였으나, 올위치와 채텀 지역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제분업자들의 가격담합에 반대하여 제분소와 제빵소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 영국 협동조합 운동이 발단으로 알려져 있다(G.D.H Cole, 2015). 이후 1800년대 로버트 오언(Robert Owen)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우애조합(Rochdale Friendly Society)이나 윌리엄 킹(William King)의 협동조합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영국 협동조합 운동은 이른바 ‘기아의 1840년대’⁰⁵를 배경으로 1844년 설립된 1844년 로치데일 협동조합(공정선구자조합, The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⁰⁶을 효시로 본다.

처음 28명의 조합원이 1파운드씩 28파운드를 모아 낡은 창고를 인수해 기조한 상점에 설립한 로치데일은 1880년에는 조합원구 1,000명 이상, 자본금 30만 파운드, 매출액 30만 파운드, 순이익 5만 파운드를 기록했다. 로치데일이 이처럼 성공한 데는 조합 운영의 공개, 1인 1표 주의, 이용고 배당, 출자배당 제한, 정치·종교적 중립, 시가에 의한 현금거래, 교육의 촉진 등 원칙을 만들고 충실하게 운영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로치데일 조합의 원칙은 협동조합운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 중 상당 부분이 협동조합의 성격을 규정짓는 원칙으로 존중받고 있다(라이프인, 2018).⁰⁷

영국의 협동조합은 로치데일 협동조합 운동 이후 빅토리아 시대에 크게 발전하였다(Aiken, 2006).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영국의 협동조합은 쇠퇴기를 맞는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기업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를 고수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분석된다(장승권 외, 2011). 1960년대 이후에는 유통업이 혁신을 맞았지만 협동조합은 이에 대응하지 못한 채 품질과 시스템의 문제에 시달렸다. 배당 삭감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으나 조합원의 이탈을 부르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영국의 협동조합은 2000년대 들어 재도약하게 되는 과정을 맞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자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는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조합원이 이해하기 쉬운 이념과 비전, 일관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기 조합원의 참여를 지역사회에

05 영국은 1836년부터 1849년까지 14년 동안 2년간의 심각한 공황과 9년 이상의 불황기를 겪었다(G.D.H Cole,2015).

06 로치데일 조합은 1944년 영국에서 형성됐던 소비자 협동조합이다.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이며 조합 운동의 원형이자 모태로 평가받는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가 스스로를 조직화해 필요한 제품을 공동 구매하는 형태로 이익을 도모하는 조직으로 신용조합, 생활협동조합으로 불리기도 한다. 로치데일 조합의 이론적 바탕은 19세기 영국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이상적 사회주의자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1858)으로부터 출발했다. 오언은 비인간적인 자본주의에 맞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조합원들만을 위하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협동조합을 추구했다. 오언의 이론을 바탕으로 1844년 영국 공업도시인 로치데일의 직물 노동자 28명이 매년 1파운드씩 자금을 출자해 조합을 결성했다. 로치데일 조합은 점포를 내고 생활 필수품인 밀가루와 버터 등을 구입하는 형태로 운영을 시작했다. 로치데일 조합은 이후 조합원 숫자가 1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성공한 모델이 됐다. 조직이 커지자 조합은 1인 1표제의 원칙, 정치 및 종교적 중립 등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며 조직을 꾸려 나갔다. 이외에 투자한 자금에 대한 고정된 이자의 지급, 이익금의 공평한 분배 등의 원칙이 세워졌다. 이 같은 원칙은 1937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대회에서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네이버 지식백과).

07 라이프인(2018), “바느질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수놓다”,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3009>, 2020.06.01. 검색.

대한 관심으로 연결시키고 조합원 카드의 발행으로 소속감을 높였다. 이상 영국 협동조합의 진화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영국 협동조합의 진화과정

시기	진화 과정	주요 특징
형성기	- 1844년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설립 (노동자들의 생활고 해결 목표) - 1863년, 협동조합도매연합회(CWS)를 통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생산을 조직 하면서 소비운동의 특성 구축 - 1870년, Co-operative Union설립 (Co-operatives UK 전신)	- 일반적인 형태의 사업에서 충족되지 않는 니즈의 수용 - 연대와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형성 - 해당 분야에 관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는 리더십에 기반 - 성장 가능한 사업모델
성장기	- 영국협동조합연합회 창립: 1869년 제1회 협동조합대회 개최 - CWS 생산부문 조직: 소유제회사 설립은 물론 차 등 원료를 수입하는 선박 소유 - 1900년, 영국 협동조합등록법인 1,439개로 성장 - 1919년, Co-operative College 설립	- 단위생협에서 벤치마킹 가능한 사업 모델 형성 - 경제적 성공 -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기본적인 경영교육 보급 - 조합원의 높은 충성도 확보
통합기	- 1947년~54년, 식량잡화부문매출 평균 69% 성장 - 1957년, CRS설립: 경영실적이 부진한 단위협동조합 구제를 위해 CWS에서 독립한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전국 소매 서비스사업 실시 - 1950년~60년대, 다양한 유통업체와의 경쟁 심화	- 정책과 법안이 유리하게 설정 - 비효율적이며 과도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조직의 타성 - 성장률은 감소하는 반면 시장점유율은 증가함
쇠퇴기	- 1960년대, 직원 교육 실패: 직원들의 경영수준, 의식의 문제, 매장 제품의 품질 악화, 운영상의 문제 -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가 사라지기 시작: 조합원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짐 (이용고배당의 감소)	- 기존의 낙후된 자산과 기술만으로 운영 - 경쟁우위 상실, 시장 점유율의 감소, 손실보전을 위한 자산 매각

시기	진화 과정	주요 특징
쇠퇴기	- 잉여를 저장하기만 하고 투자가 없음 (협동조합 본래 의미 상실) - 30여 년간 단지 3%의 매출 유지	- 경쟁력 없는 조합들의 합병, 동형화 현상, 조합원에 대한 보상부재 - 방어적인 이사회, 경영자의 횡령, 부패, 사회 자본 상실
소멸기	- 성과가 좋은 협동조합이 부실 조합을 인수하거나, 특별히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어 부실 조합을 인수하고, 부실 자산을 처분	- 단위조합을 매각하거나, 파산하고, 연합회가 이를 막지 못함 - 전체 부문이 하나의 단위로 재조직되고 난 후 파산. 혹은 국가 국유화하거나 정리
탈상호화기	<u>협동조합 운영에 조합원의 참여가 없어 지면서 이사회가 협동조합을 주식회사로 바꿈</u> -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주식회사의 장점을 강조 -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보다는 상호금융 회사와 상호보험회사가 이 경우에 해당 되는 사례가 많음	- 부정적 논의: 자산처분, 자기이익 중심의 단기성과 강조 - 긍정적 논의: 비교우위 획득 노력 - 대화를 파산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
재도약기	- 1990년대, '윤리적 소비'에 대한 메시지 전달 강화: 협동조합의 가치 강조 - 조합원이 매장에 방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멤버십제도의 부활, 커뮤니티성 강조 - 2000년, CWS와 CRS 합병,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협동조합사업연합회로 재탄생. The Co-operative Group으로 명칭 변경 - 현재, 영국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사업체로 발전 중	<u>과거의 규범, 가치, 전통의 회복을 경쟁우위로 보는 새로운 리더의 등장</u> - 조합원 충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요인 탐색 - 조합원과 사회적 이슈와의 연결고리 모색 - 사회운동과의 제휴를 통한 새로운 리더와 조합원들의 유입 - 기초 자산의 강화, 재정비를 통해 경쟁력 있는 경영자의 고용과 새로운 제품 출시

출처 : Birchall(2011), 장승권 외(2011)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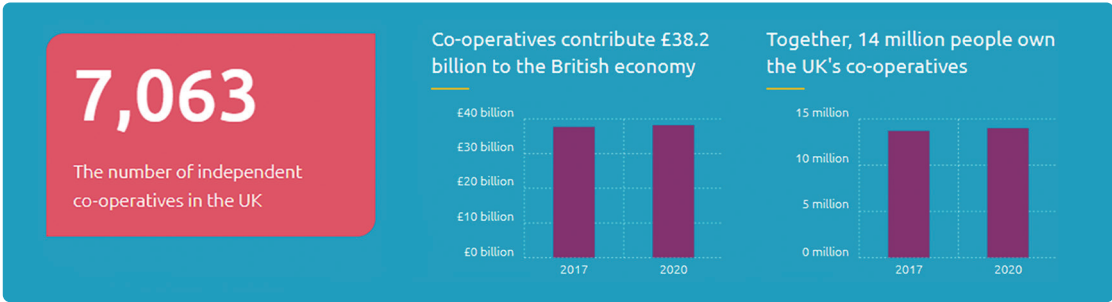
2. 영국 협동조합 현황

영국의 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 기업, 개발 트러스트, 자선조직, 지역사회 개발, 금융기관 공정무역 조직,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유사한 사회적 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 형태 중 하나이다(한상진·황미영, 2010). 영국의 협동조합의 분야는 의료, 주택, 재생 에너지, 소매업, 스포츠, 사회복지 등 다양하며 전국에 퍼져있다.

영국 전체 협동조합 수는 7,063개로 이 가운데 연합회에 가입한 협동조합은 직접 회원이 780개, 간접회원까지 더하면 3,500개이고 대규모 협동조합 대부분이 연합회에 가입해 있다. 총 매출은 382억 파운드(약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2020년 6월 기준)⁰⁸. 이는 영국 GDP 1.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그림 1).

총 고용은 2020년 현재 241,714명이며 조합원 규모도 1,400만 명으로 영국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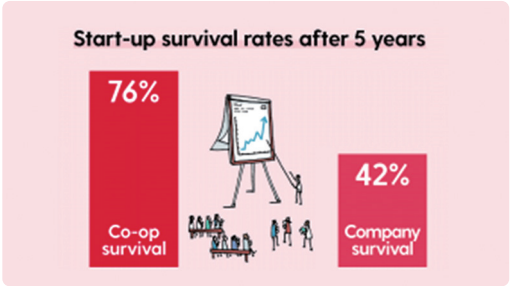
[그림 1] 영국 협동조합의 매출액과 조합원 규모



출처 : 영국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2020)

실제로 영국의 협동조합들의 창업 후 5년 차의 생존율은 76%로 일반기업(42%)의 두 배 가까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 이처럼 생존율이 높은 것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Cooperatives UK, 2020).

[그림 2] 영국 협동조합 생존율(2020)



[그림 3] 영국 협동조합 연도별 매출과 조합원 추이(2016-2020)



출처 : 영국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2020)

08 Cooperatives UK(2020), A report on the UK's co-operative sector

3. 영국의 협동조합 기구

1) 영국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UK)⁰⁹

소비자협동조합에서부터 의료와 농업,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영역 내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영국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UK)는 영국 협동조합 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영국협동조합연합회는 영국 협동조합 운동을 위해 국내외로 협동조합 운동을 확산시키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780개의 회원조직과 3,500개의 회원조직에 소속된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150주년을 맞은 영국협동조합연합회는 현재 협동조합 선구자의 이름을 딴 홀리요크(Holyoake)하우스¹⁰에 자리하고 있다. 2000년 전까지의 명칭은 협동조합연맹(The Co-operatives Union Limited, 1870년 설립)이었다. 당시 노동자협동조합연합과의 합병으로 회원 범위가 확대되어 좀 더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소비자협동조합에서부터 의료, 농업,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 다양한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영국협동조합연합회의 역할은 영국 사회 전반적으로 협동조합 운동의 가치를 증진시키며, 협동조합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상기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여 주는 기반으로 평가받는다.

연합회의 정책 기조는 서로 협동(Unite)하고 서로 발전(Develop)하고 협동조합을 촉진(Promote)하는 세 가지 원칙에 있다(그림 4). 연합회의 이사회는 회원협동조합의 규모를 반영하여 구성된 총 19명의 선출직으로 이루어진다. 이사회는 코업그룹(Co-op Group)이 가장 큰 협동조합으로 6석, 소비자부문(주택, 소상공 등) 7석, 노동자협동조합 2석, 농업협동조합 1석, 그 외 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회의 수입은 300만 파운드이나 수입의 반인 130만 파운드는 회비에서 충당하고, 그 외 수입은 정부 지원금과 외부기금 및 컨설팅/교육비용, 기타 수익사업으로 운영한다. 회비는 회원협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 적은 비용인 100파운드부터 가장 큰 협동조합인 코업 그룹은 회비의 반인 70만 파운드를 부담한다.

09 영국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https://www.uk.coop/>).

10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George Jacob Holyoake)는 19세기 영국의 협동조합 사상가이다.

[그림 4] 영국협동조합연합회의 정책 기조



출처 : 라이프인(2019)

영국협동조합연합회의 프로그램은 주로 창립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회원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마케팅, 리더, 의사결정 등 연중 78개 정도 교육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하이브(The HIVE), 협동조합 포트나잇(Co-operatives Fortnight)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하이브(The HIVE)는 협동조합 창업, 훈련 코스와 멘토링 그리고 학습 자료를 지원하거나 1대 1 자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코퍼라티브 뱅크(Co-operative Bank)를 포함한 외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연합회에서 실행하는 멘토링, 훈련 코스, 1대1 자문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500여 개의 조직들이 전문가 지원 및 훈련을 받았다.

협동조합 포트나잇(Co-operatives Fortnight)은 협동조합을 지역 내에서 알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매년 6월 말 2주간 진행되는 협동조합 공공 캠페인이다. 2010년부터 영국 내 모든 협동조합이 모여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2주간 진행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청소년 프로그램, 마을 및 해변 청소, 영상 제작, SNS 홍보, 봉사활동 등 지역에 맞는 협동의 실천을 자유롭게 진행한다.

2) 영국 협동조합대학(Co-operative College)

협동조합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 협동조합대학은 영국협동조합연합회의 전신인 영국 협동조합연맹(Co-operative Union) 시절인 1882년 설립된 교육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1919년 맨체스터에서 출범했다.

영국의 협동조합이 성장하고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조한 영국 협동조합대학은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 그리고 복지와 재건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영국 협동조합대학은 교육과정 개설과 운영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여와 협동조합의 가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장승권 외, 2011).

3) 협동조합학교

2004년 코업그룹(The Co-operative Group)과 영국협동조합연합회 산하 교육지원기관인 협동조합칼리지(Cooperative College)가 10개의 중등학교와 함께 비즈니스 특성화학교로서 협동조합에 특화된 교육을 진행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학교 교장들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학교 운영 및 교수법에 접목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06년에 지방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공립학교 예산 및 운영 권한을 개별학교에 이양하는 교육제도의 변화 속에서 생겨난 ‘트러스트 학교(trust schools)’ 제도를 활용해서 2008년에 최초의 협동조합 학교가 등장하였고, 이후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Shaw, 2014; 박주희, 2016).

2015년을 기준으로 영국의 협동조합학교연합회(SCS: the Schools Cooperative Society)는 이 공립학교 중에서 834개가 협동조합학교라고 집계하고 있다(Shaw, 2014; 서울시 영국학교 협동조합연수단, 2015; 박주희, 2016).

커리큘럼(협동조합 교과목)은 협동조합대학(Co-operative College)이 영국정부가 승인한 교육관련 자격증 수여기관인 ASDAN(Award Scheme Development and Accreditation Network)과 함께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 것이다. 참여적 시민을 교육한다는 목표하에 영국정부 인정 교과목 수료증이 부여될 수 있는 협동조합 교과목은 현재 총 5개로 만 7세부터 만 16세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이 교과목의 이름은 변화를 위한 협력-학교에서의 공정무역(Co-operation for Change- Fairtrade in School), 협동의 주요 단계(Key Steps in Co-operation), 청소년 협동조합 기업(Young Co-operatives Enterprise), 협동조합 시민(Co-operative Citizenship), 협동조합 학습을 통한 자기계발(Certificate of Personal Effectiveness through Co-operative Studies) 등이다(박도영 외, 2015).

4. 영국의 주요 협동조합

1) 코업그룹(CO-OP Group: The Co-operative Group UK)¹¹

영국 최대의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식품매장, 장례업, 보험업, 법률서비스업을 경영하며 매장 2천 5백여 곳, 조합원 4백 60만 명이 가입해 있다. 실제 활동하는 조합원은 2만 명 정도이며 본사는 맨체스터 중심가에 위치해 있다.

11 코업그룹 홈페이지(<https://www.co-operative.coop/>)

코업그룹의 모태는 1863년에 설립된 영국협동조합도매조합(Co-operative Wholesale Society: CWS)이다(Burchall, 2003). CWS¹²는 1950년대 중반까지 소매시장에서 12%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했다. 하지만 CWS은 대기업 대비 가격경쟁력 저하, 시민들의 생활 패턴 변화,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 등으로 인해 1960년 이후부터 점차 시장경쟁력을 잃어갔다. 이에 CWS는 2000년 10월 영국협동조합소매조합(Co-operative Retail Service: CRS)과의 합병을 통해 명칭을 코퍼러티브 그룹(The Co-operative Group UK)으로 바꾸었다. 이를 통해 코업그룹은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협동조합이 되는 데 성공했을(장승권 외, 2011) 뿐만 아니라 영국 식품시장에서 8%의 시장을 점유하는 영국 제5위의 유통기업이 되었다(The Co-operative Group, 2010).

코업그룹은 또한 코퍼러티브은행(The Co-operative Bank)을 소유하고 있다. 코퍼러티브은행은 국제 수준의 독립적인 비즈니스 윤리 기준을 감사하는 것은 물론 시장조사와 소비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상당수의 고객이 윤리적 가치를 고려함을 확인하고, 이를 경영의사결정에 반영한다. 또한 윤리적 금융정책결정에 소비자들을 직접 참여시킨 결과 동물실험과 같이 비윤리적인 분야 대신, 재생에너지나 탄소 감축 프로젝트와 같이 친환경적인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장승권 외, 2011).

이처럼 코업그룹이 성공하게 된 요인으로서는 첫째, 조합원에게 전자배당카드(electronic dividend card)를 발행하여 소비자조합원에게 조합원 의식과 자신의 구매행위를 연결시켰다는 점, 둘째,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과 그렇지 않은 조합원을 나누어 관리하는 전략을 채택했다는 점, 셋째, 사회적 쟁점을 연결시켜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소비자소유권 의식을 강화시켰다는 점, 넷째, 규모의 경제와 훌륭한 경영자를 고용한 점 등으로 분석된다(Burchall, 2011).

이윤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코업그룹은 자조(Self-help),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평, 연대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 또한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공개적 회원 모집의 원칙’, 연간 250파운드를 소비한 사람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원칙’, 주주가 아닌 회원에게만 책임을 지는 ‘자율성과 독립의 원칙’을 비롯해서 빵 한 덩어리를 구입하더라도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회원에게 제공하며, 협동조합 간 협력하고, 지역사회 봉사 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코업그룹은 특히 지역사회와의 관계 맺기에 집중한다. 코퍼러티브그룹의 2010년 지속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활동은 다음과 같다(The Co-operative Group, 2010). ① 2010년 기준 5,000만 파운드를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②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액을 기존 세전수익의 1%에서 4%인 1,130만 파운드로 늘리며 ③ 조합원과 고객으로부터 670만

12 CWS의 전신은 1863년 창설된 잉글랜드북부도매사업연합회이다(G.D.H Cole, 2015).

파운드의 자선기금을 모금하고 ④ 1만 개 이상의 커뮤니티와 자선단체를 지원하고 ⑤ 1만 명의 직원이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한 자원 활동을 하고 ⑥ 최근 3년간 훈련과 금융 지원에 5백만 파운드를 지원하고 있다(장승권 외, 2011).

코업그룹의 조직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회원 협의회, 협의회 의회, 협의회 회장, 회원 추천 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코업그룹의 조합원은 연례 총회(AGM)에서 주요 이슈에 투표할 수 있으며 회원 협의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회원 협의회(The Members’ Council)는 100인의 선출된 주요 회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정회원, 준회원, 협동조합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협동조합의 목적, 가치와 원칙, 조합 규정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 임기는 3년이며 재선할 수 있다.

협의회 의회(Council Senate)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협의회에 의해 선출된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의회는 회원 협의회 활동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회원 협의회, 이사회, 경영진 및 회원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대외적으로 협의회를 대표한다.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되며 협의회와 협의회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두 조직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회장은 두 조직이 협동조합의 규칙, 가치 및 원칙, 나아가 목표 및 목표에 부합하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비즈니스 및 성과 담당과 윤리를 담당하는 2명의 부사장의 보좌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회원 추천 이사(MND)회는 12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4명은 회원 지명 이사(Member Nominated Directors)이다.

2) 수마 협동조합(SUMA Wholefoods Coop)¹³

직원 180명이 일하는 수마는 웨스트요크셔에서 식료품 도매업을 하며, 조합원이 직원인 동시에 경영을 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이다. 2014년에는 ‘올해의 협동조합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윤리, 환경, 채식, 건강을 위한 식품을 소매 매장에 공급하며 물류 창고와 운송 트럭, 영업과 상담, 디자인 등의 다양한 파트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마는 과거 5년간 매년 5%씩 임금이 상승할 정도로 급여가 영국 평균보다 높고 연간 38일의 유급 휴가와 연금과 수익 보너스 등 직원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마에는 CEO나 이사, 조합장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관계로 업무를 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분기별로 조합원 전체 회의로 결정한다. 모든 조합원은 일반적으로 3~4종의 업무를 수행하며 1년 차 신입직원과 현직 41년 차 직원의 월급이 똑같다.

13 라이프인(2018), “바느질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수놓다”,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3009>, 2020.06.01. 검색.

IV. 영국의 예술인협동조합
현황 분석

1. 현황

2020년 6월 기준, 영국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UK)에 등록된 3,500여 개의 협동조합 중 문화예술 분야의 협동조합은 164개로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매출의 대부분을 코업그룹(The Co-operative Group)과 유통협동조합 JLP(John Lewis Partnership) 등이 담당하는 상황에서(박유진, 2018)¹⁴, 문화예술 관련 협동조합의 매출액(turnover)은 6백만 파운드로 전체 매출의 약 0.16%를 차지할 뿐이다(표 2). 매출액 기준 상위 100위 내에는 주로 농업, 소매업, 주택, 스포츠 여가 분야의 협동조합이 포진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협동조합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영국 협동조합의 진화과정

단위 : 개, 백만 파운드		
분야	조합수	매출액
농업	432	7,900
문화예술	164	6
디지털미디어	133	6.8
교육	286	501.8
에너지 환경	255	24
금융	464	250.7
음식 및 외식업	220	38.5
건강 사회복지	101	140.4

14 영국에서 매출액 기준 최대 협동조합은 코업 그룹(Co-op Group)(109억 파운드), 존 루이스 파트너십(John Lewis Partnership plc)(102억 파운드) 및 생산자소유의 알라 푸드(Arla Foods.)(26억 파운드) 순이다. <http://icoop.coop/?p=8010802>, 2020.06.20. 검색)

분야	조합수	매출액
주택	704	578.1
제조	75	362.8
사회단체 및 노조(Trade Union)	2,459	537.3
전문 법률 서비스	147	90.7
소매	700	26,900
스포츠 여가	550	736.7
운송	25	6
기타	348	34.5

출처 : Cooperatives UK(2020), A report on the UK’s co-operative sector

영국협동조합연합회 사이트(<https://www.uk.coop/>)의 일람에서 ‘예술’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예술 관련 협동조합은 156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분야가 예술과 거리가 멀거나 홈페이지가 없는 등 정보가 부실한 조합을 제외하고 127개의 예술인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예술인협동조합의 분야를 보면 시각예술(순수미술 및 공예) 65개, 공연예술 29개, 복합 8개, 기타 25개로 시각예술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예술의 경우 갤러리 등 전시공간이나 스튜디오 등 창작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유형이 많았으며, 공연예술의 경우는 배우 에이전시 조합이 1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3] 영국의 예술가협동조합 구성

분야				단위 : 개
사업유형				소계
시각 예술	갤러리(전시공간) 기반	스튜디오(창작공간 공유) 기반	기타(에이전시, 마켓, 네트워킹 등) 기반	
	26	29	10	65
공연 예술	공연장 기반	스튜디오(창작공간 공유) 기반	에이전시 및 교육, 포럼 등	
	4	3	22	29
복합	공연장 기반	스튜디오(창작공간 공유) 기반	에이전시 및 교육, 포럼 등	
	0	1	7	8
기타	멀티미디어, 영화	출판, 문학, 서점	건축, 정보, 기타	
	12	3	10	25
계				127

조합원 수는 Cafe INDIEpendent(약 800명), 워블턴 아트 스튜디오(290명 이상), Stevenage Arts Society(100명 이상), Bristol Folk House Co-operative(약 80명), The Greenwich Printmakers Gallery(약 40명), Otto Personal Management(35명), Bankley Studios(30명),

Rogues and Vagabonds Management(27명), Potters(25명), Alpha Actors(22명), Bridges: The Actors' Agency(21명), The Actors File(20명), Artistree(20명), Arena Personal Management(20명), The Hampshire Artists Co-operative(17명), The Earth Bound Misfits(16명), The Commercial Photographers Network(15명), Lizard Art Co-operative(15명), Staffordshire Artists Co-operative(11명)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라고 밝힌 조합도 상당수에 이른다. 예를 들어 Media Co-op, Oriel Twr - Usk Valley Artists’ Co-operative(각 10명), Surface Gallery(9명), Old Library Artists(8명), Oxheys Mill Studios, Studio Fusion(각 7명), Big Lamp Artists Cooperative, Gatehouse of Fleet Artists Co-operative(각 6명), Arts Connection-Cyswllt Celf(5명), Harmony Associates, Paper Rhino, Redeye(각 4명), Open Audio, Open Jar Collective(각 3명) 등이다.

2. 사례

1) 공연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협동조합은 교육형, 에이전시형, 스튜디오 또는 공연장을 운영하는 시설 운영형, 컨설팅·포럼·워크숍형, 순수공연·프로젝트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교육형 : 스윈든뮤직협동조합(Swindon Music Co-operative, SMCO)¹⁵

South West England에 있는 스윈든뮤직협동조합(SMCO)은 현재 50명 이상의 자영업 음악교사들이 모인 비영리단체이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교사 협동조합 중 하나로 스윈든 구의회가 기악 교직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아노 교사인 자넷 호지슨(Janet Hodgson)과 20여 명의 조합원에 의해 1998년에 설립되었다. 스윈든(Swindon) 지역에 있는 70개 이상의 학교와 대학에서 강의하는 한편,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악기연주, 성악, 음악 이론을 교육한다. 경험이 풍부한 앙상블 감독(현악, 관악, 합창, 팝/록밴드 전문가), 음악 교육과정을 이끌거나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 학교에 악기 및 성악 수업을 제공하는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Guadian, 2014)¹⁶.

15 www.swindonmusiccoop.co.uk

16 가디언(2014), “Music co-operatives: helping artists survive amid austerity” <https://www.theguardian.com/social-enterprise-network/2013/aug/28/music-cooperatives-arts-survival>(2020. 6. 28. 검색)

SMCO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와 열망에 따라 음악적 잠재력을 키우며, 학교와 지역에서 음악의 질과 폭을 향상하도록 역동적이고 품질 높은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평등한 접근성, 민주적 절차, 공동소유권 및 책임, 교육 훈련 및 개발에 대한 헌신, 개인적 성취, 지역사회 협력, 혁신과 창의성, 지속가능성, 무결성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MU, 2015)¹⁷.

SMCO의 조합원이 되려면 전문 음악교사로서의 자질, 예를 들어 교수법 등을 질문하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하며, 조합원이 되면 SMCO의 목표, 목표 및 정책, 관리 절차, 교사회원간 협약서, 아동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SMCO의 행정과 전략방향의 설정에 관한 책임은 이사회에 있으며, 모든 교사 조합원은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사회는 1년에 평균 6번 회의를 열어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매년 9월에 연차총회(annual general meeting; AGM)를 개최하여 재무보고, 이사 선출 등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SMCO는 비즈니스 개발 관리자(Business Development Manager), Office Manager, Administrator 등을 고용하여 학부모 또는 학교 응대, 입회 및 취소 처리, 임금 및 환불, 시간표 및 가용한 교사-구성원 확인, 고객의 불만 사항 처리, 회계, 마케팅 및 홍보, 학교 방문 및 연락, 이벤트 관리, 교사 지원, 분쟁 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특히 Business Development Manager는 경험이 풍부한 교사 중에서 선발하며, 고용된 자로서 정해진 임금 및 통상적인 세금을 부과한다. 교사 조합원의 요율은 연차총회에서 결정한다. 2015년의 경우 시간당 28.5파운드이며 교통비는 시간당 23파운드가 지급되었다. 이 중 SMCO의 수수료는 시간당 5.5파운드이다.

MU(2015)는 음악교사 협동조합 모델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민주적이다. 교사 조합원들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됨으로써 개인적인 책임을 장려하고, 상호협력하며, 조합원 각자가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비용이 효율적이다. 학교와 학부모에게 청구되는 비용은 강습료와 수수료가 전부이다. 투자자나 고위 관리자에게 지불되는 추가 비용이 없다. 게다가, 수업료 조정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며 보험과 세금체계도 일반회사와 달리 낮게 책정된다. 셋째, 위험이 적다. SMCO는 교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단지 최소한의 행정과 관리팀이 있을 뿐이다) 매우 유연한 교사 수급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교사 모집에 드는 비용도 절약된다. 넷째, 외부의 간섭에서 자유롭다. 모든 결정은 조합원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결정은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통합된 가치를 제공한다. 합의된 가치와 기준하에 이루어지는 ‘협동’은 학교와 학부모에게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각인시킨다. 마지막으로 상호 간 이익이다. 수입은 조합원들로부터 나오며

17 Musicians' Union(2015), ALTOGETHER NOW-A GUIDE TO FORMING MUSIC TEACHER CO-OPERATIVES.

협동조합 자체는 조합원 소유이다. 따라서 조합 내에서 생성된 모든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반환되거나 다른 곳에 투자될 수 있다(예: 재교육, 악기, 악보, 기타). 아울러 조합원들이 차후에 세금을 납부할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자체에서 발생된 잉여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단점으로는 조합원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려는 지방 당국의 인증제 시행 가능성, 악기 대여 또는 구매의 어려움, 지역별 전문교사의 부족, 경력개발의 한계, 임금 감소 및 정체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SMCO와 유사한 음악교사 협동조합으로는 The North East Music Co-operative (NEMCO), Salisbury Area Music Cooperative, Cotswold Music Tutors, Milton Keynes Music Co-operative 등이 있다.

(2) 에이전시형 : Arena Personal Management¹⁸

1985년에 설립된 배우 협동조합. 런던에 기반을 둔 전문 배우들로 하여금 극장, 영화,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 출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남녀 배우 10명씩 총 20명이 소속되어 있다. 처음에 에이전시에서 일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고객 회원으로 가입하지만, 본인이 원하고 기존 조합원의 동의를 받을 시 워킹회원이 될 수 있다. 워킹회원은 1주일에 1회 사무실에 출근하여 에이전트나 홍보 등의 일을 하는 대신 수수료를 할인받는다. 하지만 어린이, 모델 또는 배우지방생은 가입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배우 에이전시 협동조합으로는 Alpha Actors, Bridges: The Actors' Agency, One Another Management, Otto Personal Management, Rogues and Vagabonds Management, SOUNDKitchen UK, The Actors File, Live Core Events(세필드) 등이 있다.

- Alpha Actors¹⁹ :
1983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22명의 배우들의 에이전트를 담당하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였다. West End, RSC, Chichester, Regents Park 및 지역 극장 그리고 국내 및 국제 순회공연의 캐스팅을 위해 캐스팅 디렉터, 프로덕션 회사 및 극장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알파 멤버들은 처음부터 텔레비전, 장편 영화 및 극장에서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18 www.arenapmltd.co.uk

19 www.alphaactors.com

- Bridges: The Actors' Agency²⁰ :
에딘버러의 라이스(Leith)에 본사를 둔 배우 에이전시 협동조합. 주요 극장(National Theatre of Scotland, Citizens Theatre), 텔레비전, 영화 및 라디오 제작자(BBC, ITV 등)을 고객으로 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은 배우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One Another Management²¹ :
2013년 결성된 가상 에이전시 협동조합.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하는 대부분의 에이전시 협동조합과 달리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한다. 협동조합 에이전시 연합회인 CPMA와 FCA(Financial Conduit Authority)에 등록되어 있으며, 웹사이트 유지, FCA, CPMA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입시부터 연간 멤버십(30파운드)을 내야 하지만 캐스팅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조합원은 총 6명이다.
- Otto Personal Management²² :
1985년 셰필드(Sheffield)에서 설립된 배우협동조합으로 현재 셰필드의 중심부(Seffields Cultural Quarter)에 있는 프린터(Printer)의 다락방에 기반을 두고 있다. 35명의 배우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Rogues and Vagabonds Management²³ :
1986년에 설립된 에이전시 협동조합. 웨스트엔드, TV 드라마, 코미디, 월드 및 전국 투어, 영화와 광고 등의 출연을 연결시켜 준다. CPMA의 회원이기도 하며, 27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 SOUNDKitchen UK²⁴ :
일렉트로어쿠스틱(electroacoustic)과 실험음악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와 예술가들의 홍보를 위한 협동조합. 국내 아티스트들이 국제적인 작곡가들과 협업하고 발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20 bridgesactorsagency.com
21 www.oamagency.co.uk
22 www.ottopm.co.uk
23 www.vagabondsmanagement.com
24 soundkitchenuk.org

- The Actors File²⁵ :
1983년 출범한 매니지먼트 협동조합. 5명의 배우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약 20명의 배우들이 소속되어 있다.
 - Live Core Events²⁶ :
스타트업 밴드와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셰필드 기반의 협동조합. 음악가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연, 홍보, 라디오, 영화 등을 지원한다.
- (3) 시설 운영형 : Komedia Bath²⁷ :
- 바스(Bath) 지역 최초로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전용 공간을 소유한 커뮤니티이다. Beau Nash시네마에서 코미디, 음악, 어린이 행사 등 매년 400개가 넘는 행사를 주최한다. 코미디 및 음악산업에서 유명한 Buzzcocks, Joe Lycett, Katherine Ryan, Russell Howard, Band of Skulls, Brian Fallon 및 The Damned 등의 공연자들을 초대한 공연을 한 바 있다. 메인 오디토리엄(최대 수용인원 780명)과 Arts Café (최대 100명) 등 2개의 공간을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마다 Krater Comedy Club을 개최한다.
-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The Forum Music Studios, Le Public Space(Newport), Jazz. Coop(뉴캐슬), Co-op Juniors Theatre Productions 등이 있다.
- The Forum Music Studios²⁸ :
사회, 교육, 기업 또는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이 음악과 예술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와 활기찬 분위기로 신뢰받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 포럼 뮤직 센터(Forum Music Centre)는 200여 개의 Live Performance 구역과 카페/바를 비롯해 밴드 리허설실 5개와 녹음실 1개가 있다. 매주 영화 클럽과 코미디 클럽을 주최하며 낮 시간에는 음악학교, 방과 후 노래 동아리, 다양한 부모·유아 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Le Public Space(Newport)²⁹ :
뉴포트시티의 중심에 위치한 음악 예술 센터. 지역사회 소유(Community Benefit Society)로 라이브음악, 코미디 등을 공연하며 25년간 유지되어 왔다.

25 soundkitchenuk.org
26 youngmusic.co.uk
27 www.komedia.co.uk
28 www.theforumonline.co.uk
29 www.lepublicspace.co.uk

• Jazz.Coop³⁰ : 재즈, 시, 무용 등 예술의 리허설, 공연,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커뮤니티 협동조합. 뉴캐슬(Newcastle)의 글로브(Globe)에 음악 공연장과 교육 센터를 소유한 영국 최초의 협동조합이다.

• Co-op Juniors Theatre Productions³¹ : 서퍽(Suffolk)의 입스위치(Ipswich)에 본사를 둔 영국에서 가장 큰 아마추어 극장 그룹이다.

(4) 컨설팅·포럼·워크숍형 : The British Theatre Consortium³² :

극작가와 행정가, 학생, 학계 등이 함께 모여 극작부터 상연, 지역극장 및 국제 순회공연, 셰익스피어 공연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현대 연극 공연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포럼. 영국 극장 콘퍼런스 시리즈를 조직하고, 연구, 출판, 극장 컨설팅을 수행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Scariofunk Collective, Edinburgh Cultural Venues(ECVG) 등이 있다.

• Scariofunk Collective³³ :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로서 지역사회의 청년들에게 창의적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런던과 영국 전역에 다양한 댄스 워크숍과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 Edinburgh Cultural Venues(ECVG)³⁴ :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3년에 결성된 도시의 주요 공공 자금 지원 문화단체의 컨소시엄. 현재 Filmhouse, 페스티벌시티시어터트러스트(Festival City Theatres Trust), 스코틀랜드국립박물관, 퀸스홀(Queen's Hall), 로얄리시움극장(Royal Lyceum Theatre), 트래버스극장(Traverse Theatre), 어셔홀(Usher Hall) 및 스코틀랜드국립갤러리 등 8개의 주요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연중 내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에든버러 축제(Edinburgh's festivals),

30 www.jazz.coop
31 www.coopjuniors.co.uk
32 www.britishtheatreconference.co.uk
33 scariofunk.co.uk
34 www.edinburghculturalvenues.com

예술 및 문화유산 단체, 지역 사회 단체 및 학교와 협력하는 등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5) 순수공연·프로젝트형 : Talking Birds³⁵

극장, 영화관, 공연장,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뿐만 아니라 해변 마을의 해안 산책로, 14세기 수도원, 지하 주차장 등 특이한 장소에서 공연한다. 영국 내에서 연극, 음악, 영화/비디오, 디지털 및 비주얼아트를 포함한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작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 영국 웨스트미들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West Midlands)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Music Co-OPERative Scotland 등이 있다.

• Music Co-OPERative Scotland³⁶ : 스코틀랜드 유일의 전문 오페라 오케스트라인 스코틀랜드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회원들이 모여 2012년 봄 결성했다. 맞춤형 녹음 프로젝트, 관현악 공연, 지역사회 홍보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 시각예술

시각예술 분야의 협동조합은 스튜디오/갤러리 기반형, 마켓형, 교육형, 에이전시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스튜디오/갤러리 기반형의 경우 대부분 교육도 사업영역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정된 시설 없이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경우는 교육형으로 분류하였다.

(1) 스튜디오/갤러리 기반형 : Bankley Studios and Gallery Manchester³⁷

1992년에 설립, 1998년 공식적으로 협동조합이 된 예술가 스튜디오 및 갤러리. 맨체스터의 레벤술름(Levenshulme)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그림, 직물, 사진, 설치, 조각 및 도자기 등 다양한 분야의 30여 명의 아티스트가 조합원으로 있다. 이처럼 스튜디오 및 갤러리 기반의 협동조합으로는 BCL Studios, Bearpark Artists Co-operative, Big Lamp Artists Cooperative, Blaze Studio 등이 있다.

35 www.talkingbirds.co.uk
36 www.mcopera.com
37 www.bankley.org.uk

- Allendale Creative Artists CIC³⁸ :
Allendale Forge Studios Art and Craft Centre를 통해 아름다운 북 반도 풍경을 홍보하는 자원봉사자, 제작자, 예술가 및 제작자 협동조합이다. 지역사회 관심 회사 및 사회적기업으로서 개인 교습 워크숍을 통해 그리고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인지도를 높이고 기술을 개발한다. 예술과 공예 기술 센터를 구축하여 워크숍을 운영하고 섬유, 펠트, 유리, 석재, 실크, 보석, 사진, 가죽 공예, 디자인 등의 예술품을 생산한다.
- AND Association³⁹ :
런던에 1982년에 설립된 시각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자발적 커뮤니티. 문화 정책 개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시각예술가의 사회적, 경제적, 지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활동한다. 대중과 시각예술가 간의 문화 및 교육 통합을 강화하고, 공간과 자원을 제공하며, 창의적인 미디어 예술 제작을 지원한다. 전시공간 제공과 잡지 『AND Art & Art Education』을 발행한다.
- Art & Soul Traders⁴⁰ :
벽화, 커뮤니티 아트, 영화 제작, 이벤트 조직, 음악, 사진 및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경험이 예술가와 프로모터들의 협동조합. 1988년 벽화가인 Mark EW Lewis에 의해 설립되었다. 상업 및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대신 무료 창작 과정, 전시회, 이벤트 및 워크숍을 제공하는 포츠머스의 자체 자금 지원 독립 예술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다시 투자하는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로 운영된다.
- BCL Studios :
BCL Studios Cooperative는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더 넓은 사회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사우스 런던의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개발, 관리 및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Bearpark Artists Co-operative⁴¹ :
던햄의 베어파크(Bearpark)에 위치한 독립 스튜디오 기반의 전문 화가 그룹으로 현재

38 www.allendaleforgestudios.co.uk

39 www.and.org.uk

40 www.artandsoultraders.com

41 www.bearparkartists.co.uk

- 3명의 화가가 소속되어 있다. 지역과 관련된 오일, 아크릴 및 수채화 작품을 웹사이트 및 스튜디오 갤러리에서 판매한다. 지역 전반에 걸쳐 정기적으로 전시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벽화와 배너 제작 및 학교, 병원, 성인 대상의 교육을 한다.
- Big Lamp Artists Cooperative (BLAC) :
뉴캐슬의 빅 램프(Big Lamp) 지역의 예술 스튜디오. 6명의 예술가와 갤러리 공간이 있다.
 - Blaze Studio⁴² :
브리스톨(Bristol)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갤러리 중 하나. 2003년 리스가드(Hanne Rysgaard)가 세라믹학과 졸업생들과 함께 설립했다. 브리스톨의 독립적인 갤러리 문화를 지원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창작자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한다. 유연한 멤버십을 운영하여 조합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스튜디오 공간, 갤러리 공간 및 아티스트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 Cuckoo Farm Studios Print Workshop⁴³ :
1992년에 소규모의 예술가들이 이주하여 외딴 농장을 전문 예술가들이 작업하기에 적합한 시설로 전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30개가 넘는 스튜디오를 수용하는 시설로 성장했다. Colchester School of Art and Design 등과의 공동 작업, 대학원 장학금 제도를 통해 신홍 인재를 지원하고 있다.
 - Electric Picture House Artists Co-operative⁴⁴ :
체셔(Cheshire)주 콘글턴(Congleton)에 위치한 비영리 예술가협동조합이다.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스튜디오 공간을 제공하고 갤러리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전시회, 워크숍, 커뮤니티 프로젝트 및 예술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Gatehouse of Fleet Artists Co-operative (GoFA)⁴⁵ :
2007년 2월 스코틀랜드 남서부의 커뮤니티에서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시작된 협동조합으로 현재 6명의 아티스트(5명의 화가와 1명의 제작자)가 조합원으로 있다. 게이트 하우스(Gatehouse)의 베이크하우스아트센터(Bakehouse Arts Center)에 있는 갤러리에서 정기적으로 작품을 전시한다. 덤프리스(Dumfries) 및 겔로웨이(Galloway)

42 www.blazestudio.co.uk

43 www.cuckoofarmstudios.org.uk

44 www.electricpicturehouse.com

45 www.theartco-op.co.uk

내의 다른 예술단체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다른 문화적 이니셔티브 및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Gipsy Hill Workshop Co-operative⁴⁶ :
Crystal Palace Triangle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술가와 장인에게 스튜디오와 워크숍 공간을 제공한다.
- Glasgow Theatre & Arts Collective(GTAC) :
Govan 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아티스트 스튜디오. 공간 사용과 관리를 공동으로 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유지될 수 있다. 2011년에 설립된 스튜디오 시설은 연극 제작자, 서커스, 디지털아트, 댄스, 음악 및 커뮤니티 아트를 포함한 다양한 예술가를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워크숍, 행사 및 레지던시를 제공하기도 한다.
- Gloucestershire Printmaking Co-operative(GPC)⁴⁷ :
Gloucestershire에서 유일한 판화 협동조합으로 2005년에 설립되었다. 그리핀 밀(Griffin Mill)에 위치한 2곳의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판화 제작을 위한 시설을 제공한다.
- Lizard Art Co-operative⁴⁸ :
콘월(Cornwall)의 리자드(Lizard) 반도에서 주로 살고 일하는 예술가들의 협동조합. 15명의 예술가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Helston 근처 Trelowarren Estate의 중심부에 있는 Stable Yard Gallery를 운영한다. 1995년에 결성되었으며 원래 반도 미술 협회(Peninsula Fine Art Society)라고 불리다가 2002년에 Lizard Art로 바꾸었다. 이 조합의 목표는 주로 고립된 아티스트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Modern Clay⁴⁹ :
2017년 설립된 스튜디오 프로젝트로, 2019년부터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버밍엄(Birmingham)주 디그베스(Digbeth)에 위치해 있으며, 예술가 조합원은 7명이다. 도자기 생산을 위한 작업실을 제공하며, 협동조합원이 아닌 일반 예술가들도 이용할 수 있다. 클레이 워크숍을 비롯해 공공 워크숍을 운영한다.

46 www.gipsyhillworkshops.co.uk
47 www.gpchq.org.uk
48 www.lizardart.co.uk
49 www.modernclay.org

- Mutual Artists Studio Co-operative⁵⁰ :
에든버러에 위치한 아티스트가 운영하는 스튜디오 협동조합이다. 상호 원조, 자기 조직화, 연대의 협동적 가치를 바탕으로 신진 아티스트들에게 저렴한 스튜디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Northlight Art Studios⁵¹ :
25년 전에 설립되었으며 시각예술 및 공예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교육도 실시한다. 조합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스튜디오의 임대료는 60~170파운드 정도이다. Regular weekly courses, Day workshops, Summer Schools, Young Northlight 등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 Old Library Artists⁵² :
카디프(Cardiff) 칸톤(Canton) 지역에 위치한 갤러리 오리엘 칸파스(Oriel Canfas)를 운영하는 협동조합. Jo Berry 등 8명의 예술가조합원들이 스튜디오와 교육공간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목공예, 석공예, 회화 등으로 구성된다.

- Open Hand, Open Space⁵³ :
1980년 설립, 리딩(Reading)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대미술작가들에게 저렴한 스튜디오와 전시공간을 제공한다. 일반인 대상의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4년 협동조합 및 지역사회 이익단체법에 따라 FCA에 등록했다.

- Oriel Twr - Usk Valley Artists' Co-operative⁵⁴ :
2014년 크리코웰(Crickhowell)에 있는 타워 갤러리(Tower Gallery)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 8명의 전시조합원과 2명의 비전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Oxheys Mill Studios⁵⁵ :
프레스턴(Preston)에 있는 비영리 예술가협동조합.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워크샵, 강연, 전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공간을 제공한다. 시각예술, 영화, 라이브 음악, 연극, 무용, 시, 무술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방되어 있다. 예술가 조합원은 총 7명이다.

50 www.mutualartists.co.uk
51 www.northlightstudio.co.uk
52 www.olacanvas.co.uk
53 www.openhandopenspace.blogspot.com
54 www.towergallery.co.uk
55 www.oxheysmillstudios.com

- Potters⁵⁶ :
브리스톨 중심부(Bristol)에 위치하며, 25명 이상의 공예 도예가와 도예가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협동조합으로 1996년에 설립되었다.
- RARA(REDUNDANT ARCHITECTS RECREATION ASSOCIATION)⁵⁷ :
런던 클랩튼(Clapton)에 설립된 오픈 액세스 작업 공간. 모든 회원들이 참석하는 월례회의에서 모든 결정이 내려진다. 정부, 지방 당국 또는 예술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자체 회비와 사업으로부터 자금을 충당한다는 운영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 Ropewalk Contemporary Art & Craft⁵⁸ :
3개의 갤러리와 미술 스튜디오, 인쇄 시설, 사진 작업 시설, 커피숍 등이 입주해 있다.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작가들의 전시와 지역작가들의 공예품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드로잉, 인쇄, 사진 촬영 등 워크숍과 교육도 진행한다.
- Staffordshire Artists Co-operative⁵⁹ :
갤러리(Gallery@12)에 기반한 예술가협동조합. 2009년 6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해서 11명으로 늘어났다. 조합원은 회화, 사진, 목공, 텍스타일, 장신구, 도자기, 조각 등을 하는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 Stevenage Arts Society⁶⁰ :
1968년에 설립된 아마추어 순수미술 협동조합. 1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테버니지 올드타운(Stevenage Old Town)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인 스프링필드 하우스(Springfield House)에 위치해 있다. ‘스테버니지 예술의 고양(Fostering the Arts in Stevenage)’을 목표로 하며, 매년 선출되는 집행위원회가 운영한다. 매년 최소 3회 이상의 전시회를 여는 영국 전역에서 가장 활발한 아마추어 예술모임 중 하나이다. 자체 갤러리, 도자기, 작업실, 개인 스튜디오를 두고 있다.

56 www.pottersbristol.com
57 r-a-r-a.com
58 www.the-ropewalk.co.uk
59 www.galleryat12.co.uk
60 www.stevenageartsociety.org.uk

- Studio Fusion⁶¹ :
에나멜을 비롯한 비전통적 소재와 기법에 특화된 응용미술 갤러리. 런던 사우스 뱅크의 워털루 브리지와 블랙프라이어스 브리지 사이에 위치해 있다. 페니 데이비스, 다프네 크리노스, 사라 레츠, 조안 맥카렐, 루이즈 오닐, 구드 제인 스카이름, 타마르 드 브리즈 윈터 등 7명의 예술가들이 공동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영국 및 전 세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특별 전시회와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전을 연다. 그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 Surface Gallery⁶² :
노팅엄 중심부에 있는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독립 갤러리. 1999년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 졸업생들이 Turtle Arts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였으며, 2002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지역 및 해외 예술가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며 노팅엄(Nottingham)의 시각예술을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9명의 예술가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The Ceramics Studio Co-op⁶³ :
South East London에 있는 예술인이 직접 기획한 세라믹과 조각 작업장으로,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운영된다. 스튜디오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며, 조합원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진다.
- The Greenwich Printmakers Gallery⁶⁴ :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프린트 메이커의 독립적인 협동조합으로, 그리니치 마켓(Greenwich Market)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 예술가는 약 40여 명으로 직접 갤러리 운영에 참여한다.
- The Hampshire Artists Co-operative⁶⁵ :
2007년에 햄프셔(Hampshire)의 예술가들과 공예가들이 결성했다. 수채화, 오일, 아크릴, 혼합매체, 콜라주, 인쇄기법 등 평면작업을 비롯해 도자기, 조각, 보석, 유리, 직물 등 입체적인 작품들을 하는 예술가 등 17명의 조합원이 참여한다. 셀본 갤러리(Selborne Gallery)를 중심으로 햄프셔 전역에서 전시하고 있다.

61 www.studiofusiongallery.co.uk
62 www.surfacegallery.org
63 www.ceramicsstudio.coop
64 www.greenwich-printmakers.co.uk
65 www.hampshireartistscooperative.co.uk

- V.O Studios⁶⁶ : 런던과 파리를 거점으로 한 갤러리 겸 스튜디오 프로그램. 2018년 지나 비에유(Zina Vieille)와 남디 오비에크웨(Nnamdi Obiekwe)가 설립했다. 전시장에서부터 예술가 스튜디오 또는 출판 허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Wimbledon Art Studios⁶⁷ : 1992년에 설립된 Wim블던 아트 스튜디오는 맞춤형 스튜디오로 290명이 넘는 예술가, 제작자, 디자이너들에게 저렴한 예술 공간을 제공한다.

(2) 마켓형 : Bourne End Community & Craft Market(BECCMARK)⁶⁸

Rosie O'Hagan과 Julia Wooster에 의해 2011년 2월에 처음 개최되기 시작한 마켓으로 매달 두 번째 토요일에 Bourne End 도서관에서 열린다. 주로 지역 주민들이 협동하여 만든 농산물과 가내 가공식품을 비롯해 예술품과 공예품을 판매한다. 매달 자선모금행사인 톰 볼라를 개최하기도 한다.

(3) 교육형 : 스티치업 (Stitched Up) 협동조합⁶⁹

맨체스터(Manchester)의 출튼(Cholton)에 위치해 있으며 맨체스터시 정부에서 쓰레기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의 공간을 지원받고 있다. 2011년 패션업에 종사하던 6명의 여성이 의류의 재활용과 업사이클의 활성화와 의류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창조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환경·여성·노동자 등 현재 의류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고자 협동조합을 창업했다.

스티치업의 주요 사업은 가볍게 입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을 중단하기 위해 ‘고쳐 입고 바꿔 입고 오래 입는 것’에 있다. 따라서 옷 바꿔 입기, 염색 워크숍, 그리고 노숙자를 위한 방수 가방을 제작한다. 또한 윤리적 패션에 대한 교육을 위해 아이들을 상대로 슈퍼 히어로 복장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6주간 6벌 입거나 잠옷 바지를 만드는 원데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또한 생활물품 수선카페도 열어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자전거와 가정용품, 컴퓨터를 수선하는 행사도 마련한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수선카페는 고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수리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자제품, 옷, 컴퓨터 등을 가지고 오면

66 www.vocurations.com
67 www.wimbledonartstudios.co.uk
68 www.beccmark.co.uk
69 라이프인(2018), “바느질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수놓다”,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3009>, 2020.06.01. 검색.

자원봉사자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자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이 무조건 제품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고치는 것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활동의 목표이다. 옷 수선과 만들기 워크숍은 100% 참여가 마감될 정도의 인기 프로그램이며 염색, 공예, 속옷 만들기, 신발 만들기에 관한 워크숍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자 현재는 세 군데에서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시각예술 분야에서 교육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로는 The Feral Art School, Remakery Brixton, North Wales Potters Co-operative Gallery & Information Centre, First Take Video, Bristol Folk House Co-operative 등이 있다.

- The Feral Art School⁷⁰ : 전문 예술가들과 교육자들이 모여 고품질의 경험, 신선한 형식, 대안적 접근법의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드로잉, 맞춤형, 옷재활용, 고급 텍스타일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Remakery Brixton⁷¹ : 버려진 재료로 유용한 물건을 만드는 협동작업장으로 2012년 설립되었다. 사우스 런던(South London)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에 위치해 있으며, 디자이너, 예술가 등 누구나 작업할 수 있다. 공간사용료로 발생한 이윤은 리메이커리(Remakery) 사회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한다.

- First Take Video⁷² : 영국 북서부의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학교, 지방정부 등에 비디오 교육 및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 협동조합이다. 커뮤니티 및 소외 계층이 비디오를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Bristol Folk House Co-operative⁷³ : 브리스톨 중심부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예술, 공예, 공연을 교육하는 협동조합. 정부, 시의회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지 않으며 수입은 전액 수업료, 회장 고용, 회원 및 모금 행사로 충당한다. 1870년대에 커뮤니티 교육 지원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첫 번째 활동 프로그램은 1920~1921년에 실행되었다. 약 80명이 넘는 강사가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70 www.feralartschool.org
71 www.remakery.org
72 www.first-take.org
73 www.bristolfolkhouse.co.uk

(4) 에이전시형 - Glasgow Group - Scottish Artists Co-operative⁷⁴

글래스고(Glasgow)의 시각예술가들이 글래스고와 스코틀랜드 서쪽에서 자신들의 예술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예술가협동조합. 모든 결정은 예술가 멤버의 과반수 투표로 이루어진다. 현재 글래스고시 또는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3) 기타

(1) 영화 : Documentary Film Makers' Co-operative⁷⁵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문제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영화감독, 카메라맨, 음향 및 조명감독, 편집자 및 제작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영화를 통해 지역사회, 인류 및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탐구한다.

이밖에 영화 관련 협동조합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의 비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는 가치 중심의 영화제작자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Blake House, 영국 동북부지역에 위치한 영화 협동조합인 FilmBee, 현대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비판적 대화와 영화 제작의 결합을 시도하는 Not/No.w.here 등이 있다.

- Blake House⁷⁶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선단체, NGO, 학계 및 언론인 등 제3섹터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의 비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는 가치 중심의 영화제작자 협동조합. 다른 예술가 및 커뮤니티 그룹과 협력하여 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하며 친절한 세상을 위한 명분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 FilmBee⁷⁷ : 영국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예술가가 운영하는 영화 협동조합으로, 아날로그 영화를 추구한다. 동영상 이미지 실습, 아날로그 및 디지털 영화 제작에 대한 전문적인 다큐멘터리 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하며, 영화 작업과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Not/No.w.here : 2004년 런던지역에 결성되었으며, 현대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비판적 대화와 영화

74 www.glasgowgroup.org.uk

75 www.documentaryfilmmakerscooperative.com

76 blake.house

77 filmbee.co.uk

제작의 결합을 시도하는 비영리조직이다. 아티스트가 운영하면서 아티스트 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다수의 워크숍과 비판적인 토론을 운영하며, 공연, 상영, 출판물, 이벤트 및 전시회를 큐레이션한다.

(2) 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 : Calverts⁷⁸

1977년에 설립된 그래픽 및 출판 디자인 전문 협동조합. 고품질 상업용 컬러 인쇄. 인쇄 또는 웹용 그래픽 디자인 및 최신 컬러 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공동 소유 협동조합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로서의 실적을 인정받아 Inner City 100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 Chambers Creative Collective, ArtZone Co-operative, Bovey Tracey Paradiso Arts, Bridge Rectifier, Future Artists, Media Co-op, Paper Rhino 등이 있다.

- ArtZone Co-operative⁷⁹ : 멀티미디어/멀티미디어 실무에서 일하는 예술가와 디자이너이며 디자인 작업 제작, 조정, 콘텐츠 개발, 웹/온라인 및 인쇄 솔루션을 전문으로 한다.

- Bovey Tracey Paradiso Arts⁸⁰ : Bovey Tracey의 Fore Street에 커뮤니티 영화관,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를 만드는 프로젝트. 10여 년 동안 문을 닫은 올드 펍 〈King of Prussia〉를 재생한다. 뉴질랜드 와나카(Wanaka)의 시네마 파라디소(Cinema Paradiso)를 본따 지어진 〈King of Prussia〉은 건물의 정면과 특징을 유지하면서 개발되어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카페 바, 시각예술 갤러리, 예술가 스튜디오 및 회의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Bridge Rectifier⁸¹ : 웨스트 요크셔주 Hebden Bridge에 기반을 둔 해커 스페이스 커뮤니티. 해커 스페이스(Hackerspace)는 전자 제품, 컴퓨터, 아마추어 라디오, 과학, 기술, 디지털아트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공간을 의미한다. 회원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에는 로봇 공학, DIY, 컴퓨팅, 리버스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등이 있다.

78 www.calverts.coop

79 www.artzone.coop

80 www.paradiso.org.uk

81 www.bridgerectifier.org.uk

- Future Artists⁸² :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을 위한 커뮤니티 협동조합으로 라이브 이벤트 및 교육을 전문으로 한다.
- Media Co-op⁸³ :
영화, 애니메이션, 웹, 앱, 소셜 미디어 등의 공동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 대부분의 영리 에이전시와 다르게 이익이 아닌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공유 가치, 참여 수준 및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존중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10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다.
- Paper Rhino⁸⁴ :
일러스트레이션, 비디오,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분야의 크리에이티브 협동조합. 2011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4명의 조합원이 있다.

(3) 예술카페 : Cafe INDIEpendent⁸⁵

청년들이 운영하는 비영리 예술카페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되면 카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료 및 장소대여 등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년간 800여 명의 청년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4) 건축·도시 : Collective Architecture⁸⁶

참여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건축을 주제로 한 협동조합. 지난 19년 동안 지역사회 시설에서부터 대규모 도시재생에 이르기까지 영국 전역에 걸쳐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밖에 Darlington for Culture(DfC)⁸⁷는 도시의 예술과 문화를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2010년 말에 설립되어 2011년 봄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조합원은 예술 및 커뮤니티 그룹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82 www.futureartists.net
83 www.mediaco-op.net
84 paperrhino.co.uk
85 www.cafeindiependent.org.uk
86 www.collectivearchitecture.com
87 www.darlingtonforculture.org

(5) 문학·독립서점 : Dartmouth Community Bookshop⁸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 독립서점으로 비영리 커뮤니티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된다.

이밖에 오크니(Orkney)와 셰틀랜드(Shetland)와 관련된 문학 및 예술 작품을 홍보하는 작가 협동조합인 Hansel Cooperative Press⁸⁹ 등이 있다.

(6) 복합 : Jack Drum Arts⁹⁰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는 전문 아티스트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공연, 영화, 전시회, 이벤트 등을 함께 만든다. 교육 및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작업을 핵심 가치로 한다.

3. 분석

영국은 협동조합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협동조합 전체의 수는 2020년 현재 7,063개로 14,236개(2018년 기준)의 한국보다 오히려 뒤떨어진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도 한국은 685개인데 반해 영국은 164개로 집계되고 있다. 물론 이 수치는 영국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만을 산정한 것이지만, 미가입 협동조합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음악 분야의 경우 연합회에 등록된 음악가 협동조합은 20개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ick Molyneux, 2014). 하지만 협동조합이 성공한 사례는 대부분 소비나 유통을 위주로 하는 경우이며, 예술가협동조합처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영국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GDP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내용 면에서는 한국보다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14년 MU가⁹¹ 영국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하면서 회원들의 이익과 더 나은 작업환경을 위해

88 www.dartmouthcommunitybookshop.co.uk
89 www.hanselcooperativepress.co.uk
90 www.jackdrum.co.uk
91 Musicians' Union(MU)은 3만 2천 명 이상의 뮤지션들이 가입해 있는 영국의 예술가 조합(Trade Union)이다. 영국의 음악산업과 음악교육에 종사하는 풀타임, 파트타임, 자영업(self-employed), 학생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음악가를 대신하여 고용주와 협상을 진행하고, 개인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MU의 주요 조직으로는 지역위원회(RC),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분과(Section)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MU는 런던, 이스트 앤 사우스이스트 잉글랜드(East & South East England), 미들랜드(Midlands), 웨일즈 앤드 사우스웨스트 잉글랜드(Wales & South West England), 노스 잉글랜드(North of England),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Scotland & Northern Ireland) 등 6개 지역에 지역위원회(Regional Committee, RC)를 두고

협동조합 모델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Fran Hanley, 2014)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영국의 예술인협동조합의 현황과 사례들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 협동조합 운동을 펼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대학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예술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이긴 하지만 예술 분야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합회가 서로의 성장을 돕고 신생 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협동조합 기반의 경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된다고 볼 때 우리로서도 필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둘째, 예술인 협동조합 모델은 기획자나 연출 등 프로젝트의 리더가 필요한 분야보다는 같은 위치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예술 분야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국의 예술인 협동조합 중 절반 이상을 시각예술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시각예술 중에서도 갤러리 또는 스튜디오 기반의 협동조합이 많은 이유는 공동으로 기획하고 전시 하면서 작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조합원 중 한두 사람의 지휘나 감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연예술의 경우도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으로 자신들을 프로모션하는 에이전시형 협동조합이 많은 반면 극단이나 공연장처럼 연출가 등 특정인이 지휘하는 협동조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교사 협동조합의 경우도 관리영역은 고용된 근로자에게 맡기지만 유사한 업무를 개별적으로 하는 교사들이 이사회 멤버가 되어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

셋째, 예술인협동조합 중 정부나 공공의 지원을 거부하고 자립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Glasgow Group - Scottish Artists Co-operative나 RARA (REDUNDANT ARCHITECTS RECREATION ASSOCIATION)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의 협동조합들은 국가로부터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자발적인 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예술인협동조합이 대부분이다. 지역의 예술가들이 지역을 표현한 작품을 지역민을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전시, 교육하는 경우 생존율을 높일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있다. 각 지역위원회는 2년의 임기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2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뮤지션 고용 및 수입 극대화,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 개인 차원의 법적 지원 및 컨설팅, 정부 로비 및 국제적 규모의 캠페인 등이다.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EC)는 6개의 지부에서 선출된 구성원들로 구성된다.

V. 결론 및 시사점

협동조합 운동의 발원지라고 알려진 영국의 경우도 예술 분야는 전체 협동조합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인원 면에서 기대만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성공한 사례는 대부분 소비나 유통을 위주로 하는 경우이며, 예술가협동조합처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일찍이 로치데일도 제분조합과 제조협동조합 등 생산협동조합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자본에 종속되지 않은 노동’의 어려움에 비해 ‘자본에 덜 종속된 소비’의 실천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김기섭, 2012).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경기도가 영국의 예술인협동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경우 연합회가 서로의 성장을 돕고 신생 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협동조합 기반의 경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된다고 볼 때, 우리로서도 필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로치데일이 이제껏 협동조합의 전범이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생산, 분배, 교육 및 경제적 역량을 길러 ‘공통의 필요를 스스로 제공하는 협동체’를 건설 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협동체를 건설하려는 다른 조합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김기섭, 2012: 78) 데 있다. 한국의 협동조합에는 영국과 달리 협동조합연합조직체가 없다. 다양한 경제영역 내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언급하기 이전에 소비자협동조합 간의 교류와 협력도 부족하다. 이는 협동조합을 홍보할 기회를 놓치고, 각 협동조합의 목적에 적합한 지배구조 정립에도 어려움을 준다. 경기도의 경우 협동조합을 통해 예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에 의한 연합회의 설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공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국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에 대해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영국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의 교육기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 점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기도 차원에서 예술인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원하고 성장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출자금 등의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년 거의 모든 협동조합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출자금 및 출자금 증가액의 1,000분의 4를 등록 면허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도시 내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로 증과된다. 이러한 현행 법 제도는 예술인들의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자립 의지를 북돋움으로써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영국의 예술가협동조합은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자발적인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로치데일도 노동자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서로 돕는 스스로의 노력(mutual self-help)’으로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도입 및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적인 성향이 있고, 목적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특성을 보인다(박정민, 2018). 경기도의 예술가협동조합 정책은 자립의지가 강한 예술인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술가들의 경제작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형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실직자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보조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예술인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를 찾기 어려워 영국협동조합연합회의 조합일람과 개별 협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다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추후 보다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G.D.H Cole(2015),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 정광민 역, 홍성: 그물코.

- 김기섭(2012), 『깨어나라 협동조합』, 들녘.

- 김현숙(2017), 문화예술협동조합 이용자 관람만족이 조직역량에 따른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

- 김형미(2012), 홍성지역 생협운동의 전통-교육과 협동을 통한 이상촌 건설의 이상과 그 계승, 아이쿱협동

- 조합연구소(편.),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pp.117-135). 서울: 푸른나무.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3262&cid=40942&categoryId=31832>, 2020.05.08. 검색.

- 라이프인(2018), “바느질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수놓다”,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3009>, 2020.06.01. 검색.

- 라이프인(2018), 협동조합 제도개선 현장에서 답을 찾다,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2802>. 2020.06.02. 검색.

- 박도영, 김혜원, 신민하, 박광원, 정준서, 우대희(2015), 서울시 초·중등 사회적경제 교과서 모델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및 연구. 서울특별시.

- 박영정(2012),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예술인 복지법』제정 경과 및 과제-, 노동리뷰 2012년 7월호.

- 박정민(2018),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질연구 23), 1-24.

- 박주희(2016), 학교협동조합을 통한 청소년소비자의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2(1), 203-228.

- 버챌(Birchall, Johnston, 2003), 장종익 역. 2003. 『21세기의 대안 협동조합운동』. 서울: 들녘.

- 성연옥(2013), 비교론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 특성 연구 : 영국, 이탈리아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3(3).

- 아이쿱 홈페이지, <http://icoop.coop/?p=8010802>, 2020.06.20. 검색

- 유연석(2017, 3월 27일) “예술인도 노동자다”...공연예술인 노조 출범.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756927>, 2020.05.09. 검색.

- 윤형근 (2013), 협동조합의 오래된 미래 선구자들. 홍성:그물코.

- 장승권 외(2011), 한국과 영국의 소비자협동조합 진화과정, 한국비영리연구, 10(2).

- 한상진·황미영(2010), 한국과 영국의 사회적 기업 제도에 대해 관한 비교 연구 :영국의 공동체 이익회사와 한국의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시민 사회와 NGO, 8(1).

- 한석진·김선혜(2017), 공연예술인을 위한 해외복지제도 조사 및 분석- 수혜대상 가입조건을 중심으로, 한국무용학회지 17(1).

국외 문헌

- Birchall, Johnston. 2011. People-Centred Business: Co-operatives, Mutuals and the idea of Membership. Palgrave Macmillan.

- Cooperatives UK (<https://www.uk.coop/>).

- Cooperatives UK(2020), A report on the UK’s co-operative sector.

- Coventry Warwickshire Co-operatives Development Agency(2008)

- Guadian(2014), “Music co-operatives: helping artists survive amid austerity”

- <https://www.theguardian.com/social-enterprise-network/2013/aug/28/music-cooperatives-arts-survival>(2020. 6. 28. 검색)

- Musicians’ Union(2015), ALTOGETHER NOW-A GUIDE TO FORMING MUSIC TEACHER CO-OPERATIVES.

- Shaw, L. (2014). Case study – a quiet revolution: cooperative schools in the UK.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 Euricse

- The Co-operative Group(2010). The Co-operative Group Annual Report & Accounts 2009. Manchester: The Co-operative Group.

- www.swindonmusiccoop.co.uk

- L. Mathew, P. Andrew, M, Sara(2018), Co-operatives unleashed: Doubling the size of the UK’s co-operative sector, New Economics Foundation.

- Wren, David(2020), The culture of UK employee-owned worker cooperatives, Employee Relations, 42(3), 761-776.



프랑스의 예술인 지원 제도와 예술인 조합 사례 연구

목수정(재보 문화예술정책 연구자)

I. 들어가는 말

II. 프랑스의 예술인 지원 제도

III. 프랑스 예술인 조합의 사례

IV. 프랑스 정부의 문화계에 대한
Covid19 피해 지원

V. 국내적용을 위한 분석과 제안

VI. 부록 / 인터뷰

참고 문헌

I . 들어가는 말

1. 계몽군주로부터 비롯된 예술인 지원의 전통

프랑스 정부의 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지원의 기원은 계몽군주인 프랑수아 1세(1494~1547)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수아 1세는 예술가들에게 연금과 레지던스를 지급했고, 루이 14세(1638~1715)는 오페라단, 발레단원들이 평생 연금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수 세기 전부터 구축된 국가와 예술가의 밀착된 관계는 시민들이 예술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

2. 예술인 복지제도의 핵심 가치, 연대

이러한 전제군주 시절의 전통에 혁명과 전쟁을 거치며 프랑스 사회가 획득한 ‘연대’의 가치가 더해지며, 일부 특혜받은 예술가들이 누리던 권리를 모두에게 고루 확산하자는 사회적 투쟁으로 전개된다. 국내 예술가와 해외 예술가의 연대, 서로 다른 영역의 예술가들의 연대, 빈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끼리 공간을 나누는 연대의 정신은 오늘날 이들이 구축한 복지제도의 근본적 토대가 되었다.

3. 지역까지 모세혈관을 구축한 문화부 조직

프랑스 문화부는 1980년대부터 지역문화국을 전국에 두고, 지자체와 함께 직접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과 공연단체, 예술단체, 예술교육 등을 챙겨왔다. 지역에 있는 작은 극단들, 예술단체들도 이들과 긴밀하게 연계하며, 문화예술이 미치는 지역사회의 공적 영향력에 대해 주장하고, 지원을 요청하거나 제 몫의 공간을 요구해왔다.

4.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체계

20세기 이후, 프랑스의 사회변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은 잘 조직된 노조의 힘이다. 이는 예술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드러냈다.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앵페르미땅 실업급여 제도의 실현은, 강력해진 예술 노조의 요구를 문화예술계의 사용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탄탄하게 맺어진 노사 관계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노사 양측의 동등한 목소리로 구성된 공제조합을 구성하게 했으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인 공제조합 운영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노조의 대표는 문화부 장관과 직접 면담하며, 문화예술계의 현안에 대하여 세밀하게 논의하고 협상하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5. 예술인 공제조합과 조합 형태의 다양한 조직들

노조(syndicat)가 발달한 프랑스에서 조합(coopération)은 흔히 나타나는 예술인들의 조직 형태는 아니다. 따라서 조합의 정신이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서 검토해 보았다.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보장기금 징수 관리 기구들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공제조합, 빈 공간을 점거하여 지자체로부터 합법적인 점유에 대한 허락을 얻어내 함께 작업하고 있는 예술인 집단, 혹은 예술가와 장인, 기술자들이 협력하여 장비와 서로의 능력을 나누어 작업을 진행하는 공동협력 집단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6.

예술인의 집(La Maison des Artistes)은 조합의 형태를 띠지 않으나, 조합이라고 부르기에 가장 적합한 조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예술인의 집이 가지는 주요한 기능은 예술가로서 사회보장 제도에 접근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에 조합의 사례가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를 구현하는 방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II. 프랑스의 예술인 지원 제도

프랑스의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제도는 계약에 의해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 관계가 발생하는 공연, 음악, 영화, 방송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가(앵페르미땅)들에 관한 제도와 작가, 화가, 사진작가, 작곡가 등 저작권료에 의해 소득이 발생하는 소위 작가-예술가들에 대한 제도로 크게 이분되어 있다.

1. 앵페르미땅 제도 - 공연, 영화, 방송 분야의 고용보험제도

1) 역사

1936

영화 산업이 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체계를 갖추자 영화계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도 커졌다. 1936년 인민전선 정부 집권 직후 1개월간 노동자 파업이 지속될 때, 영화노동자들도 이에 가세한다. 이들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수입의 지속성을 담보해줄 실업급여를 요구했다. 1개월의 파업 끝에 정부는 최초의 2주간 유급 휴가제도 창설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고, 영화 분야에서 앵페르미땅 실업급여가 탄생한다.

1938

2주간의 유급 휴가제도가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영화 스태프들에게도 2주간의 휴가와 휴가비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1958

국가상공업협회(Unedic, 국가실업보험공단)가 창설되면서 실업수당 제도가 전체 업종에 보편화된다.

1969

영화 스태프에게만 적용되던 앵페르미땅 제도가 배우와 공연 분야의 스태프들에게로 확대된다.

2003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예술인들이 실업급여기금 적자를 발생시킨다는 논리 속에서 앵페르미땅 제도가 후퇴한다.(기준 기간이 12개월에서 예술가 10.5개월, 스태프 10개월로 축소) 예술인들은 파업을 강행하며 격렬히 저항했고, 정부는 임시기금을 만들어, 축소된 제도로 수혜자격을 갖추지 못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과도기적 장치를 마련한다.

2014~16

올랑드 정부가 고강도의 문화예산 삭감과 앵페르미땅 제도 후퇴를 예고하자, 예술노동자들은 2003년 때의 연쇄 파업 재현을 선언하면서 저항했다. 이에 정부는 한발 물러났고, 2016년 8월부터 예술인들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 기간을 2003년 후퇴된 제도 이전으로 복귀, 10개월에서 다시 12개월로 늘어난 기준 체계에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0

코로나-19로 인해 공연계/영화계가 장기 휴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올해는 예외적으로 12개월이 아니라, 24개월까지 기준 개월 수가 연장됐다. 따라서 2021년 12월말 말까지를 기준으로 507시간 이상을 일하면 앵페르미땅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게 된다.

2) 수혜자 규모

공연, 영화, 음악, 방송 분야의 예술가, 기술자, 노동자 중 273,810명이 앵페르미땅으로 일하고 있고, 이중 약 60%에 해당하는 16만 3천 명이 2018년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기준 직종별 구성을 보면 47%가 배우, 가수, 연주인 등 실연가들이고, 21.1%가 방송 분야의 기술자, 15%는 스태프, 9.7%가 제작·기획 인력이며, 6.6%가 연출 인력이다.

3)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기본 조건 :

전 해(12개월간)에 507시간 이상을 공연/방송/영화 분야에서 계약에 근거해 일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된다. 소득액과 상관없이 연 507시간을 일하면, 정해진 실업급여 하한선 이상은 받을 수 있다. 1일 최소 실업급여는 31.36유로, 수급액 상한은

1일 152.77유로, 월 3,984유로(2019년 기준)다. 스태프는 일한 시간을 체크하여 신고하고, 배우 혹은 연주자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12시간/1일) 단위로 작업시간을 계산한다.

(2) 분담금 :

앵페르미땅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에 대한 분담금뿐 아니라 연금, 의료, 가족수당, 산재보험, 직업교육 등 기타 사회보장 분담금도 함께 지불한다. 본인 부담액은 임금 총액의 20% 내외, 사업주 부담액은 임금의 39%이다. 실업급여만 따지면 분담금은 예술가가 3.35%, 고용주가 10.50%(2018)를 부담한다.

(3) 평균 수급액 :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앵페르미땅들의 월평균 급여는 2,322유로(약 313만 원)이다. 이들이 수급한 실업급여액은 월평균 1,805유로(약 243만 원)로, 급여의 78% 선이다.

4) 실업급여 외의 앵페르미땅에 대한 제도적 지원

(1) 직업 훈련, 직업 전환 교육 :

2년 이상 앵페르미땅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 년에 정해진 날짜만큼(2년 된 배우는 48시간, 5년 된 배우는 120시간까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 스태프의 경우, 직업교육 시간이 2배 이상 길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직업교육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현재 직업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 훈련뿐 아니라 폭넓은 직업 전환을 위한 능력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은 직업교육 보험에서 제공되거나, 본인이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또한, 직업교육을 받는 시간은 일한 시간에 포함된다. 1972년부터 전문성을 키워온 AFDAS가 직업교육과 관련한 제반 프로그램들을 담당한다.

(2) 휴가비 지급(Congé Spectacle) :

앵페르미땅들은 일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프랑스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연 최소 5주간의 유급휴가를 따로 받지는 않지만, 휴가비는 지급받는다. 2019년 평균 지급 액수는 약 2,120유로(약 286만 원)였다.

(3) 각종 입장료 할인 :

앵페르미땅들은 항시적으로 고용안정센터에 등록되어 있다. 즉, 형식적으론 잠재적인

구직희망자로 등록되어 있어 그들에게는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지하철 정기권, 각종 전시, 영화관, 공연에서의 입장권 할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

AFDAS(공연예술직업보험)는 문화, 예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직업 능력을 관리하는 기구이자 예술가-작가의 직업재훈련을 위한 기금을 관리하는 기구로 노사가 지불하는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1972년 공연/영화계 조직들의 주도로 창설되었으며, 3억 유로 상당의 기금을 축적하고 있고, 1972년 관련 법이 만들어진 이후, 현재 4만여 개의 기업들이 직업재훈련을 위한 기금에 분담금을 내고 있다. 약 60만 명에 달하는 공연, 영화, 언론, 방송 분야의 직업인의 직업 재교육을 담당한다. AFDAS가 지원하는 직업교육 기관의 수는 8,636개다. 정부로부터는 약 3백6십7만 유로의 지원금을 받는다. AFDAS는 해당 업계의 직업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적절한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교육 기관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AFDAS는 1) 대안적 능력을 키우도록 동반해주며 2) 특히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의 직업 재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끌며 3) 해당 영역의 직업인들이 직업적 능력을 자격증 시스템을 통해서 공인받도록 이끌며 4) 공연예술계의 예술가, 작가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재훈련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개발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전국에 11개의 지사가 있다.

5) 앵페르미땅 제도의 장단점

(1) 낮은 진입 장벽 :

이제 막 시작하는 청년 예술가들, 스태프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다. 일은 많이 해도 급여는 낮을 수 있는 젊은 예술가들은 이 제도를 통해 직업에 진입하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

(2) 노사 간 합의로 운영 :

1936년 탄생 이후, 지금까지 지속된 이 제도를 끌고 가는 원동력은 탄탄하게 구축된 신뢰 속의 노사 관계에서 나온다. 연대의 원칙을 통해,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을 도우며 서로 존엄한 삶의 권리를 구축하는 체계다. 큰 틀에선 국가가 개입하고 중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노사가 상호 합의하여 운영해 간다.

(3) 동종업계 내의 빈부 차 조절 :

동종업계 내 존재하는 수입의 극단적 불평등이 이 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재분배된다.

(4) 안정성 보장 :

꾸준히 일만 한다면 일정한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가족을 부양하며 일할 수 있다.

(5)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

프랑스의 노조 가입률은 10% 안팎으로 낮지만, 단체협약 적용 비율은 높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영역의 기업과 노동자가 단체협약의 규칙에 종속되어 있다. 협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극단, 공연장, 프로덕션이 있는 경우, 일차적으로 상위 노조가 해당 단체에 경고장을 보낸다. 이 단계에서 절반 정도의 문제가 해결된다. 업계 내 단체협상의 결과를 준수하지 않는 극단이 있다면, 문화부에 노조의 이름으로 고발하여 이후의 문화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게 할 수 있다. 이는 공적인 지원에 크게 의지하는 프랑스 공연계에서 강력한 제제가 된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재판소(prud’homme)에 가야 한다. 노동재판소는 일반 법정과 달리 사측과 노측에서 나온 숙련된 직업인들이 판결을 하며 노동자 승소비율이 높다.”⁰¹

(6) 제도의 약점 :

고용 관계가 발생하는 직업군에만 적용된다. 영화, 연극 장르에서 일할지라도 희곡 작가나 시나리오 작가들은 실업급여를 탈 수 없다. 미술, 문학 등 여타 장르와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장르 간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또 다른 나라 벨기에는,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한 해 동안 작품을 팔아서 얻는 수입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으로 산정, 이를 기준으로 한 실업급여를 화가 작가 등 작가-예술가들에게도 지급하고 있다.

01 Denis Gravouil, 2018.1.18

2. 작가-예술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1) 개요

(1)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주는 예술인의 사회보장분담금

작가-예술가(화가, 문인, 희곡작가, 작곡가, 사진작가 등)는 저작권료나 작품료를 받는 직업 분류상 자유직업인(Profession Libérale)의 직업군에 속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봉급생활자와 같은 체계에 속해 있어, 봉급생활자가 내는 수준의 분담금(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의 15-20%)만 지급하면 되므로 자영업자들에 비하여 적은 세율을 부담하는 혜택을 입고 있다. 나머지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일부 예술 관련 업체들이 분담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작품 구입 및 유통에서 커다란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공의 자금으로 지불된다고 말할 수 있다.

(2) 2020년부터 단일화된 창구

시각 예술인들을 위한 프랑스의 사회복지시스템은 두 개의 기관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하나는 예술인의 집(Maison des Artistes: 조형예술가, 그래픽예술가)이고, 또 하나는 작가사회보장협회(AGESSA : 문인, 삽화가, 작사가, 작곡가, 시나리오 작가, 사진작가)인데,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예술가들이 많아 소득신고가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2020년부터 이 분담금 징수 창구는 Urssarf(사회보장 분담금 징수 기구)로 통합되었다.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간소화의 장점이 있으나, Urssarf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전문 징수 기관일 뿐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은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3) 차별적 지위의 폐지

양쪽 시스템에 속한 모든 예술가들에게는 두 가지 차별적인 지위가 존재해 왔다. 예술 활동을 통한 연 소득이 8,487유로(약 1천 145만 원)를 넘는 경우(정회원)와 그 이하인 경우(예비회원)인데, 전자만 예술가-작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사회보장 혜택을 수혜할 수 있어, 그 불평등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2020년부터는 이러한 최저 연 소득 기준이 사라졌다. 금액이 적더라도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만 있으면 예술가로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다. “그러나 소득에 따른 신고가 아니라, 미리 최소 분담금을 정해서 고지하고, 차후 차액을 보존해주겠다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예술인들의 불만을 샀다. 또한, 예술가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직업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에 진입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중의 과세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제도 시행 첫해이며,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상태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변화된 제도가 시작되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⁰²

2) Maison des Artistes(예술인의 집)

(1) 2020년부터 축소된 예술인의집의 기능

예술인의 집은 국가가 인정한 시각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관리 기구인 동시에 시각 예술인들의 권리를 도모하는 협회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예술인의 집은 과거의 사회보험 분담금 징수 기구의 역할은 없어졌지만, 여기서 발행하는 협회 회원 증서에 따라 시각 예술인들은 그 자격으로 사회보장 제도에 진입할 수 있다. 개정된 법은 모든 미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미술활동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미술활동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장 분담금을 Urssarf에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 회원증은 자신의 활동한 작품 내역을 입증하고, 회원비(연 24유로)를 내면 얻을 수 있다.

(2) 사회보장 제도 진입 이외에 예술인의 집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

- 프랑스 대부분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 공공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레지던스에 지원할 자격이 생긴다.
- 회원증을 제시하면, 미술품 전문 매장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이 할인된다.
- 예술인의 집이 자체의 현대예술가들의 사이트를 만들어 예술가들의 작업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 이 플랫폼을 통해 예술가들은 자신의 프로필과 자신의 작품을 관객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고, 자신의 전시 일정을 알릴 수도 있다.
-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의 집 자문 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02 Baptiste Cesar, 2020.7.1

3. 공연장을 통한 지원 제도

프랑스의 공연장들은 국립, 공립, 민간극장까지 광범위하게 국가나 지자체들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 지원은 결국 극단들이 대관료를 내는 대신 극장들이 극단들을 초청하여 공연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본적 재원이 되었다. 따라서 극장에 대한 지원인 동시에 공연계 전체에 대한 지원이 된다.

1) 공공 공연장 지원

(1) 5개의 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

70~80%의 예산, 문화부가 직접 지원

(2) 39개의 드라마센터(Centre Dramatique National) :

정부 40%, 지자체 30% 지원

(3) 71개의 국립 무대(Scène Nationale) :

정부 25%, 지자체 50% 지원

이들의 공연 프로그램은 대관 없이 온전히 초청한 공연이나 자체 제작 공연으로 채워지며, 극단들은 대관료나 홍보, 티켓팅에 대한 부담 없이 공연에 몰두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2) 협약 극장(Scènes Conventionnées)

협약 극장이란 민간극장이나 정부, 지자체로부터 지속적 지원을 받는 극장이다. 전국 124개의 공연장이 협약 극장의 지위를 가지며 있으며, 매년 문화부 지역문화국(DRAC)을 통해 운영예산의 10%가량을 지원받고, 광역, 기초단체들로부터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역문화국이 제시하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 3년 단위로 국가가 지원하는 협약 극장의 지위를 얻고, 계속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 지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 국가로부터 협약 극장의 지위를 얻으면, 지자체로부터도 지원을 얻기가 수월해지므로 극장들로서는 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적 성과를 인정받고, 관객의 높은 참여,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등이 협약 극장이 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다.

3) 전문 독립극단

프랑스에는 약 800여 개의 전문 독립극단이 있고, 이 중 200여 개는 공연장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극단은 3년에 한 번씩 문화부의 해당 지역 지부에 해당하는 지역문화국(DRAC)으로부터 협약 극단(Compagnies Conventionées)의 지위를 심사받으며, 3년간 문화부가 요구하는 극단의 의무를 수행하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1) 협약극단 지원의 조건 :

연간 약 1만 5천 유로 - 7만 유로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은 극단 소속 인원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3년간 적어도 2개 이상의 새 작품을 만들어야 하며, 120회 이상의 공연을 무대에서 상연해야 한다. 또한, 협약 극단이 되기 전 적어도 1번 이상 프로젝트 지원을 받은 극단이어야 한다. 800여 개 전문극단 가운데, 약 400여 개 극단이 협약 극단이다. 협약 극단이 되면 예술적 성취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지자체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프로젝트 지원 :

협약 극단의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개별 작품 제작을 위해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으며, 협약 극단들도 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견습 예술가 지원 :

신진 연출가나 극작가들이 직접 극단에서 현장을 경험하면서, 숙련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다. 견습 연출가를 맞아들일 때 최대 25,000유로를 지급하며, 이 금액의 절반은 견습 연출가에게 지급된다. 마찬가지로 견습 극작가를 연극작품 제작에 긴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작품 제작에 참여시킬 때, 최대 7,000유로까지 견습 극작가에게 지급된다.

4) 민간극장(Théâtre Privé)

(1) 민간극장의 정의 :

지자체와 문화부의 지원금에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협약 극장들과 달리, 자체 극단을 갖지 않고 공연팀을 초청하여 상연하는 주체, 즉 공간으로서만 기능하는 극장들을 프랑스에선 민간극장(Théâtre Privé)라 부르며, 이들은 ASTP(민간공연장지원협회)에 속해 있다.

***ASTP(민간공연장지원협회) :**

1964년 민간 공연장들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공연 제작과 상연을 위해 설립되었다. 민간극장들이 각자의 예술정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독립적인 공연을 지속하게 하기위해 만들어진 연합체이다. 이 협회에 가입된 민간 공연장들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지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공연진흥기금>에서 충당되며, 이는 입장권에 포함된 기금(3.5%)에 의해 구축된다. 여기에 정부(문화부)와 파리시(절대다수의 민간극장이 파리에 있다)의 지원이 추가된다.

(2) 민간공연장 지원 :

민간공연장지원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개별적인 극단 경영과 유지를 위한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며, ② 민간 공연장들이 단체 협정에서 맺은 노사 간 규율과 사회적 의무들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③ 이 외에도 연간 정해진 횟수 이상의 공연을 상연하고, ④ 거기에 따른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 민간공연장 운영 지원

민간극장지원협회에 속한 모든 공연장은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손실분의 30~40% 정도에 한하여 적자를 보충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연장은 지속적으로 창작 공연에 참여해야 한다. 창작 작품을 공연한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창작 지원

문화부와 파리시, SACD(작가작곡가협회)에 조성된 예산을 합한 이 지원은 민간공연장에서 새로운 연극이 창작되고, 예술적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 각각의 극장이 창작극을 활발하게 제작하고, 레퍼토리를 채신하게끔 독려한다. 창작 지원은 민간 공연장에서 공연된 극작가의 최초 5개의 작품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초연이어야 하며, 불어로 쓰였거나 외국 작품의 불어 번역 초연이어야 한다. 2만~3만 5천 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재정 위기에 직면하여 운영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때 최대 5년 동안 무이자로 자본금을 지원하기도 하며, 26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10유로 정액 할인권을 제공하고, 이렇게 팔린 표 한 매당 5유로씩 파리시 재정으로 보상해준다.

4. 국립조형예술센터(CNAP: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의
현대미술 지원

국립조형예술센터는 모든 시각예술(회화, 조각, 사진, 설치, 비디오, 디자인 등) 분야의 창작 진흥을 지원하는 문화부 산하의 행정기관이다. 1982년 미테랑 정권하에서 출범하였으며, 국가가 직접 사들여 구축하는 현대미술기금도 관리한다(약 10만여 점의 예술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의 공공 컬렉션으로 최대 규모다). 예술작품 주문, 구입, 전시 공동주최, 예술작품 복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대미술의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박물관, 현대미술지역기금, 예술센터 등의 공공영역뿐 아니라, 갤러리와 예술재단, 예술출판 등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도 담당한다.

1) 전시 지원

프랑스에서 열리는 현대예술가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전시 비용을 최대 50% 선(약 3,000~5,000유로)에서 지원한다. 전시 영역은 장식미술,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데생, 판화, 설치, 뉴미디어, 회화, 퍼포먼스, 사진, 조각, 비디오 등이다. 이 지원은 민간 갤러리가 주관하는 개인전 혹은 단체전을 그 대상으로 한다. 지원되는 전시에 출품하는 작품은 이전에 한 번도 지원되지 않은 작품들이어야 한다.

2) 출판 지원

CNAP은 갤러리에서 진행하는 현대미술 전시의 카탈로그나 예술가에 관한 책(예술가의 국적과 관계없이)의 발행을 지원한다. 이 또한 민간 현대미술 갤러리를 통한 지원이며, 최소 500부 이상을 출간해야 하고, 프랑스 내에서 배포되어야 한다. 무료 배포되는 카탈로그나 책은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최대 4,000유로까지 출판비용의 50%를 지원한다.

3) 해외 예술마켓 참가 지원

해외에서 열리는 예술마켓에 참가하는 갤러리를 통해 지급되며 마켓부스의 임대 영수증과 사진 등을 참고로 전체 참가비용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규모에 따라 2,500유로, 5,000유로, 7,000유로 등의 지원 단위가 있다. 하나의 갤러리는 한 해에 두 번까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지원받을 수 없다.(2019년 29개의 갤러리가 이 지원을 받았다.)

4) 예술프로젝트 지원

CNAP은 예술가 개인이나 예술집단의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하기도 한다. 초기 연구 단계에서 구체적인 실현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지원은 이뤄진다. 연구 조사 단계에는 외국에 간다거나, 일정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특정한 노하우를 필요로 할 경우

등이 포함된다. 외국 예술가이건 프랑스 예술가이건 프랑스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지원이다. 1년에 1회 이상 지원되지 않으며, 금액은 4,000유로, 8,000유로, 1만 2,000유로 세 가지 종류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① 예술가의 작품 전체의 수준과 ② 해당 프로젝트와 예술가 작업 전체와의 유기적 관계, ③ 제안된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을 가지고 심사한다.

5) 작품 구입 지원 : FRAC(프락: 지역현대미술기금)

1982년, 미테랑 정부하에서 설립된 현대미술의 공공 미술 컬렉션 기금이다. 전국에 23개의 지역 프락이 있으며, 각 지역이 현대미술 영역에서의 문화재를 구축한다. 광역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매년 기금을 조성하며, 현재 각 지역에서는 예술가 약 3천여 명의 예술작품 3만여 점을 구입, 소장하고 있다. 작품을 구입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 해외의 문화 공간, 학교 공간 등을 통해 널리 전파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 밖에 공공 주문, 프로젝트 개발 연구 지원, 예술가 프로젝트 지원 등 지역에 현대예술을 통한 문화유산을 구축하고 예술 창작을 지원한다. 각 지역의 프락은 현대미술의 특정한 범주에 특별히 전문화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이 구축한 작품들은 지역의 파트너들, 즉 문화 관련 기관, 학교, 지자체 등을 통해 배급된다.

5. 예술창업 인큐베이팅과 레지던스 : 쌍까트르(CENTQUATRE-PARIS)

1) 개요

쌍까트르르는 2008년 파리에 새롭게 오픈한 시립 협동문화공간이다. 파리 19구 오베르빌리에가 104번지에서 120년간 파리의 공공 장례식장으로 쓰이다 1997년 그 공식적 기능을 마감한 이 건물은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탄생하였다. 이후 파리 북부지구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단숨에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104라는 숫자의 불어식 발음인 쌍까트르를 공간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체 39,000m²의 공간 안에 예술작업을 위한 다양한 크기의 작업장을 갖추고 있다. 매년 200여 명이 1개월~12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작업할 수 있는 예술가 레지던스, 200석과 400석의 객석을 갖춘 두 개의 무대, 전시나 패션쇼, 컨벤션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문화예술을 테마로 하는 스타트업 업체들의 인큐베이팅을 위한 사무 공간, 매장, 강의실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Centquatre-Paris

2) 공간 구성

- 1,900㎡ : 사무실, 상업 공간
- 4,000㎡ : 16개의 작업실, 18개의 사무실
- 800㎡ : 104팩토리(기업 인큐베이터)
- 500㎡ :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위한 시설
- 6개의 아파트(원룸 - 방 3개 짜리까지)
- 1,400㎡ : 창고
- 주차 공간 : 162대 주차 가능
- 2,500㎡ : 기술 관리실(전기, 인터넷, 배선, 조명 등)
- 35,000㎡ : 대중들을 위해 자유롭게 열려있는 공간
- 500㎡ : 지역 주민들과의 협업을 위한 공간(Le Cinq)

3) 기능

(1) 104 factory 예술창업 인큐베이터 :

예술/문화/건강/생태/여행 등의 분야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예술인과 청년 창업 준비자들의 창업을 지원한다. 예술을 매개로

예술가와 대중들의 공생 공간을 만드는 데 핵심 가치를 두는 104팩토리는 미술, 연극, 춤, 음악, 영화, 비디오, 요리, 디지털 등 순수 예술에서부터 첨단 기술까지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혁신적인 창업자들에게 스타트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술가들이 구상하고 있는 제품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104팩토리 측에서 이를 검토한 후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간과 장비 등을 지원하며 창업과 상품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화적, 창의적인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를 선정하여, 비즈니스 콘셉트, 홍보, 디자인 등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104팩토리가 보유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 104팩토리 내 사무실 공간, 재정적인 도움까지 제공한다.

- 2013년부터 55개의 스타트업 업체가 이곳에서 탄생하였으며
- 209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 2천 2백 2십만 유로(약 300억)의 자금이 스타트업을 위해 관리되고 있으며,
- 여기서 출발한 스타트업 업체의 75%가 개업 후 3년 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문화부, 파리지, 일드프랑스, Bpi(공공투자은행)가 인큐베이터에 지원, 협력하고 있다.

(2) 주민들과 소통하는 예술가들의 레지던스 :

쌍까트르는 예술가에게 사무실과 작업실을 제공한다. 보통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계약을 하고 이곳에 머물며, 홀로 혹은 다른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장·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발표한다. 아틀리에에는 2주에 한 번씩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과 영화상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한다. 2019년에는 총 210명의 예술가에게 공간이 제공되었는데, 공간을 제공받는 예술가들은 ① 실험 예술가, ② 배급/제작 작품 참여 예술가, ③ 협력 예술가, ④ 실험 참여 예술가 등의 4개 범주로 나뉜다.

• 실험 예술가

지구촌의 모든 지역, 모든 예술 영역에 걸친 예술가들의 지원을 받아 선별하여 작업실을 제공한다. 이들은 22㎡에서 297㎡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작업장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연극, 음악, 무용 등의 영역이 가장 많은 작업장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2019년엔 총 95명의 예술가가 이 실험 예술가의 자격으로 레지던스에서 작업했다.

- 배급/제작 작품 참여 예술가
쑹까트르 파리는 직접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작품을 위한 예술가들을 레지던스에 맞이한다. 2019년에는 66명의 예술가가 이러한 케이스로 쑹까트르에 입주하여 작업했다.
 - 협력 예술가는 쑹까트르 디렉터의 초대를 받아 여러 시즌을 장기적으로 파트너가 되어 작업하는 작가들이다. 그들은 쑹까트르에 초대되어 장기 프로젝트를 제작하거나, 여러 가지 작품들을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2019년에는 39명의 작가가 협력 예술가의 자격으로 쑹까트르에 머물며 작업했다.
 - 도시 문화 실험실은 열린 공간에서 관객들과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자유롭게 예술 작업을 실현하는 공간이다. 각자가 자신의 무대를 만들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실험한다. 2015년부터 쑹까트르는 예술가들을 맞이하여 관객을 위한 공간에서 함께 조율하며 작업하게 한다. 지난해에는 10명의 예술가가 이 케이스로 합류했다. 모든 영역의 예술 장르가 만나고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가 함께했다. 이 실험실의 목적은 예술가들이 창작 작업을 해가는 데 있어 일반 대중들이 자유롭게 합류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 산업 프로젝트 레지던스는 쑹까트르가 외부에 있는 공간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을 맞이한다. 그랑파리 익스프레스(파리와 파리 외곽을 잇는 광역전철) 프로그램은 몇몇 전철역에서 진행되는 예술문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6명의 예술가를 맞이하여 이 작업에 참여하게 했다.
 - 또한 레지던스 공간의 10%는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임대하기도 한다. 예술가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신청서를 내고, 필요한 공간을 연극이나 무용 극단, 오케스트라, 강연, 예술 문화 프로젝트, 연습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9년엔 23개의 극단 혹은 예술집단이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했다.
- (3) 어린이의 집 : La Maison des Petits
- 어린이들의 예술적 활동 체험 공간이다. 이 공간에 구비된 장난감은 대부분 예술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2명의 심리학자와 1명의 아티스트가 상주하며 아이들의 예술 활동을 도와준다. 또한 혁신적인 생산을 꿈꾸는 창작 공방 ‘누벨 파브릭(Nouvelle

Fabrique)’에서는 나무와 디지털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진행돼 성과물을 보여주기도 한다.

(4) 공연과 전시 :

연극, 춤, 음악, 디자인, 시각예술, 조각, 미술, 서커스 등 다양한 양식의 예술 프로젝트가 선보인다. 10차례의 전시, 12회의 축제, 620건의 공연이 이루어지며, 연간 50만의 관객들이 다녀간다. 2019년에는 18건의 자체 제작 공연을 순회 공연하기도 했다. (4건 해외순회, 14건 국내 순회공연)

(5) 문화 엔지니어링 활동 :

2014년부터 쑹까트르는 국가적 혹은 국제적 범위에서 도시계획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문화적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문화적 도시설계>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도시설계나 건축,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개입해 왔다. 프로젝트 개념 설정 단계에서부터 작업의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자체나 문화 기관, 개발업체의 파트너로 참여한다. 주로 역사유적지를 현재적 가치에서 복원해내는 일, 현실적 환경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안착시키는 일, 복합적인 도시지역 속에서 주민들을 위한 예술 활동을 구상하고 실현해내는 일이 작업의 주 내용이다.

4) 사명

(1) 주민이 모든 장르의 예술로 향하게 하는 연결 통로 :

다양한 영역의 예술가들이 이 공간에서 작업하며, 그들의 작업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제적 네트워크 조성 :

같은 목적으로 조성된 유럽의 현대예술을 위한 공간들과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이러한 새로운 예술 공간들은 사회에서 예술가의 자리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작품 제작 조건과 현대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에도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3) 지역사회의 활성화 :

쑹까트르의 건립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리 북동부 지역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활기찬 문화예술공간의 설립과 그곳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에 문화적 활력과 사회적 부가가치를 드높이는 것 또한 쑹까트르의 목표이다.

5) 인적 구성

(1) 이사회 구성인원 :

정치인 9명(시의원, 파리 19구 구청장), 문화예술계 인사 6명, 직원 대표 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 4회에 걸쳐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운영에 따른 주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진다.

(2) 직원 :

정규직 54% / 앵페르미땅 19.3% / 계약직 19.2% / 인턴 3.5% / 견습생 2.8%

6) 운영 예산

쌍까트르의 연간 총예산은 약 1,500만 유로 수준이다. 이 중 약 900만 유로를 파리시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 수익으로 충당한다.

[2019년 수입 항목]

항 목	금 액
파리시 운영 지원금	8,500,000유로 (54.5%)
파리시의 안전관련 유지보수 지원금	400,000유로 (2.6%)
예술 프로젝트	560,652유로 (3.6%)
문화 활동	138,427유로 (0.9%)
이노베이션	316,999유로 (2.0%)
입장료, 국내 해외 순회 공연	1,375,691유로 (8.8%)
상업적 수입	1,361,177유로 (8.7%)
상업 공간 임대 수입	182,998유로 (1.2%)
문화적 엔지니어링(산업화 프로젝트)	1,522,348유로 (9.8%)
메세나	236,559유로 (1.5%)
행정 수입	1,015,837유로 (6.5%)
계	15,610,688유로 (약 210억 원)

[2019년 지출 항목]

항 목	금 액
공간 유지 보수	2,882,624유로(18.7%)
일반 비용, 관리비, 부담금	329,746유로(2.1%)
정규 인력 인건비	5,774,794유로(37.5%)
비정규 인력 인건비	162,198유로(1.1%)
홍보비	421,361유로(2.7%)
상품 교환 비용	101,534유로(0.7%)
감가상각비, 자재 비축	401,387유로(2.6%)
문화활동비	5,340,878유로(34.7%)
계	15,414,523유로(약 208원)

출처 : Centrequatre-Paris 2019년 연차보고서

6. 해외 소재 프랑스 레지던스 체류 지원

해외 레지던스는 예술가에게 익숙하던 세계로부터의 단절인 동시에 넉넉한 지원금과 잘 갖춰진 창작 여건 속에서 예술가에게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를 제공하는 제도다. 다양한 영역의 예술가들이 한데 모여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영감을 복돋는 역할도 하며, 해당 지역의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튼튼한 예술적 유대를 맺기도 한다.

1) Villa Kujoyama 빌라 쿠조야마

(1) 개 요 :

프랑스 예술가들을 맞이하도록 조성된 일본 교토(Kyoto)에 있는 예술가촌이다. 작가이자 외교관인 폴 클로델(1868~1955, 까미유 클로델의 남동생)이 일본 대사로 있을 때 사들인 땅을 프랑스 정부가 예술가촌으로 조성했다. 로마에 있는 빌라 메디시스, 마드리드에 있는 사 벨라스케스와 함께 프랑스가 소유한 해외 레지던스 중 가장 권위 있고, 예술가들이 선망하는 레지던스이자 일본에 있는 프랑스 문화원(Institut Français) 산하의 5개 기관 중

하나다. 일본 문화, 그리고 일본 예술가들과 관계를 맺으며 창작 활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머물며 팔목할만한 성과를 일궈 냈다. 반면 일본인들은 이곳은 프랑스 예술이 전해지는 직접적인 통로이자 교류의 장으로 여겼다.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프랑스 문화원의 핵심 메세나인 베탕쿠르 재단의 지원을 받아왔다.

(2) 역사 :

제일본 프랑스 대사로 부임한 폴 클로텔은 당초(1926)에 프랑스 문화원을 설립할 목적으로 교토에 있는 지금의 부지를 구입했다. 폴 클로텔의 생각은 당시 일본 상공회의소장의 협력으로 힘을 얻어 프랑스 문화에 우호적인 일본인들 그룹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일본 지식인들의 모임을 결성하게 되면서 필요한 자금을 구축했고, 1927년 문화원을 건설하게 된다. 그것이 빌라 쿠조야마의 전신이다. 1970년대부터 건물이 낙후되기 시작하여 1981년에 철거했고, 1992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며 예술가 레지던스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1992년 레지던스로 처음 문을 연 이후 건축, 미술, 문학, 사진,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매년 15명까지 맞이했다.

(3) 선발 과정과 기준 :

빌라 쿠조야마는 일본과 연관을 가진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예술영역(총 11개 분야 :건축/조경/도시공학, 디지털 아트, 조형예술, 만화, 영화/비디오, 미술평론/학예사, 공연/무용, 디자인/그래픽, 문학, 공예, 의상디자인, 음악, 사진, 연극)의 예술가들에게 열려있다. 듀오 프로젝트는 프랑스 작가 1인과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작가 1인으로 구성된 2인의 공동 프로젝트여야 한다. 매년 예술학교에서 빌라 쿠조야마 레지던스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젊은 예술가들의 참가 지원을 독려하기도 한다. 예술가로 활동한 지 최소 5년 이상인 프랑스인, 혹은 프랑스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며 작업해온 외국인에게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고, 체류 기간은 실험과 연구에 바친 시간일 뿐 그 안에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에 대한 일본 내 프랑스 문화원의 의견을 구한다.
- 후보자가 제시한 프로젝트와 경력 등을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검토한다.
-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
- 최종선발위원회를 통해 선발자를 결정한다.

(4) 현황 :

2014년부터는 교류와 공동작업의 역할이 강화되어, 프랑스 예술가와 일본 예술가의 만남을 주선하여 서로에게 각자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 프랑스와 일본 예술가의 공동창작(collaboration)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일본 대학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 간의 현대예술과 전통예술 간의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 내에서 예술 수도를 자처하는 교토시에는 6개의 예술 전문대학이 있어서, 빌라 쿠조야마에 초대되는 예술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0년에는 모두 15팀(16명)의 예술가가 이 레지던스의 혜택을 받았고, 무용, 사진, 디자인, 미술, 만화, 음식, 문학, 의상, 칠기 공예 등 다방면에 걸친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선발된 예술가들에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체류하는 비용으로 최대 45,000유로까지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체류자로 선정되고 계약을 할 때 40%, 작업이 끝나고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 20%, 결과 보고서에 대한 일본에 있는 프랑스 문화원 측의 최종적인 확인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 40%가 지급된다.

(5) 공간 구성 :

작업실 겸 거주 공간 1인당 64㎡의 개인 공간 6개 / 상영관 1 / 전시장 1 / 접견실 1 / 자료실 1 / 테라스 1 / 중앙홀 / 사무실

2) Villa Medicis 빌라 메디시스

(1) 개요 :

빌라 메디시스는 1666년 루이 14세에 의해 만들어진 로마에 있는 프랑스의 아카데미다. 빌라 메디시스는 예술가들과 연구자들을 맞이하여 그들이 자신의 예술적, 학문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빌라 메디시스가 지금까지 맞이해온 사람들 중에는 앵그르, 베를리오즈, 드뷔시 등 저명한 예술가들이 즐비하다. 오늘날 빌라 메디시스는 프랑스 예술가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세계의 예술가들에게 그 문이 열려있다. 1년간 이곳에서 머무는 예술가들은 다양한 영역의 예술가들과 만나 교류하며, 영감을 얻고 확대하며, 새로운 창작의 동기를 부여받는다. 예술작업 이외에 그 어떤 의무도 끼어들지 않는 완벽한 예술창작의 조건이 주어지는 1년은 프랑스 예술가들에게 천국에서 보내는 1년으로 간주되곤 한다. 로마시를 굽어볼 수 있는 핀치오 언덕 위에 있는 이 16세기 르네상스식 궁전은 7헥타르에 이르는 넓은 정원 위에 서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로마주재 프랑스 아카데미가 이곳에 있으며 매년 소수의 예술가를 이곳에 맞이하여 여유로운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한다.

(2) 역사 :

1666

루이 14세가 궁전을 루브르에서 베르사유로 옮길 무렵, 콜베르의 영향 아래 당시 귀족들의 후원을 받던 예술가들을 위한 안락한 주거 공간이자, 교육 공간으로 빌라 메디시스를 창설했다. 왕에게 연금을 하사받은 젊은 예술가들도 빌라 메디시스에 머물면서, 로마에서 예술 교육을 받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1720

1720년에 이르러, 회화와 조각에 국한되어 있던 영역에 건축이 추가 되면서, 빌라 메디시스가 수용하는 예술세계도 한층 확장된다.

1789~95

혁명 기간 동안, 일부 궁이 약탈되거나 훼손되기도 했다. 몇몇 예술가들은 나폴리나 피렌체로 피신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이후 빌라 메디시스를 관리하는 로마의 프랑스 아카데미는 폐지되는 수순을 밟았다.

1803

1795년 다시 로마의 프랑스 아카데미가 복원되었으나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했고, 1803년에 이르러 지금의 자리를 찾았다.

1903

20세기에 이르러 여성 입주자도 빌라 메디시스에 받을 디딜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1959

드골 정권하에서 앙드레 말로가 문화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빌라 메디시스는 외교부 산하에서 문화부 산하로 그 지휘권이 옮겨졌다. 앙드레 말로가 첫 디렉터로 화가 발튀스를 임명(1961)하면서, 빌라 메디시스는 발튀스의 지휘 아래 새로운 르네상스기를 맞이한다.

(3) 레지던스 입주/연금 수혜자 :

빌라 메디시스에는 두 가지 범주의 입주자가 있다. 1개월의 단기 체류를 할 수 있는 레지던스 입주자와 1년까지 장기 체류가 가능한 연금수혜자가 그들이다. 전자는 1일 10유로의 최소 비용을 내고 아파트를 사용하고, 연금 수혜자는 1년의 시간을 머물며 예술 창작을 위한 지원금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 레지던스 입주자 :
레지던스에 입주하고자 하는 예술가는 국적과 무관하게 프랑스어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하여 4주까지 체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서류는 1년에 두 번 심사가 이뤄진다.

- 연금 수혜 입주자 :
빌라 메디시스는 매년 초 최대 1년까지 새로운 연금 수혜 입주자를 선발한다. 이들은 예술가로서의 역량이라는 기준에 따라 국제적인 심사위원들에 의해 선발된다. 문학, 음악, 미술, 예술이론, 영화, 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지원할 수 있다. 20세 이상의 프로 예술가이어야 하고, 국적과 무관하게 불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후보자는 빌라 메디시스에 머무는 동안 연금을 수혜하며 진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연구 과제를 구체적으로 서류를 통해 기술해야 한다. 매년 14명의 입주자가 선정되며, 이들은 이곳에 머무는 동안 매달 평균 3,300유로의 연금을 수령한다. 레지던스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와 아이들도 원하면 같이 입주해서 지낼 수 있다.

(4) 예산 :

연간 약 700만 유로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중 470만 유로가량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받는 빌라 메디시스는 예술가들에게 지나치게 여유로운 창작 조건을 제공하는 반면, 그 결과물인 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엄중한 요구와 평가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의회나 언론을 통해 종종 받기도 한다. 나머지 230만 유로는 메세나 혹은 자체 수입으로 충당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예술품 컬렉션이 많기 때문에 늘 풍성한 전시가 이뤄지고, 가이드를 동반한 예약 방문도 진행된다. 메세나, 예술인들의 다양한 회합, 리셉션 등이 넓고 아름다운 정원과 건물 내 갖춰진 여러 공간에서 수시로 이뤄진다. 공간의 일부(10개의 방)는 전설적인 장소인 빌라 메디시스에서 묵고자 하는 여행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호텔 서비스로 제공되기도 한다.

프랑스인을 위한 해외 레지던스가 있는 반면, 프랑스에 와서 머물며 작업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스도 있다. 시테 인터내셔널 데자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가 그것으로 파리 마레 지구, 몽마르트 지구에 각각 1개씩 건물을 두고 있다.

1965년 문을 연 시테 인테내셔널 데자르는 모든 장르의 외국 예술가들을 맞이하기 위한 레지던스다. 개인용 주거 겸 작업공간뿐 아니라, 집단적인 창작 활동이 가능한 대규모 아틀리에나 음악인들을 위한 연습 스튜디오, 전시장도 갖추고 있다. 20~60㎡에 달하는 326개의 작업실이 있고, 매달 300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머물며 생활하고 작업한다. 예술가들은 파리 시내에서 구할 수 있는 월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지불하고 이곳에 머물 수 있다.

III. 프랑스 예술인 조합의 사례

1. 예술인 공제조합 : 오디언스(AUDIENS)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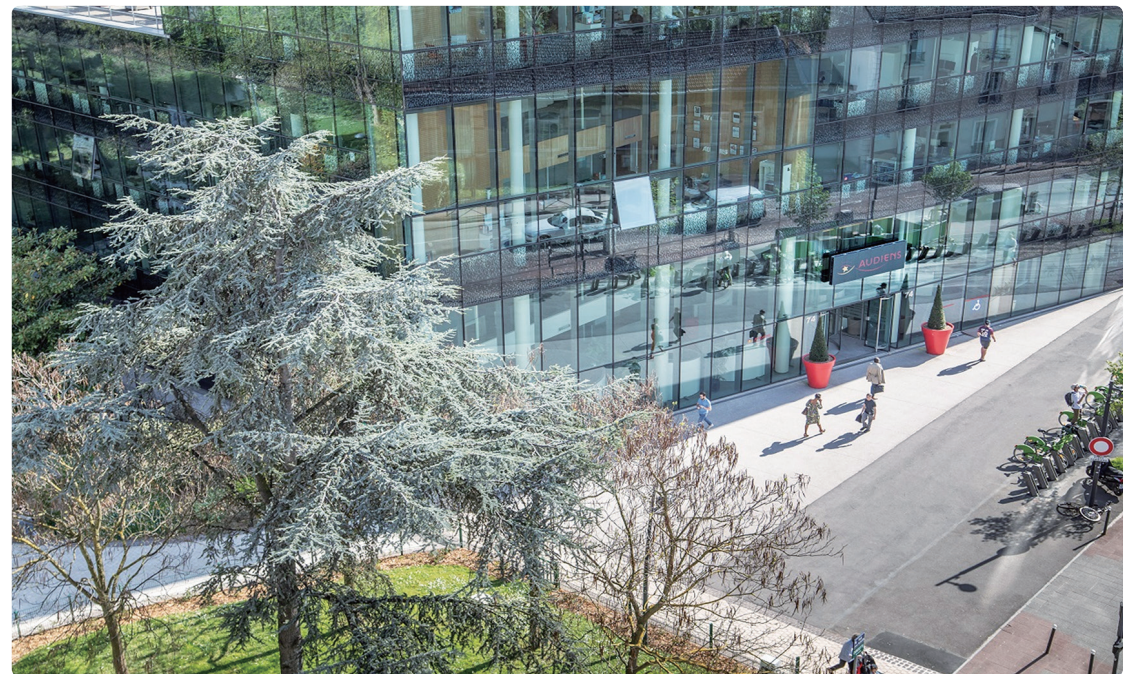
오디언스는 2003년, 문화, 홍보, 미디어 분야 직업인들의 사회복지기금 징수 기구를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탄생했다. 오디언스는 노사가 나란히 이사회에 동수로 참석하여 함께 운영하는 평등과 연대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워진 문화영역의 공제조합이다. 또한, 공연예술, 영화, 홍보, 방송 분야의 인력과 기업의 요구에 맞게 연금, 건강보험을 관리하고, 공적 부조를 통해 업계 내 직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하는 비영리 공제조합이다.

2019년 현재 40,300개의 업체와 62만 7천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연금,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연금 보조, 추가 건강보험, 상호부조(사망, 질병, 장애 시 지원), 그 밖에 기타 사회적 지원(직업 전환 전문 교육 지원, 이사 비용, 고가 장비 구입/임대 재정 지원, 주택, 진학, 가족 관련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 등을 통해 문화 영역 인력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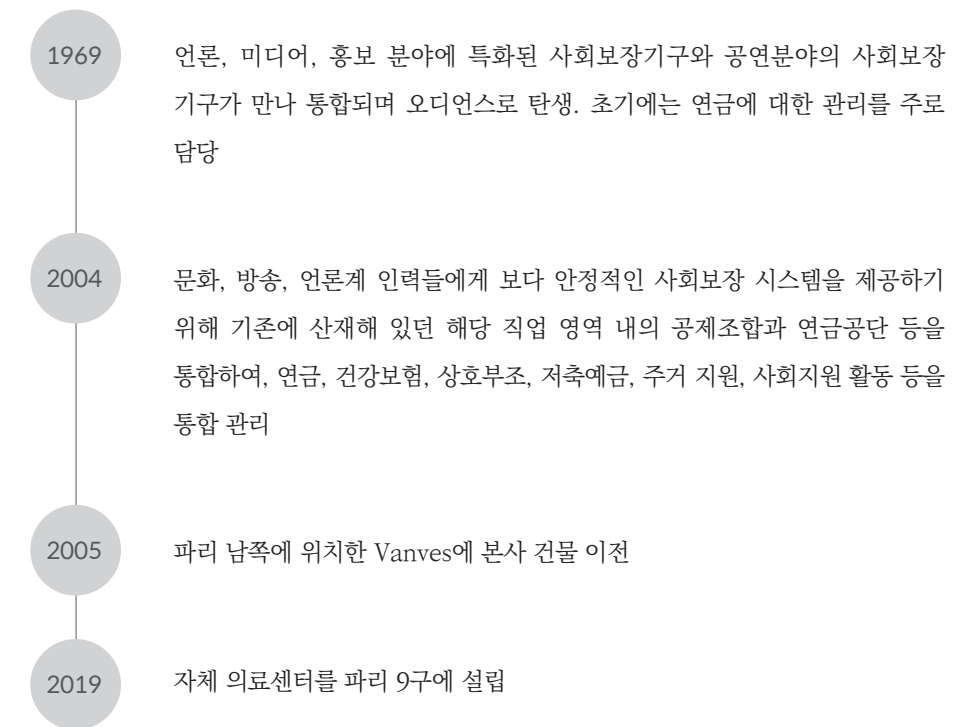
2) 역할

오디언스는 문화예술 영역 내의 인력들과 기업 사이에서 사회보장 업무를 총괄하는 파트너로서, 사회 보장과 관련 서비스 절차를 단순화하고, 관련 영역의 모든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직업 변환을 동반해주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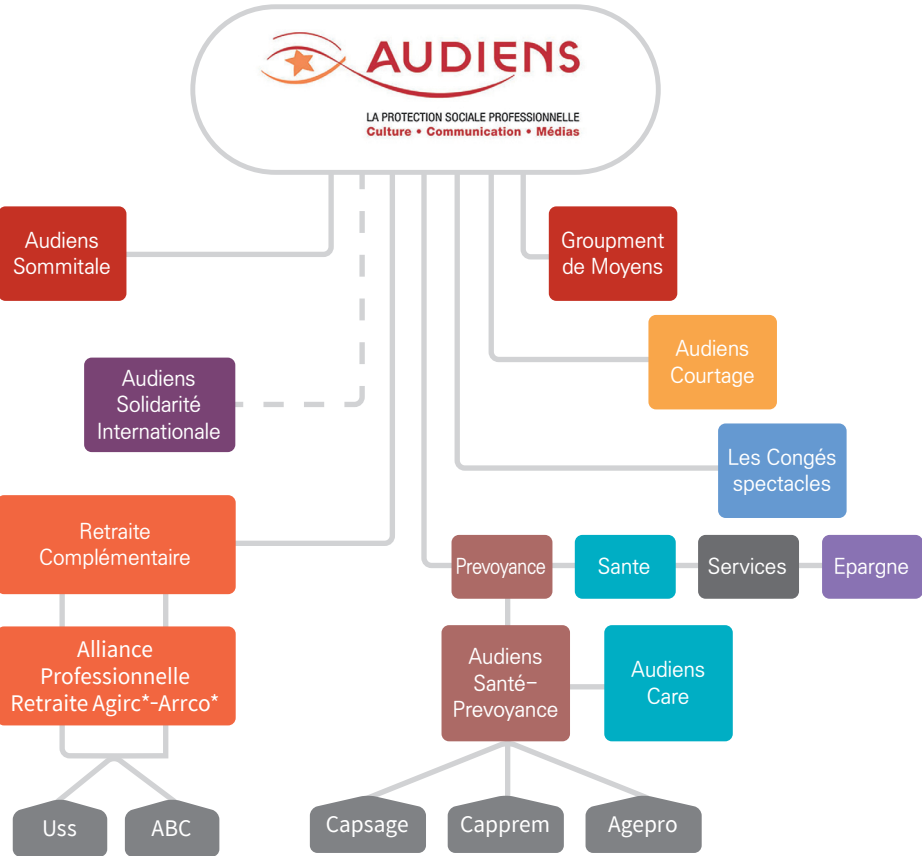
파리 남쪽 외곽 도시 방브(Vanve)에 자리잡고 있는 오디언스 사무



3) 약사



4) 오디언스 조직도 : 문화, 방송, 홍보, 언론 분야의 사회보장 조직(직원 수: 573명)



* Les activités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Audiens ont fusionné au sein d'une nouvelle institution commune à six groupes de protection sociale professionnels

구 분	해 설
Audiens Sommitale	오디언스 수뇌부
Les Congés Spectacles	앵페르미땅 휴가비
Audiens Solidarite Internaionale	오디언스 국제연대
Prévoyance	공제 조합
Retraite Complemetaire	부가연금
Santé	건강 보험
Alliance professionnelle retariate Agirc-Arrco	보충연금 연합
Epargne	저축 예금
Groupement des moyen	예산 그룹핑
Audiens Care	오디언스 케어

출처: 2019년 Audiens 연차보고서

5) 주요 역할

(1) 연금/보충 연금 징수, 관리 :

정부와의 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활동으로, 직업적 특성상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급여를 받게 되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들이 안정적으로 연금과 보충 연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이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42,800개의 기업이 이 연금, 추가 연금 지급을 위해 가입되어 있다. 연금보험 징수, 관리 외에 가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은퇴를 앞둔 이들을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전달하며,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 건강보험/보충 건강보험료 징수, 관리 :

건강보험 분담금 징수, 보충 건강보험 관련 업무 관리, 산업재해나 질병 시 산재 사망 시 보상금 등 지급, 산업재해 위험 예방, 배우자,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관리한다.

앵페르미땅 건강 보장(Garantie Santé Intermittents) 관리 : 문화예술계의 노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 각기 흩어져 있는 문화 관련 기업들이 마치 하나의 대기업에 속해 있는 것처럼 함께 추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직업군의 모든 사람들이 정기건강검진이나, 시력 보조, 치과 관련 질환, 간병 서비스 등 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는 영역을 담당해주는 추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또한 오디언스가 관리하며, 이 건강보장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 활동을 쉬고 있는 기간에도 보장 기간은 이어진다.
- 16세 미만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치료 목적의 의료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요양원 지원 등)
- 건강상 심각한 비용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할 때, 사회적 지원이 제공된다.

(3) 사회적 예방과 연대 활동 :

-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을 위해 연간 약 2천 회에 걸쳐 긴급 재정 지원
- 어려운 시기에 처한 회원들이 자립능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동반해주는 여러 가지 활동
- 장애의 상태에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 그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기관(AFDAS : 예술 관련 직업재교육, 직업 전환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원

- 간병인 지원
 - 가정 내에서의 요양 치료 시, 가족 간병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가족 간병인과 요양인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요양 휴가 시설 섭외
 - 장기 질병 치료에 대한 재정 지원, 시설안내 등
 - 장례 지원
 - 장애인을 위한 고용 안내
 - 장기 질병을 겪고 있는 환자, 혹은 그 가족들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과학적, 심리적, 사회적, 철학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정보를 전하며, 문제들을 토의하는 자리
 - 여전히 활동 중인 장년 노동자들을 위한 “은퇴 후의 삶을 향한 행보” 세미나 제공
 - 2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은퇴자를 위한 여가 클럽 운영(컨퍼런스, 가이드를 동반한 전시 관람, 공연 관람, 아틀리에, 등산, 도보여행 등의 프로그램 제공)
 - 베이비시팅 서비스 :
문화부가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앙페르미팡 예술가와 테크니션들의 아이들(만4세 까지)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FONPEPS(공연/영화 분야의 안정 고용기금)의 틀에서 제공하고, 그 운영을 오디언스가 맡게 되었다.
- (4) 앙페르미팡 유급 휴가지원금(les congés spectacles) :
- 앙페르미팡으로 일하는 예술가, 스태프들에게 제공되는 유급 휴가비다. 수혜대상자는 163,000명 정도로 1인당 평균 약 286만 원 정도가 지난해 휴가지원금으로 지급됐다. 2015년부터 이 기금 관리를 오디언스가 맡으면서 신청이 간소해지고, 지급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됐다.
- (5) 사회연대기금이 제공하는 사회적/직업적 지원(AFDAS와의 연계 사업) :
- 새로운 전문기술을 배워 직업 전환을 하고자 할 때, 직업교육 비용을 지원
 -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기초 생활비를 지원

- 직업적 이유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야 할 때 이사 비용을 지원
 - 직업 내에서 필요한 추가적 기술을 습득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자재들을 빌려주거나, 그것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
 - 직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장비들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
 - 추가적 의료보험 서비스 :
의료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치과 관련, 보청기, 안경 등 필요한 의학적인 장비가 필요할 때 이를 지원
 - 직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홍보활동 지원 :
인터넷 사이트, 데모테이프, 데모비디오 제작, 카탈로그, 메일링, 아트마켓/쇼케이스 참가비 지원 등
- (6) 업계를 위한 전문 서비스 : 고용, 임금 지급, 회계 서비스(movinmotion)
- 문화 분야 인력을 고용하는 업체·극단들을 위해 앙페르미팡으로 일하는 예술가, 테크니션들에 대한 ① 고용계약 ② 임금 지급·수령 ③ 사회복지 관련 분담금 지급·납부를 간단히 해결해주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은 직원 규모와 원하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작은 극단부터 유니버설 뮤직 프랑스, 아르테(예술전문 방송채널)에 이르기까지 1,400개 업체가 Movinmotion에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 한 명의 앙페르미팡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임금, 각종 사회보험 분담금 등) 계산
 - 고용될 인력을 사이트로 초대하여 행정 관련 서류 작성
 -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일정표 작성
 - 최저임금과 해당 분야의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최신 규정 정보 습득
 - 세금 징수 기관(Ussarf)에 사전 고용 신고서 제출
 - 3일 내로, 임금 관련 서류 제작
 - 사회 분담금 신고, 임금 등

(7) 자체 의료센터 운영 :

파리 9구에 개원한 오디언스 소속 베르제르 건강센터는 100여 명의 의사들이 근무하는 종합의료센터로, 일반의, 전문의(신경외과, 류마티스, 소아과, 안과, 심장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스포츠의학 전문의)뿐 아니라, 침술센터, 골절센터, 생물 실험실, MRI 스캔, 초음파검사 등의 장비도 고루 갖추고 있다. 직업의 특성상 파리와 파리 인근에 집중 거주하는 오디언스 회원들과 그 가족들의 치료를 전담한다. 파리의 의료센터 이외에 전국 7개의 보건소와 협약을 맺고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365일 내내 가동되는 정신의학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파리 9구에 있는 의료센터 외에 파리 시내와 근교에 2개의 치과 클리닉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8) 기타 업무 :

- 연구, 조사 :
오디언스는 매년 문화 분야 직업인들에 대해 연구하고 통계를 내 보고서를 발행한다. 오디언스는 필름 파리 레지옹(Film Paris Region)과 함께 매년 일드프랑스 지역의 방송 영화 프로덕션 연간 보고서(Observatoire annuel de la production audiovisuelle et cinématographique en Île-de-France)를 발행해왔다. 또한,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과 시각 효과 영역에서의 고용에 관한 연구도 진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오디언스는 프랑스국립영상원과 국립 방송 공연 고용교육 위원회를 위한 데이터도 생산하는데, 예술과 문화, 공연, 방송 분야의 단체 협약들을 종합하여 통계를 내고 이를 리포트로 발간한다. 이런 방식으로 문화 영역의 사회 노동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한다.
- 약자를 위한 사회적 임무 수행 :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 환경보호 등의 사회적 가치가 ‘공존’이라는 실천 방식을 통해 모든 문화 영역 내에서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한다. 생태적인 촬영을 위한 가이드, 각각의 활동이 배출하는 탄소량 통계, 친환경적 제작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동성애와 성차별 금지 투쟁을 위한 협회, 영화제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장애인이 문화 영역 내 보다 나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60여 개의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 파트너십 :
칸느영화제, 아비뇽연극제, 안시애니메이션 축제 등 전국에서 열리는 60여 개의 축제와 파트너십을 맺고, 축제에 참여하여 설명회, 조찬회, 아틀리에, 컨퍼런스 등을 통해 예술인들을 위해 오디언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린다. 그밖에 관련 학교(공연예술, 영화, 저널리즘)에 다니며 미래의 문화 분야 직업인들이 알아야 할 그들의 권리와 서로 다른 계약 형태, 노동조건 등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한다.

- 문화와 혁신(Culture & Innovation) :

오디언스 내부에 코워킹(co-working)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젊은 디지털 업계의 창작자들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만나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Culture & Innovation 만남을 주선하여, 문화계의 결정권자들과 젊은 창업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문화 창의상을 신설하여 혁신적인 디지털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젊은 팀과 창작자를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6) 오디언스 활동을 보여주는 핵심 통계(2019)

- 연간 징수 분담금 : 20억 유로(약 2조 7천억 원)
- 전체 가입자 수 : 627,000명
- 가입 기업 수 : 42,800개 기업
- 연금 지급자 수 : 156,000명
- 연간 지급되는 연금 보조금 : 11억 1천 2백만 유로(약 1조 5천만 원)
- 긴급 재정 지원 수혜자 : 2,184명(지원총액 : 260만 유로)
- 집단 활동에 참여한 사람 수 : 18,000명
- 앵페르미땅 지원 휴가비: 총 3억 6천만 유로 / 163,000명이 수혜

2. 59 리볼리(59 Rivoli : 예술가 공동체, 공동 아틀리에)

1) 개요

59 리볼리는 파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변화한 리볼리가에 자리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공동 작업실이다. ‘스콧트’라 불리는 예술가들의 점거로 시작되어 이제는 온전히 예술가들이 정식으로 차지한 작품과 전시, 공연을 진행하는 파리의 문화명소로 거듭났다. 현재 30명의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작업을 하고, 전시하며, 직접 아틀리에를 찾는 관객들을 매일 만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콘서트가 열리고, 1층에 있는 갤러리에서는 내부 예술가뿐 아니라 외부의 예술가들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단체전이 일 년 내내 열린다.

2) 역사

1999년
11월

3명의 예술가가 파리 한복판에 있는 이 빈 건물의 문을 박차고 들어간 것이 역사의 시작이었다. 이 오스만 양식의 거대한 건물은 크레디 리오네라는 이름의 은행과 파리스가 8년간 빈 채로 방치해 두던 공간이었다. 은행은 파산했고, 모든 기물은 철거된 상태였다. 며칠 뒤에 다시 10명의 예술가가 합류하여 예술작업을 시작했고, 관람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입주 예술가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이 공간은 <로베르네 집 Chez Robert>이라는 별칭으로 오래 불려왔으며, 개관 첫해부터 4만 명의 관람객을 불러들였다.

2000년
6월

법원에서 입주해 있던 모든 예술가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파리 경찰청은 8개월 전부터 그곳에 머물며 작업하고 있던 예술가들이 아무런 잡음 없이 빈 공간을 멋진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었고 이미 제법 알려진 명소가 되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음을 이유로 들며, 곧 있을 파리스장 선거 때까지 퇴거에 대한 판단을 미뤄주기로 했다.

2001년
3월

사회당의 후보였던 베르트랑 들라노에가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그는 이 건물을 시가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리볼리 59번가 건물은 시 소유의 거물이 되었고, 파리스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 예술가들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물은 예술가들이 합법적으로 머물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는 파리(혹은 다른 도시)에 있는 빈 공간들이 예술가들의 점거 이후 시와의 협상을 통해 공식 예술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많은 사례 중 하나이다.

2009년
9월

4년간의 공사 뒤 재개관했다. 연 8만 명의 관객을 맞이하는 현대미술 전시장 겸 레지던스로 도약한다. 건물 구입과 리노베이션에 파리스는 1천 1백만 유로를 투입했다.

현재

2019년 현재 59 리볼리는 매년 8만 명의 관객이 찾는 파리의 현대미술 전시장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59 리볼리의 전경



3) 공간 운영

6층 건물 안에는 현대미술 전문 갤러리, 공연장, 30여 명의 예술가를 위한 아틀리에와 레지던스가 있다. 59 리볼리의 예술가들은 해외 전시에 참가하기도 하고, 그들의 공간에 해외 작가들을 초대하여 합동 전시를 개최하기도 한다. 2019년엔 30회의 전시와 100회의 콘서트/공연이 이뤄졌다.

협회(association)의 형식을 취하여, 예술가들이 연대와 협동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역할을 분담하여 공간을 운영한다. 협회 회장 1명, 행정디렉터 1명, 회계 1명, 콘서트 담당 1명, 그밖에 공연, 행정, 홍보, 행사, 기술설비팀이 하나씩 있다.

원칙적으로 59 리볼리의 작가들은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 공간은 모든 영역의 예술 분야가 만나서 이뤄지는 실험적인 창작의 실험실이 되고자 한다.

모든 작업장과 예술적 행사들은 '무료'로 모든 관람객에게 열려있다.

4) 입주 예술가

개관 이후, 세계 곳곳에서 온 5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작업을 했다. 2020년 현재, 20명의 예술가가 고정 멤버로서 상주해 있고, 10명의 예술가가 3~6개월간 단기로 머물고 있다. 화가, 조각가, 그래픽디자이너, 조형예술가 등이 함께 생활한다.

새로운 입주 예술가를 결정할 때는 특별위원회가 열려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2명의 기존 입주 예술가, 현재의 예술가 대표, 파리시에서 나온 대표자 2명이 참가한다. 레지던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6개월 정도다. 입주 예술가들은 저렴한 수준의 월세를 낸다(월 130유로). 외부에 전시공간을 빌려줄 때 역시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다.

1~3개월을 머물며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으며, 모든 예술가는 장소 사용을 위한 비용으로 1개월에 130유로씩 지불한다. 새로운 예술가가 입주하게 되면 협회가 만들어 놓은 내부규정서에 서명하고, 예술가로서의 작업 외에 각자에게 주어진 공간 운영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59 rivoi 내부 모습

5) 콘서트

주말 저녁 6시에 이뤄지는 콘서트나 공연은 다양한 영역의 예술가들에게 59 리볼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 공간에 머무는 예술가에게도 협력을 통해 타 예술작업의 반경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재즈에서 팝, 록, 엘렉트로,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음악계의 저명한 음악인부터, 이제 막 세상에 등장한 젊은 음악인들까지 장르와 명성에 대한 경계가 없는 음악적 만남이 이뤄진다. 자발적으로 이곳의 음악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자원봉사 음악팀이 있어, 음악 콘서트의 프로그램을 꾸리고 무대를 채울 음악가들을 섭외한다.

6) 파리시와의 관계

파리시와 59 리볼리는 3년에 한 번씩 협약서를 체결하여, 그에 따라 59 리볼리에서 이뤄지는 활동 방향과 상호 간에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정한다. 수년에 한 번씩 감사가 이뤄지기도 한다. 협약에서는 향후 3년간 진행할 예술 프로젝트의 방향과 각자의 의무사항, 상세한 내규, 예산 집행 등에 관한 내용들이 다뤄진다.

최근 협약에서 재정의한 59 리볼리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다양한 예술 분야의 만남을 유도하는 예술 실험과 창작의 실험실
- 예술과 시민들 사이에서 구체적 가교 역할을 하는 창작과 문화의 공간
- 집단적 운영 방식에 따라 작동하는 연대와 협력의 공간

3. 이씨 몽트뢰이(ICI Montreuil, 여기 몽트뢰이)

1) 개요

‘이씨 몽트뢰이’는 파리 근교 몽트뢰이시에 있는 공동 아틀리에다. 예술가, 디자이너, 장인, 기술자 등 모두 63개 영역에 걸친 150명의 프리랜서들이 함께 1,800㎡의 작업장을 공유하며, 서로 협력하여 예술작품 혹은 창작을 바탕으로 한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 낸다. 2012년, 몽트뢰이에 살고 있던 은행직원과 홍보회사 직원이던 한 커플이 몽트뢰이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함으로써 이 공동 작업장은 탄생했다. 몽트뢰이는 파리의 브루클린이라 불리는, 파리 근교의 예술가 밀집 지역이다. 전국에서 앵페르미땅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한 집 건너 한 명씩 예술가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작업이 진척될 때마다 또 다른 기술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해야 했다. 마땅한 공간만 있다면 스케치, 디자인, 용접, 목공, 3D 프린트, 패키지 디자인 등등의 과정들을 여기 모인 수많은

예술가와 장인들이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재주를 가진 사람은 차고 넘치니 넓은 장소와 기계들만 채워놓으면 됐다. 그러자 프리랜서로 살아가던 150명의 예술가, 장인, 기술자들이 금세 채워졌고, 서로가 가진 재능을 보태니 순식간에 원하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 수많은 스타트업과 상표가 하나의 아틀리에에서 나왔다. Ici는 ‘여기’라는 의미며 Montreuil는 도시 이름으로, ‘먼데 갈 것 없이 여기서 필요한 건 다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ICI Montreuil’라는 아틀리에의 이름이 탄생했다.

2012년 몽트뢰이에서 생겨난 이 새로운 공동작업장 모델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어, 미디어를 통해 전국에 소개된 후, 현재 ‘MAKE ICI’라는 이름의 공동 작업장으로 프랑스의 3개 도시(이브리, 낭트, 마르세이유)에 같은 형태의 작업장이 탄생했고, 4개 도시에 같은 작업장이 탄생을 준비 중이다.

2) 아틀리에의 작동 원칙

(1) 상호 협력 :

같은 작업장에 있는 다른 창작자를 돕고, 나도 그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이 작업장의 철칙이다.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를 받는 방식으로 부족함을 채운다. 누구도 누구에게 지시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도 않는다.

(2) 손의 능력에 대한 무한 개발 :

우리의 손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우고 익히고 전수한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길 멈추지 않는다. 작업장이 생태계와 지역 주민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는다.

(3) 리사이클링 :

최대한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물건을 생산해낸다. 각자가 필요한 물건은 구입하는 대신 버려진 물건들을 재활용하여 생산해낸다.

3) 공간 구성

1800㎡의 공간에는 회의실, 작업실(목공실, 용접실, 금속작업실, 보석가공실, 디지털 작업실), 사무실, 조립실, 창고, 카페, 레스토랑 등이 있다. 이 공간의 창업자는 바토 라부아르(Bateau-Lavoir: 20세기 초, 몽마르트 언덕에 있던 아파트로 피카소, 브라크 등의 예술가를 포함 시인, 평론가, 화가, 모델, 연극배우 등 각 영역의 예술가들이 함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냈던 곳)에서 영감을 받았다. 공간의 70%는 조립실,

창고 그리고 디지털 기계와 전통적인 기계들이 놓인 작업실로 채워져 있다. 나무, 메탈, 구리 등을 다루는 기계들이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함께 작업한다. 과거에는 같은 공간에 없어 오래 기다리고 전문가를 찾아 헤매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면, 여기서는 더 이상 아무도 그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모든 이들이 모든 아틀리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필요한 기술을 익혀 자신의 작업을 혼자서 직접 실현하거나, 서로 도움을 건네는 방식으로 실현한다.

4) 창작가들의 공간 접근 방식

각각의 창작자는 회원비를 내고 공간에 있는 기계와 다른 사람의 기술을 얻는다. 가입비를 내면 이 공간의 모든 곳에 접근할 수 있다. 사무실과 작업실을 모두 쓰는데 300~400유로 선의 월 회원비를 낸다. 공간과 기계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같은 아틀리에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나 이 작업장이 제공하는 창업, 마케팅 노하우 등도 습득할 수 있다.

5) 교육/방문 프로그램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각자가 익히고 싶은 기술과 예술 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일주일에 두 번 작업장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방문 프로그램도 제공 된다.

6) 수입 구조

크고 작은 기업으로부터 제작 주문이 들어오고, 작업장에 있는 창작자들의 손을 거쳐 필요한 물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외부 주문에 의해 생산되는 물품이 전체 수입의 30%를 차지한다. 더하여 창작자들이 지급하는 회원비가 40%, 그리고 강의 수입이 30%를 차지한다. 이곳에서 자신의 상표를 만들어 자신의 작업을 하는 이들은 각자의 프로젝트를 실현해 간다.

4. 플라토 위르반(Plateau Urbain, 도시 무대)

1) 개요

도시 안에 빈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기업 파산 등의 이유로 장기간 마무리 공사가 중단되어 애매하게 버려진 공간들을 찾아내, 짧은 기간이나마(대부분은 1~2년, 최대 4~5년까지) 그 공간이 다수의 사람에게 의미 있는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변모시켜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제공하는 도시공학자/건축가/예술가 중심의 협동조합이다. 집주인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지자체(행정당국)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는 한시적 도시재생을 프로모션한다. ‘도시 무대’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조금씩 특화된 다른 단체들이 여럿 있고, 대형 프로젝트인 경우 각 영역을 특화해 역할을 분담하기도 한다.

2) 성격

일찍이 ана키스트 정신에서 출발한 빈 건물 점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체들(대표적으로 검은 목요일(Jeudi Noir))이 있었고, 술한 예술가들이 빈 공간을 점거해 자신들의 아틀리에로 삼아 왔다. 그러나 불법적인 점거는 긴장과 불안 속에 철거 명령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지자체와 좋은 결말을 맺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적이 더 많았다. 그간의 점거 집단들이 넘치는 공간에 대한 수요와 부족한 공급 사이에 존재하는 도심 빈집들의 부조리를 폭로해 왔다면, 도시 무대는 거기서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화한 ‘도시 빈 공간 활용 집단’이다.

3) 진화

2013년 협회로 출발한 도시 무대는 2017년부터는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했다. 사회적 경제와 연대의 철학으로 출발한 도시 무대 프로젝트는 현행 자본주의 시장 구조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단체나 조직들이 정착해 작업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술가든 사회운동 단체든 각자의 의도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가짐으로써, 연대와 협력의 정신 속에서 서로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가꾸고자 한다. 처음엔 몇몇 도시공학자·건축가·예술가들이 구성한 시민단체였고, 현재는 35명의 유급 직원, 협력 전문가, 조합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리, 릴, 보르도, 아미앙 등 프랑스 내의 도시들뿐 아니라 브뤼셀처럼 인근 국가로도 작업을 확대해 가는 중이다.



16세기에 지어진 파리 14구의 공공병원 이곳에 새 건물이 들어설 날을 기다리는 동안, 난민거주지, 예술가, 공예가의 작업장, 식당, 카페, 전터로 탈바꿈: 레 그랑 브와장

• Les Grands Voisins(레 그랑 브와장)

‘큰 이웃들’이라는 의미의 이 프로젝트는, 파리 14구에 있던 16세기에 설립된 공공병원 자리에서 펼쳐진 한시적 공간 재생 프로그램이다. 병원을 허물고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기 전 2012년부터 방치된 상태에 있던 공간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도시재생 협동조합들이 나섰다.

난민과 빈민들의 주거 마련을 돕는 시민단체 <오로라 Aurore>, 도시재생에서 예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협회 <Yes we camp>, 빈 건물 재생 전문협동조합 <도시 무대 Plateau Urbain>는 역할을 분담하여, 3.5 헥타르에 이르는 넓은 공간을 난민들과 예술가, 장인, 젊은 스타트업 업체 등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는 활력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다.

이 모든 과정은 파리지와의 협약을 통해 이뤄졌다. 빵집과 식당이 만들어졌고, 도시 농업이 이뤄졌으며, 요리는 빈 건물에 거주지를 마련한 난민들이 담당했다. 입주 작가가 난민들을 촬영한 사진 전시가 이뤄지고, 야외무대에서는 콘서트나 패션쇼, 공연이 열리기도 하고 장이 서기도 했다. 이 도심의 오아시스는 새로운 유토피아로 불렸고, 연대와 자율의 협력 규칙이 적용되면서 평화롭고 활력 넘치는 도시 명소로 떠올랐다.

2016년에 파리지와 협약을 맺고 시작되었던 이 프로젝트는 파리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2017년 말에 시즌1을 마감하고, 2018년 시즌2를 열어 2020년 9월 말 최종적인 수명을 마감할 계획이다.

IV. 프랑스 정부의 문화계에 대한 Covid19 피해 지원

1. 작가-예술가 구호기금 설치

작가-예술가 구호기금 설치 : 정부는 작가-예술가(저작권이 발생하는 예술가 : 문학 분야의 작가, 화가, 사진가, 작곡가 등)를 위하여 총 50억 유로의 연대 기금을 설치했다.

2. 58% 예술가 지원, 42% 예술 기업 지원

이 중 29억 유로가 예술가들에 대한 직접 지원, 사회적 분담금 면제 등 예술가 개개인들에 대한 지원이고, 나머지 21억 유로가 각각의 예술분야의 업계에 대한 지원이다.

1) 작가 - 예술가들에 대한 연대지원금

2억3천만 유로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작가-예술가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책정, 코로나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겪은 예술가들은 일정한 절차(전시, 강연, 워크숍 등의 일정 취소 증빙)를 거쳐서 월 1,500~2,500유로의 연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일시적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문화부 예산

예술분야에서 발생한 일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4억4천만 유로가 책정 되었다.

3) 앵페르미땅 실업급여 기준 기간의 연장

앵페르미땅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예술인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에 근거하여 연말까지 계속 실업급여를 받고, 내년도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금년도의 최소 노동 시간 507시간은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그 기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실업 급여를 위해 문화부는 22억 유로를 책정했다.

3. 문화예술업계 지원

예술, 문화, 미디어 분야의 업계에 대한 지원으로 음악, 음반업계에 대한 지원 7.06억 유로, 시각 예술분야 3.9억 유로, 문화유산, 건축분야 5.25억 유로, 도서, 출판분야 3.2억 유로, 영상분야 2.17억 유로, 미디어분야 9.85억 유로, 언론 6.66억 유로 등이 책정되었다.

1) 도서 출판 분야

도서·출판 분야에 있어서 국립도서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의 지원금(행사에 참여하는 작가 사례비)은 예정대로 집행하며, 서점과 출판사의 대출금 지급 마감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2) 영화/방송 분야

중단된 영화/방송들을 재촬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CNC를 통해 지원한다. 6월 2일부터 시작된 이 지원금 신청에는 프랑스 프로덕션들에 의해 진행되었던 모든 영화나 방송 촬영이 신청할 자격을 갖는다.

3) 공연예술분야

코로나로 인해 가장 심하게 피해를 입은 영역인 공연예술분야에 4억3천2백 유로를 지원하기로 하고, 2억2천2백억 유로는 민간 극장, 2억2천억 유로는 공공극장, 12억 유로는 공연분야의 작가 지원, 30억 유로는 작품 주문비용으로 책정했다.

V. 국내 적용을 위한 분석과 제안

1. 삶의 안정성을 먼저 보장하는 지원방식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예술인 지원 제도와 예술인 조합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모든 사회의 예술인들에게 공통된 근심은 그들의 삶이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프랑스 제도가 갖고 있는 특징은 이러한 점을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제도로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점이다. 전 생애를 거쳐 예술가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따라가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1) 노사 동수로 운영하는 큰 우산 공제조합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공제조합 오디언스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방송, 홍보, 언론 분야와 결합, 한지붕 아래 있게 되면서, 탄탄한 재정적 바탕을 갖게 되었다. 공연계와 영화계, 방송계에서 활약하는 배우나 스태프들은 비슷한 인력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이러한 영역의 통합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노사가 동수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통해 중요한 사안들을 모두 함께 결정하는 구조는 공제조합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갖추는 바탕이 된다.

노조가 공제조합에게 보이는 신뢰도 주목할만했다.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이해가 최대치로 반영되는 방식의 지원을 모색하는 노하우와 감수성을 축적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이러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에, 상호 간에 신뢰가 쌓일 수 있었다. 노조는 정부와 싸워서 얻은 지원기금의 관리를 다시 오디언스에 맡기고, 오디언스는 점점 업무의 영역을 확대하고 그들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업종별 공제조합들이 들어설 때 취약한 직업군끼리만 구성되면, 그 조합은 여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진다. 오디언스의 사례처럼 상대적으로 탄탄한 구조를 가지면서 동시에 공통분모를

가진 직업군과 결합했을 때 상부상조가 작동할 수 있고,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될 때 정부나 지자체도 이 기구를 이용하여 새로운 지원을 추가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도 흩어져 있던 문화예술계의 사회보장 관리 기구들이 비용의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통합되었고,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본 바 있다.

2. AFDAS(문화예술직업교육보험)의 중요성

1972년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던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 재교육 기관의 역할도 직업의 안정성이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끊임없이 이러저러한 재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빠르게 변해가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금방 도태되기 쉽다. 특히, 몸을 도구로 하는 직업을 가진 무용수들은 이른 나이에 직업을 전환해야 하는 시기가 오고, 다양한 배역을 수행해야 하는 배우들 역시 새로운 배역을 위해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스태프들도 새로운 기술을 제때 익혀야만 제작 환경을 따라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직업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것은 건강보험을 드는 것만큼 중요하다. 특수한 영역에 대한 능력이므로, 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시설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AFDAS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 우리도 해당 업계의 직업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재교육들을 파악하여, 예술인들이 역량을 향상시키거나 업종을 전환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 도심에 방치된 공간 지원의 제도적 유연성

예술인들은 절실하게 작업 공간을 필요로하고, 넓은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그곳에서 함께 작업하는 예술가들 사이에서 조합형태의 협업이 이뤄진다. 그래서 예술가 지원 중에 레지던스에 대한 지원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최근 매스컴의 주목을 받아온 공간들은 한적하고 널찍한 예술가의 아틀리에가 아니라, 도심의 버려진 공간들을 한시적으로라도 재생하는 공간이란 특징을 지닌다. 성공 사례로 꼽히는 ‘59 리볼리’나 ‘레 그랑 브와장’의 사례에서도 이 점이 눈에 띈다. 두 사례 모두 파리시의 유연한 태도가 프로젝트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59 리볼리는 불법으로 시작된 점거 예술가들이 관객들을 불러들이며 빈 공간을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가자, 파리 경찰청이 법원의 퇴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새로 선출될 시장의 판단을 기다렸고, 예상대로 새 시장이 점거한 예술가들에게 공간의 사용권을 허가하자 거액을 들여 공간을 단장한 사례이다. 그 결정의 핵심적 요소는 59 리볼리가 이미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예술가들의 용기와 지자체의 유연하고 열린 태도가 결합하여, 파리 도심의 건물이 관광객과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전시장 겸 예술가 아틀리에로 변모할 수 있었다. 59 리볼리의 성공이 계기가 되어 점점 더 많은 버려진 건물들이 예술에 의해 새로운 공간으로 살아났고, 일시적으로(혹은 장기간) 버려진 도심의 공간을 재생하는 것은 이곳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스타트업 아이템이 되었다.

1) 예술가와 함께하는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조성

‘레 그랑 브와장’이 4년간 누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이유 역시 파리시가 젊은 협동조합들과 협업하여 병원부지가 5년간 새로운 질서 속에 자치 해방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수동적으로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은,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에 갇힌 공기관이 아니라 생태적이고 창의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시도하는 젊은이들의 시선이기에 가능했다.

예술가들과 건축가, 도시재생 전문 인력이 결합된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을 탄생시켜, 지역 사회 곳곳의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방치된 공간에 이처럼 예술과 장인, 휴머니티, 생태도시농업과 장터,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는 해방구를 만들어가는 사업 전개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예술가들은 작업 공간과 관람객, 고객을 얻고, 도시 빈민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얻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고, 주민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마을의 오아시스, 볼거리 많은 재미있는 장터를 얻을 수 있다.

4. 쌍까트르의 다원적 기능

거대한 예술가 레지던스이자 예술적 아이템의 창업 인큐베이터, 예술 창작 공간, 공연장, 장터·패션쇼·포럼이 열리는 상업 공간, 사회문화예술 활동이 진행되는 공간이 쌍까트르다.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고, 예술/생태적 아이디어가 하나의 창업 아이템이 되어 경제활동의 활로가 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들을 모아 도와주는 인큐베이터의 역할도 한다. 고매한 창작자와 수동적인 전시관람자, 그것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역할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에서 흐르듯 연결되는 모습은, 예술을 성역에 가두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대와 만나게 이끌어주며,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을 더욱 쉽게 한다.

1) 활짝 열린 왁자지껄 레지던스

한적한 절간을 연상케 하는 조용한 작업 공간도 필요하지만, 일주일에 며칠은 사람이 바글거리는 장터, 야외 콘서트와 같이 이질적 영역이 뒤섞이는 기획이 쌍까트르의 대중적

성공의 핵심이었다. 신선한 자극들을 서로에게 제공하며,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와 예술이 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칸막이가 제거된 통로/공간이 필요하다.

5. 이씨 몽트뢰이 - 기술과 예술, 공예, 비즈니스의 경계가 무너진 멜팅팟

공대, 예체능계와 상경대생들이 한자리에서 다닥다닥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똑딱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이씨 몽트뢰이’에서 가능했다. 그들은 예술인조합으로 불리진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조합의 형태로 작업한다. 서로가 가진 기술을 남에게 주고, 품앗이를 통해 즉석에서 완성품에 도달하기 때문에 구상과 실현, 판매까지 한 공간에서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다. 그것이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켜 순식간에 전국에서 붐을 일으켰다. 산업사회의 극단에 이르러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것 외엔 제 손으로 만들 줄 아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된 현대인들의 갈증이 이러한 멀티 작업장으로 사람들을 불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질적이지만 자발적 예술가들의 협업을 원칙으로 하는 공간, 예술과 기계 사이의 담장 허물기가 이씨 몽트뢰이 성공의 핵심이었다. 이처럼 넓은 공간과 기자재 및 시설 마련의 역할을 지자체가 맡고, 뜻이 맞는 예술가·장인·디자이너가 작업이나 창업, 강연 등을 함께하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듯하다.

6. 예술인의 집(Maison des Artistes)

프랑스 시각 예술인 단체인 예술인의 집은, 그 대표성에 비추어 볼 때 예술인들을 위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것 역시 공연예술이나 영화계 노조가 이뤄내는 성과에 비해 미미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몇 가지 혜택들은 무시할 수 없는 장점들이 있다.

예술인이 집 회원증이 있으면 미술 재료를 구입할 때 할인(10~20%)이 되기도 하고, 미술관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으며(루브르, 오르세 미술관 입장료는 무려 17유로나 되므로 적지 않은 부담이다), 소속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일반 자영업자들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는 분담금을 내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모두는 예술인의 집이 끊임없이 싸워서 얻고 지켜온 성과들이기도 하다.

또한 공식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어 예술 장르별로 예술가들과 그들의 작업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 프로작가들은 대부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의 작업들을 한눈에 들여다보고, 좋아하는 장르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잠재적 고객들이 그 사이트를 보고 자신이 의뢰할 작품을 맡기거나, 작품 구입을 위해 직접

연락하기도 한다. 활성화된 예술인 사이트 하나만으로도 소외된 예술가가 눈 밝은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사실상 가장 어렵지 않으면서도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벨기에의 사례처럼 시각 예술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나, 예술인의 집이 실천하고 있는 정도의 소소한 혜택들은 커다란 제도의 개선이나 예산 투입 없이도 실현될 수 있는 항목들이기에 주목할 만하다.

7. 한국 예술가를 위한 해외 레지던스

얼핏 사치스러운 제안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술한 한국의 예술가들이 파리 혹은 베를린, 뉴욕, 런던에 가 장단 기간을 머물다 가는데,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을 본다. 머물 공간 하나를 구하는 데 진을 다 빼고, 자신들이 도약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연수 프로그램, 구경해야 할 전시, 공연, 만나야 할 사람, 참가해야 할 훈련은 무엇인지를 아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문예진흥기금으로 해외연수 지원을 받아 외국에 나온 예술가들도, 덜렁 돈을 받아올 뿐 그들의 시간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주고 가이드해 주는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에서 각개 전투할 뿐이다. 적어도 그들이 주거공간을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절약할 수 있어도 훨씬 유용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일본 교토에 둔 빌라 쿠조야마는 프랑스 문화원(Institut Français)이 현지 직원을 통해 관리하는 시설이고, 교토 지역의 대학과 문화시설들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다. 그곳으로 보내진 프랑스 예술가들은 즉각 그들이 필요로 하는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고, 유익한 시간을 쾌적하게 보내다 올 수 있다.

우리는 많은 예술가들이 개별적인 자신의 돈과 시간, 인맥을 동원하여 시간을 보내다 보니 축적되는 노하우도, 양국 간에 쌓이는 교류의 퇴적물도 적다. 마치 공교육에 돈을 아끼느라 사교육에 돈이 펴펴 들어가는 형국이다. 프랑스나 런던, 뉴욕에는 한국 문화원이 있지만, 전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빌라 쿠조야마나 빌라 메디시스처럼 호화로운 공간에 지원금까지 넉넉히 주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해외 체류 한국 예술가들이 머물며 작업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예술가들이 오면 그들의 필요를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국가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그 거점을 중심으로 프랑스 예술계와의 교류도 가능할 것이다. 현지인과 콜라보 프로젝트를 만들어 오는 작가를 위해서는 공동의 작업장을 마련해 주어 프랑스와 한국 작가의 협업을 도모할 수도 있을 터이다.

과거 이응로 화백 생존시엔 파리의 아시아 미술관인 세르누치 미술관 안에 동양화 학교가 있어서, 한국화를 배우고자 하는 현지인들이 드나들었고 그곳에서 이화백은 자신의 프랑스인

제자를 양성했다. 케이팝이나 드라마, 한국영화가 과시한 한국 대중 문화의 활력을 넘어, 그 이상의 한국 예술 전반에 관해 보여주고, 현지와 교류하며 그 영향력을 전파하고, 확산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VI.부록 : 인터뷰

I. 밥티스트 세자르(Baptiste Cesar / 조형예술가)

인터뷰, 2020년. 7월 1일

미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기금 징수를 담당하던 예술인의 집(Maison des Artistes)의 기능이 2020년부터 Urssaf(사회보장기금징수기구)로 통합되었다. 대신, 예술인의 집은 기존의 협회 기능과 가입자가 예술 활동을 통해 살아가는 예술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만을 갖게 되었다. 이 변화를 현장 예술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고자 인터뷰를 가졌다.

Q1. 지금 예술인의 집(Maison des Artistes) 회원으로 가입하신 상태인가?

그렇다.

Q2. 어떤 이유에서 이번에 가입하신 것인가?

딱히 어떤 혜택이 있어서라기보단, 여기에 가입을 해야(연 가입비 24유로. 약 3만 2천 원)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레지던스에 신청자격이 생긴다. 그 밖에는 박물관, 미술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 정도다. 회원에 두 가지 단계가 있어서, 연간 예술 활동 수입이 9,000유로(시간당 최저임금x900, 약 1,200만 원, 즉 월 1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사회보장 혜택(의료보험,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하인 사람은 그런 자격이 안 되었다. 올해부터 얼마를 벌든 버는 만큼 신고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대신 예술인의 집을 통하지 않고 바로 Urssaf에 계좌를 열고 여기에 지급하게 되었다. 난 늘 소득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예술가였고, 그래서 이전 시스템으로는 사회보장을 받지 못했다.

Q2-1. 그렇다면, 연간 예술 활동 수입이 9,000유로가 넘는 사람들에게는 쓸 만한 제도였나?

물론이다. 수입의 약 12% 정도를 내고 의료보험, 연금 등을 보장받으니, 일반 자영업자들보단 훨씬 유리한 셈이었다. 우린 고용주가 절반을 내주지 않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급여생활자들이 내는 정도만 내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예술작품을 배급하고 상업적 용도로 유통하는 개인, 기업, 단체들이 하는데, 프랑스에선 국가나 문화부(DRAC 지역문화국, FRAC 현대지역예술기금) 지자체가 이 영역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결국 공공부분의 자금이 많이 투여되어 나머지 부담금을 내준다고 할 수 있다.

Q3. 그렇다면 이전엔 어떻게 의료보험을 해결했나?

나 같은 사람들이 제법 많다. 그런 사람들은 보편적 의료지원(Couvertures Maladie Universelle)을 받는다. 부담금을 낼 상황이 안 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공공병원에 가면, 안 되는 거 없이 다 된다.

Q3-1. 치과 진료 같은 것도?

공공병원에서 하는 진료는 다 무료고, 치과 진료는 의사마다 더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굳이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하면 찾아봐서 의료보험수가 이상 받지 않는 의사를 찾아가면 된다. 없으면 차액을 지불하면 되고.

Q4. 그럼 올해부터 예술인의 집 역할은 사라진 것인가?

예술인의 집이 협회로서의 기능이 하나 있고, 사회보장기금 부담금 징수 기관 으로서의 기능이 또 하나 있었는데, 후자의 역할은 사라진 셈이다. 사회보장기금 부담금 징수는 더 이상 하지 않지만, 회원증을 발급해주는 역할은 여전히 한다.

Q5. 이런 변화가 예술가들에겐 좋은 일인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 일단, 수입 규모를 단위로 자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사라졌으니 긍정적으로 봐야겠으나, Urssaf가 예술가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융통성 있게 징수를 할지 어떨지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작년 연말에 금년에 낼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했다. 아직 돈도 안 벌었고 얼마를 벌게 될지도

전혀 모르는데 그에 따른 분담금부터 내라고 하니 많이 황당해했다. 소득에 따른 신고가 아니라, 미리 최소 분담금을 정해서 고지하고 추후에 차액을 보존 해주겠다는 방식이어서 예술인들의 불만을 샀다. 예술가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직업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에 진입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중의 과세가 되는 방법이라, 이 또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태다. 제도 시행 첫해이고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수입이 없는 상황인지라, 바로 그 무렵 시행된 제도의 변화로 인한 시행착오들이 예술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Q6. 레지던스를 얻는 것은 쉬운가?

늘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주로 레지던스를 얻어 작업하고, 작업하는 동안 일정한 작품 지원비를 받아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Q7. 그밖에 다른 수입은 없었나?

가끔 작품을 팔기도 하고, 어딘가에 일시적으로 취업해(주로 미술교사, 일정기간 동안 강연, 워크숍) 일하고 나면 잠시 실업급여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나면 RSA(활동연대수입)⁰¹를 받아왔다. 레지던스를 통해 받는 돈은 6개월에 5천 유로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도 RSA는 계속 수령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이 RSA를 받는다.

Q8. 그밖에 다른 예술가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건 없나?

물론 많이 있다. 예를 들면 CAAP(Comité Pluridisciplinaire des Artistes-Auteurs France:프랑스예술가위원회) 같은 곳으로부터 주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받는다. 어떤 지원이 있는지, 어떤 공모전이 있는지, 레지던스, 워크숍 강사, 페스티벌 등도 알려준다.

그리고 FRAC(현대예술지역기금)이 작품을 구입해주기도 하고, DRAC(문화부 산하의 지역문화활동국)이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제안해준다. 그럼 서류를 신청해서 그 작업을 하는데, 얼마 전에 8천 유로짜리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다. CNAP(국립조형 예술센터)를 통해선 최근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FRAAP(현대예술가연맹)도

01 평균 임금의 50% 이하의 수입을 버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최저생계비. 2020년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기준, 월 564유로(약 76만 원)가 지급되었다. 연 420만 가구가 이 돈을 지급받는다.

CAAP처럼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사실 언제든 찾아보면 내가 도움을 청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지원들, 프로젝트들이 있다. 문제는 서류를 만드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것이다. 예술가들 대부분이 시간의 절반은 예술작업에, 나머지 절반은 서류를 만드는 데 쓴다. 그게 오늘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놓여진 운명이랄까.

Q9. CNAP이 지원해 준 내용은 어떤 것인가?

코로나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게 있으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지원금을 타는 거였다. 나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워크숍이 내년으로 연기되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렸더니 2,500유로가 나왔다. 예술가의 삶이 가지는 문제점은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것인데, 그래도 프랑스 시스템은 두드리면 열리는 문이 여기저기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선 고맙게 생각한다.

Q10.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나. 그런데 조형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에겐 그런 시스템이 없다. 여기에 대한 불만은 없나?

사실 우리도 무대미술 작업을 할 수가 있다. 나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 일을 해서 번 돈을 조형예술가로서의 작업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는 액수가 제한되어 있다. 조형예술가의 세계와 앵페르미땅 스펙타클이라는 두 개의 카테고리 사이에 벽이 있는 것이다. 아예 그 일을 계속할 거라면 무대미술가가 되어 앵페르미땅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계속 그럴 것이 아니라면 조형예술가로서의 작업에 집중하는 편이 나 같은 사람에겐 더 바람직하다. 아무래도 나의 일은 무대에서 하는 일보단 설치예술이 더 많으니까. 둘 사이의 벽이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서 사라졌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Q11. 다음 계획은 뭔가?

지금도 몽트웨이에 있는 레지던스를 하나 신청했고, 어제 면접을 보고 왔다.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 이게 잘 되면 또 6개월 정도 여기에서 작업하면서 작가 생활을 할 수 있다. 아주 흥미로운 작업 공간이어서, 꼭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안되면 또 마르세이유에 있는 레지던시에 응모할 계획이다.

Q12. 레지던스에 가서 작업을 하면, 그 작품은 공간에 두고 와야 하나?

아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나온다. 다만, 거기서 종종 아이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지역 주민들과의 예술을 통한 소통이 흔히 지자체가 제시하는 레지던스를 위한 조건이다.

2. 이자벨 티리옹(Isabelle THIRION / Audiens 오디언스 사회개발국 국장)
인터뷰, 2020년. 7월 5일

Q1. 2004년 오디언스가 처음 탄생했다. 그 탄생 과정에 대해서 듣고 싶다.

완전히 없었던 기구가 새로 태어난 건 아니고, 기존에 앵페르미탕(공연, 영화계 인력)의 연금을 관리하던 Griss라는 기구가 있었고, 언론, 미디어, 홍보 분야의 인력들에 특화된 연금기구 BG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통합된 거다. 각 직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금 징수기구가 거둔 것을 통합 관리하는 연금총괄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2003년에 유사한 기구들에 대한 통합을 적극 권장했다. 두 기구가 그 권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합병이 이뤄졌고, 2005년에는 지금의 건물을 신축하여 한곳에 머물게 되었다. 이후 연금뿐 아니라, 의료보험, 공연, 방송, 연극, 언론계의 인력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상호부조 등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서 공연, 영화, 미디어, 언론업계를 통합하는 공제조합의 형태로 발전했다.

Q2. 서로 다른 기구가 합병하게 되면, 한쪽은 손해를 보고, 또 한쪽은 이득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손익에 따라 반대와 찬성이 갈리는데, 초기 통합 과정에 일은 없었는가?

방송 쪽이 상대적으로 더 여유로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배우나 가수, 스태프 등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하는 경우가 흔하다 보니, 합병에 큰 갈등은 없었다. 물론 초기에 약간의 불안한 요소는 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이 합병이 성공적인 일이었다는 데 동의하게 되었다. 징수되는 분담금의 영역이 확대되니, 운용의 폭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지원의 폭도 커지게 되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폭이 커졌다는 점이 제일 좋은 점이다.

Q2-1. 분담금을 가지고 이러 저러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기도 하는가?

하긴 하지만 지극히 제한적이고, 안정적인 틀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수시로 감사를 받으므로, 일정한 틀을 벗어날 수 없다. 투자를 했다가 돈을 손해 본다거나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거의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지 않았다.

Q3. 앵페르미탕은 모두 비정규직들인데, 그렇다면 방송이나 언론 쪽 종사자들 가운데서도 모두 비정규직만 오디언스에 들어와 있는 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들어와 있다. 보통은 기업 쪽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는다. 기업, 극단, 프로덕션 등 사측에서. 어차피 연금을 우리가 징수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추가 의료보험, 사회보장 분담금 등의 청구가 일원화되는 것이 편하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와 계약을 맺고 우리가 징수한다.

Q4. 노사 양측이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들었다. 이사회 구성은 어떠한가?

노사가 정확히 5:5로 들어와서 모든 사안을 결정한다. 전체 이사회에 노측 16명, 사측 16명이 들어온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연금, 건강보험, 상호부조 등) 이사회가 각각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1년에 4번 열린다. 노사 동수로 들어와 함께 모든 사안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체로 공정한 결정들이 이뤄진다.

Q4-1. 최근 대표자가 바뀌었다. 대표자는 이사회가 선출하나?

그렇다. 대표자는 물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Q4-2. 정부 측은 전혀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는가?

하지 않는다. 오로지 노사 양측만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굴러간다.

Q5. 전체 예산에 노사가 분담하는 분담금 이외에, 정부가 출연한 기금은 없는가?

부분적으로 정부 기금이 들어와 있는 분야가 있다(앵페르미탕을 위한 지속적 고용 안정지원기금 같은). 그러나 대부분은 노사 양측이 분담하는 분담금이 기본이 된다.

Q6. 노사가 있고, 또 서로 다른 분야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원금 지급 등을 결정할 때 상호 간에 알력 다툼 같은 건 없는지?

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권리에 속하는 것을 각자 정해진 몫에 따라 취하면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개입할 여지는 크게 없다. 다만 사회적 지원의 영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사회가 노사 동수로 있는 것처럼, 이러한 지원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팀별로 조직되어 있어서, 거기서 투표로 결정한다. 대개 누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큰 갈등이 있는 경우는 없다.

Q7. 어떤 종류의 지원이 있는가?

지난해의 경우 2,184명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했다. 예를 들면,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배우가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일자리를 찾아주고, 연결해 준다. 질병이나 장애 상태에 놓이게 된 사람을 간호하는 가정을 위해 특화된 바캉스 시설을 제공한다. 심장 질환으로 40대에 사망한 영화인의 가족을 위하여 자녀들의 학비를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원하기도 한다.

Q7-1. 이러한 지원에 드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

각각의 가입자들이 사회보장 분담금을 낼 때 일부를 내서 마련한다. 아주 작은 퍼센트지만, 회원 수가 많으니까 그것도 모이면 큰돈이 된다.

Q8. 오디언스가 관리하는 내용 가운데는 연금, 건강보험처럼 전체 모든 가입자들의 사회복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지원영역이 따로 있다. 그 각각을 수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가?

오디언스가 관리하는 영역에는 예술인들의 권리에 속하는 부분이 있고, 권리는 아니지만, 상호연대 속에서 만들어진 지원의 영역이 있다. 권리에 속하는 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계좌에 들어가고, 지원에 속하는 부분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원 신청을 하면 그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Q8-1. 공연 휴가비(Congé Spectacle)나 베이비시팅 지원비는 권리에 속하나 아니면, 지원에 속하나.

스펙타클 휴가비(앵페르미땅들의 직업 특성상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많고, 직업의 불연속성 때문에 휴가 기간을 특정하기 어렵다. 일하지 않는 때가 휴가기인 셈이다. 이는, 프랑스 노동자라면 모두 갖는 연 5주 유급휴가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약 1개월 치의 급여에 해당하는 휴가비를 준다)는 모든 앵페르미땅이 신청만 하면 받는다. 이는 예외가 없는 권리에 속한다.

베이비시팅은 정부가 공연예술인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한 기금에서 나가는 건데, 주로 저녁에 일해야 하는 그들의 직업적 특성상, 출산 이후에도 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베이비시팅 비용의 50%에 한하여 지원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인 경우에는 지원금이 나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당연한 권리에 속하진 않는다.

Q9. 오디언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Movinmotion라는 게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은 극단처럼 소규모 업체들을 위해 오디언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달리 회계, 경리 담당 직원을 둘 여력이 안 되는 작은 기업을 위해 오디언스가 채용, 급여지급, 사회보장분담금 계산, 지출 등의 업무를 대신 맡아준다. 큰 기업들도 우리에게 이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전담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간단히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사용한다. 사실 분담금이나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까다롭고, 실수할 수가 있다. 지난 한 해 1,500개의 기업이 이 업무와 관련하여 오디언스와 계약을 맺었고, 모빈모션을 통해 5만 5천 명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Q10. 공연계의 모든 사람들은 오디언스를 통해서 사회보장제도, 공적 부조의 혜택을 취한다고 볼 수 있나?

원칙적으로 연금만 여기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디언스에 해당 업종의 직업인들을 위한 혜택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길 통해서 받는다고 보면 맞다. 앵페르미땅들이 그들의 직업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가까이 해야하는 기구가 두 군데인데 하나가 오디언스고, 또 하나가 아프다스(AFDAS) 직업교육기관이다. 아프다스는 오디언스 산하에 있지 않지만, 우리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기구고, 함께 작업한다.

Q11. 파리 9구에 얼마 전에 오디언스 산하 의료센터가 신축되었다. 거기에 가면, 오디언스에 가입된 모든 회원들은 무료로 의료시술을 받나?

꼭 그런 건 아니다.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부분과 추가 보장 부분에서 정해진 요율에 대해 보상을 받지만, 해당 직업 영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직업병 관련한 치료에서는 더 유리한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열려있는 병원이다. 다만, 해당 직업(영화, 공연, 음악, 방송 등)에 연관된 의료서비스들이 많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모든 오디언스 멤버에게는 2년에 1번(과거엔 1년에 한 번)씩 정기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마치 일반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것과 같다. 프리랜서들은 그들을 정기적으로 고용해주는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오디언스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치 전 업종이 모여 거대한 대기업을 형성한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들이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정기건강검진)을 협의했기 때문에 해당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Q1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원이 이뤄진 바 있나?

그렇다. 지난해는 1년간 2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3개월 동안 2만여 명이 지원을 받아야 했다. 즉,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다.

Q12-1.그럼 그를 위해서 따로 예산이 필요하진 않았나?

그렇진 않았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평소에 해오던 많은 활동들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고, 그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Q13. 이러저러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아나?

아비뇽 페스티벌, 칸느 페스티벌처럼, 예술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문화행사에 가서 부스를 차려놓고, 그곳에 모이는 직업인들에게 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알린다. 물론, 지속적으로 메일을 통해서도 모든 멤버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오디언스가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정부나 정부 산하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혜택, 지원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알린다. 대체로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가장 적은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정보를 알리는 일이 중요한 업무다.

3. 드니 그라부이(Denis Gravouil, CGT Spectacle 위원장/프랑스 노동 총동맹 예술노조 위원장)

인터뷰, 2020년. 7월 6일

Q1.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얻은 정부 측 지원(앵페르미땅들의 실업급여를 수급을 내년 8월까지 연장한다: 평상시라면 금년도의 실업급여 수급은 지난해 일했던 것에 근거하여 올 12월까지로 마감되며, 올해 일한 것에 근거하여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새로운 실업급여의 권한이 발생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공연, 영화 쪽 일들이 사라지자 507시간의 노동시간을 채울 길이 막막해졌다. 하여, 정부는 올해의 기준 시한을 연말에서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은 노조 측에서 요구해서 얻은 것인가?

우리가 요구한 건 조금 달랐다. 각각의 예술가들의 기준일이 1년씩 연장되길 바랐는데, 그나마 그 정도에서 절충된 것이다. 그 정도 얻는 것도 쉽지 않았다. 문화부 장관은 처음에 이 안에 반대 입장이었다. 결국 큰 충돌 없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정부 측에서는 추가의 예산을 지급하는 게 아니다. 아시다시피, 실업급여 금고 안에서 지급되는 거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일하지 않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일 뿐이다. 모두들 일하고자 한다.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지금의 지원으로 충분하진 않을 것이다. 얼마 전 새 문화부 장관이 임명되었는데, 아직 만나지 못했다. 만나서 우리의 생각을 전할 것이다.

Q2. 오디언스와 노조들은 어떤 관계에 있나?

대체로 좋은 관계다. 우린 오디언스가 그들의 업무를 잘 수행해 내고 있다고 본다. 노조들이 문화계의 고용주들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사가 함께 운영하는 연금/건강보험/상호부조/사회적 지원 체계이기도 하다. 오디언스는 아프다스(AFDAS: 예술인 직업교육센터)와 함께 예술인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지탱해주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

Q3. CGT 노조는 얼마나 들어가 있나?

전체 이사회에 16석의 노조를 위한 의석이 있는데 CGT가 6석, CFDT가 5석, FO가 3석, 그리고 나머지들이 1석씩이다. 조합원 규모대로 이사회 의석이 배정 되는 셈이다.

Q3-1. 이사회를 진행할 때 특별히 갈등이 불거진다가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주제가 있나?

사실 딱히 그렇지 않다. 노조가 제시하지 않으면 사측이 미리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주제가 나왔을 때 사측이 잘 이해를 하는 편이다. 문화예술계의 사측들은 그들의 노동자/예술가들의 이해가 어디에 있는 잘 아는 편이다. Unedic(고용보험공단)에 가면 겪게 되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거기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앵페르미땅이 많은 실업급여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 아주 적대적이다. 오디언스는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업무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 우리(노조)가 정부와 협상을 통해 얻어낸 권리의 실행을 오디언스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앵페르미땅들에 대한 베이비시팅비 지원 같은 경우가 그렇다. 노조들은 오디언스에 신뢰를 갖고 있다.

Q4. 오디언스는 연금, 의료보험 징수 관리 이외에 어떤 식으로 예술가들을 지원 하는가?

사망, 사고 등의 경우에 지원하는 상호부조의 형태가 있고, 예기치 않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케이스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카메라맨이 40대에 갑자기 사망했다. 그에겐 아직 어린 자식들이 있었다. 오디언스가 이런 경우, 그 아이들이 대학교육을 마칠 때까지, 아이들의 양육비/학비 등을 지원한다. 혹은 50대 중반의 한 여배우가 하반신 마비가 되는 병에 걸렸다. 그는 중증 장애인으로 아무 일도 안 해도 장애인을 위한 급여를 받으며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나이에 사회와 완전히 차단되는 일은 그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 점을 오디언스는 잘 이해한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서 영화 더빙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가 택시를 타고 간병인과 함께 더빙장에 다녀오려면, 돈이 적잖이 든다. 장애인 공단은 그녀가 장애인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 택시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럴 때 오디언스가 그 비용을 지불한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계속 자기 몫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를

위해서 훨씬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대목에서 오디언스의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드러난다.

공적 부조 차원에서 사망, 산재 사고 등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에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사회적 지원’이 그 밖의 영역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들을 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그를 간호하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시설이 갖춰진 휴양병원을 겸한 바캉스 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장애를 갖게 된 예술가들이 자신의 직업에 새롭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의학적, 심리적 지원, 그 밖의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가입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주는 형태), 주거 지원 등이 있다. 대체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워진 예술인 자신, 혹은 남겨진 자식과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룬다. 공적 부조는 사망, 산재사고 등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에 개입한다.

Q4-1. 누구에게 지원을 할지에 대해선 어떻게, 누가 결정하나?

사회적 지원과 관련해선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사를 한다. 심사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 정말로 힘든 상황인지,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이미 수차례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인지, 자립을 돕는 방향의 지원인지 아닌지 등의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원의 방향을 결정할 때, 오디언스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그 노하우를 발휘한다.

Q5.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선 어떤 지원을 받는가?

오페라 드 파리에선 전속 발레단이 있고, 오페라 건물 옆에 그들의 전속 물리치료, 정골치료 전문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 일상적으로 발레리나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무용수나 배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오디언스를 통해 예술분야의 고용주들이 함께 거대한 집단을 이뤄, 오디언스에서 세운 의료기관을 통해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대기업에서 흔히 제공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달리 직업별로 특화된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의학이나 골절, 물리치료 같은 제2의학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커버해 준다.

Q6. 그런데 이 모든 혜택은 소위 작가/예술가(화가, 극작가, 소설가 등 저작권을 받는 예술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 아닌가?

그렇다. 예술 분야에서 급여가 발생하는 직종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앵페르미땅 제도이기 때문에, 급여 대신 저작권으로 소득을 취하는 분야와 분리되어 모든 것이 전개되어 왔다. 미술이나 문학 쪽도 노조나 조합 같은 것이 있지만, 그들은 너무 많이 분리되어 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해왔다. 올해부터 <Maison des Artistes, 예술인의 집>이나 <Agessa, 작가사회보장협회>가 징수해오던 사회보장기금 분담금을 Urssarf(사회보장기금 징수센터)에서 직접 징수하기로 하면서, 혼란과 공백기를 겪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기관을 따로 뒀서 징수하는 것보다, Urssarf 하나를 통해서 걷는 게 훨씬 간단하고 비용도 절약되기 때문에 이뤄진 결정이다.

Q6-1. 이 같은 변화가 그럼 예술인들 쪽에서 원한 건 아니었나?

아니다. 그들은 반대 입장에 서 있었다. 예술인의 집이나, Agessa는 예술인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의 편익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징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Urssarf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적이고, 기계적으로 징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분명하다. 이들도 물론 예술가로서 받는 혜택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이번 개혁으로 없어진 건 아니다. 봉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지만, 봉급생활자들이 그러하듯 자신의 몫만 내고, 사측이 내야 할 돈은 내지 않도록 되어 있다. 사측이 내어야 할 부분은 공적인 돈에서 충당된다. 그런데 마크롱 정부는 현행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개편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3억 5천만 유로를 투입하여 정부가 그 돈이 고갈될 때까지 지원하고, 그게 고갈되면 시각 예술가들도 다른 자영업자들처럼 분담금을 내는 형태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제안이다. 싸워서 막아야 한다.

Q7. 2003년까지는 오디언스가 아니라 Griss라는 기구를 통해 앵페르미땅들이 연금을 냈고, 여타의 공적 부조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 오디언스를 통해 방송, 언론, 홍보 쪽과 함께 살림을 합치면서, 상황이 더 나아졌나? 혜택이 더 늘어났나?

전체적으로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더 많은 재정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난다. 확대된 혜택을 입고 있는 셈이다. 2007년에 보충 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기로 단체협약에서 합의했고, 그래서 오디언스를 통해 모두가 보충 의료보험의 혜택도 누린다. 연금 관리를 하면서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여유자금도 생겨나 더 많은 사회문화 활동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Q8. 보통 어떤 시기에 오디언스의 지원을 받게 되는가?

대개는 50대 중반부터 63~64세에 은퇴하여 연금을 받기까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그 전엔 일도 많이 하고, 젊을 때니까 잘 아프지도 않다. 그러나 50이 넘어서면서부터 배역도 확 줄고(특히 여배우들의 경우), 따라서 수입은 감소하는데, 몸은 점점 말을 안 듣고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 연금을 타기 직전 5년 정도가 가장 오디언스가 필요해지는 시기다. 오히려 63~64세에 이르러 연금을 타는 나이가 되면, 다들 한시름 놓는다. 그때부터는 일을 안 해도 연금이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물론 연금을 타는 상황에서도 일을 계속할 수도 있다. 보통 앵페르미땅들은 63~64세에 은퇴를 하게 된다. 즉, 그 나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Q9. 무용수들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른 나이에 은퇴를 맞지 않나?

그렇다. 그래서 그들에겐 특히 직업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배우들도 나이가 들면서 배역이 팍 줄어들어서 관련 업종으로의 직업 전환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디언스 다음으로 앵페르미땅들에게 중요한 기관이 AFDAS(문화예술계의 직업교육 보충)이다. 직업 전환뿐 아니라, 자신의 분야의 일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술/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도 AFDAS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국에 있는 8천여 개의 직업교육 시설이 예술가들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모든 앵페르미땅들은 고용계약을 통해 지급하게 되는 사회분담금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교육을 개별적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또는 적게 들여) 받을 수 있다.

Q10.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결국 해당 업계들이 하나로 묶여서 거대한 기업처럼 작동하기 때문인데, 그 이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 뭔가?

예술가들을 대표할 수 있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그들이 사측 대표, 정부를 향해서 단체협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07년부터 단체협약을 통해 정부의 의료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추가적 영역에 대한 보충 의료보험을 업계 전체가 오디언스를 통해 들기로 합의했다. 안과나 치과, 혹은 입원 시, 장기요양 시에 필요한 간병 등 의료보험이 미진하게 미치는 영역을 보완해준다.

Q11. Congé Spectacle 휴가비 지원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

1981년부터 모든 프랑스 노동자들에게는 5주의 유급휴가가 있다. 1936년 유급휴가가 시작되었는데, 처음엔 2주였고, 점차 늘어나 5주가 되었다. 앙페르미팡들에게는 정해진 휴가가 없고, 일하지 않을 때가 쉬는 날인데, 이들에게 휴가비를 줄 기업이 따로 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5주간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모든 앙페르미팡들이 받게 된다. 1938년부터 이걸 받아왔다. 그러니까 거의 유급휴가가 존재한 시기와 같이 출발한 셈이다.

1936년 총파업을 상징하는 장면 중 하나가 르노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다. 르노 자동차 공장 옆에는 큰 영화 프로덕션이 있었다. 당시 공장 노동자들뿐 아니라, 그 영화 프로덕션에서 일하는 영화 노동자들이 같이 파업을 했다. 그래서 음악이 있었고, 춤이 있었고,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축제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다.

[참고문헌]

- L'essentiel 2019, AUDIENS
- Rapport d'activité 2019, AUDIENS
- Le Guide pratiques des droits des salariés du septacle du cinema et de l'audiovisuel 2017
- Le Guide de l'auteur d'oeuvres plastiques et graphiques, snap cgt, 2016
- Vincent Edin, En finir avec les idées fausses sur les professionnels du spectacle,
- Les éditions de l'atelier, 2015
- Rapport d'activité 2019, le centquatre-Paris
- 목수정, 해외극장 운영사례연구 - 프랑스 사례 중심으로, 2019.12.27
- 목수정, 유럽 공연 예술인의 근로조건과 연극정책 - 프랑스, 벨기에, 독일 사례, 2018.1.19
- www.cnap.fr
- https://cdn.paris.fr/paris/2020/02/26/ff60b218a0c4a14f648ad2eceaf0261e.pdf
- www.lamaionsondesartistes.fr
- www.makeici.org
- www.citedesartsparis.net
- www.villamedici.it
- www.villakyjoyama.jp
- www.afdas.com
- www.asso.astp.fr
- https://www.cnc.fr/professionnels/vos-demarches/fonds-d-indemnisation-tournages-covid-19
- https://business.lesechos.fr "ICI Montreuil : un réservoir de compétences et d'agilité"
- https://cdn.paris.fr/paris/2020/02/26/ff60b218a0c4a14f648ad2eceaf0261e.pdf
- https://www.104.fr/media/professionnels-culture/2019-centquatre-rapport-d-activite-s.pdf
- https://cdn.paris.fr/paris/2020/02/26/ff60b218a0c4a14f648ad2eceaf0261e.pdf
- https://www.institutfrancais.jp/wp-content/uploads/2019/07/IFJ_Cahier_des_charges_et_reglement_de_consultation_relatif_a_l_evaluation_du_programme_de_residence_de_la_Villa_Kujoyama.pdf

[인터뷰]

- Baptiste Cesar, Artiste, 2020. 7.1
- sabelle THIRION, Audiens, directrice du developpement social, 2020.7.5
- Denis Gravouil, CGT Spectacle, 2020.7.6



예술인을 위한 우산협동조합

임병덕(CN COOP 이사장)

I. 예술인의 노동 형태

II. 예술인 소득

III. 프리랜서와 Fake freelancer

IV. 예술과 사회적경제

V.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의
Scale-Up 사례

VI. 향후 과제

예술인을 위한 우산협동조합의 논의 전에 예술인의 현재 문제 상황에 관한 판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 지점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문화와 예술에 대한 범주의 논란이 있을 것이나 필자는 콘텐츠 범주 전체를 예술인이라 지칭하여 이번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I . 예술인의 노동 형태

1. 예술의 정의

헌법 “제 22조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는 대한민국이 장인과 예인을 국가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작물이나 예술작품, 발명품이나 과학기술 등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가치가 매우 크고, 국가는 이들 가치를 실현하는 자의 권리를 보호해 줌으로써 사회의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발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의 발전과 경제개발 등의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

예술의 자유는 크게 예술 창작의 자유, 예술 표현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술 활동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예술 창작의 자유는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창작에 필요한 소재나 형태, 창작에 이르는 구체적인 과정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창작 활동에 소요되는 노력, 시간, 금전 관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2. 예술(창작) 활동에 소요되는 노력, 시간은 노동인가?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예술 분야는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분야의 총 14개 장르이다.

분야별로 개인 창작 활동이 강한 분야, 대중문화로 확장되고 있는 분야, 대중문화가 주류인 분야로 나누어지고, 같은 분야에서도 대중문화를 주업으로 하는 예술인과 창작 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예술인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다양한 창작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술인은 개인 창작자일 수도, 프리랜서일 수도, 근로자일 수도 있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0%로 2015년 72.5%보다 3.5% 증가했다.

예술인이 자신을 프리랜서로 인정하는지와는 별개로 소득 활동 시 사업 소득세를 내며 소위 프리랜서 지위를 얻고 있다. 프리랜서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비전속’, ‘비전속인’, ‘자유 계약자’, ‘자유 기고가’, ‘자유 활동가’로 순화.(표준국어대사전)”이며, 2018년 기준 예술인 중 76%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행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76%의 프리랜서 예술인의 주관 부처는?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업종, 분야와 상관없이 노동에 관한 문제를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통해 해결하게 되고, 많은 지원 및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예술인은 예술인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아니기에 보호를 못 받고 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어느 부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답은 ‘없다’. 프리랜서는 법적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프리랜서들이 납세하는 ‘사업소득세’의 국세청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이 물적시설(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등 사업 설비·임차한 것 포함)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1) 저술, 서화, 도안, 조각, 작곡, 음악, 무용, 만화, 삽화, 민담, 배우, 성우, 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2) 연예에 관한 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3) 건축감독, 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4) 직업운동가, 역사, 기수, 운동지도가(심판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5) 접대부, 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6)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 장려수당, 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7) 서적, 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8)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9) 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10)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로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11)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12) 작명, 관상,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13)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격 용역

- (1)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 등에 따른 국선번호인의 국선번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
- (2)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 용역
- (3)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4)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훈련 용역
- (5)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문체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의 업종현황과 100% 일치하지 않지만 대부분 업종이 사업소득세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를 내야 할 의무는 있으나, 프리랜서의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주관 부처가 없는 것이다.

4.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노동이 문제인 이유

고용노동부의 2018년 5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2022년까지 아래와 같은 변화의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5인 미만	5~29인	50~299인	300인~
근로시간 단축 (68→52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안됨	21.7.1부터	20.1.1부터	18.7.1부터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22.1.1부터	21.1.1부터	20.1.1부터
휴일근로 할증		18.3.20부터		
야간근로 할증		기존 적용		
연차		18.5.29부터 17.5.30 이후 입사자는 13개월 근무 시 26일의 연차 부여		
해고	별도의 서면통지나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 없음 해고 예고(근로기준법 제 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기존 적용		

휴일근로 할증과 과태료만 보더라도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노동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1)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 할증

(1)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56조제1항, 개정)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56조 제2항, 신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56조 제3항, 신설)

2) 과태료

(1) 4대 보험 미가입 과태료

근로자가 퇴사 후 4대 보험료를 가입시켜주지 않았다는 신고를 할 경우 4대 보험 공단은 근로자 부담금 +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사업주에게 부과. 사업주는 근로자와 민사를 통해 근로자 부담금을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31조)
- 국민건강보험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19조)
- 고용보험 :3 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1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0조)

(2)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

최대 500만 원(법 제114조)

(3) 휴게 시간 미보장 과태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4) 해고 예고 불이행 과태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연차 유급휴가 불이행 과태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불이행 과태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53, 59, 69조)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것은 위와 같은 다양한 법적 보호와 혜택을 포기하면서 계약하는 형태이다. 또한 국가 기초 안전망인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계약 형태로서 최저임금, 퇴직금, 초과수당, 미지급금 보호, 노령연금, 실업 기간, 국가 교육훈련 등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영역이 된다.

5. 예술인의 극단적 노동 현실

예술가의 권리인 창작을 “창작=노동=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방탄소년단이 한류 스타가 되는 좋은 창작물이 나왔다. 방탄소년단은 연습생일 때도 예술인이었고, 지금도 예술인이다. 반대로 대중에게 인지되지 못한 창작물이 나왔더라도 그 창작가는 예술인이다. 예술 활동에는 창작을 위한 노동, 생활, 공간, 비용, 시간 등이 소요된다. 그렇기에 어떤 예술인에게는 복지가 중요하고, 어떤 예술인에게는 노동자로서의 보호가 중요하다.

2010년 11월 인디뮤지션 고 이진원, 2011년 1월 고 최고은 극작가가 열악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전도유망한 예술가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예술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예술인들이 복지국가에서 특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고 최고은 작가의 사회문제로 예술인 복지법이 논의되었고, 2011년 6월 고용노동부는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회를 열었다. “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은 영세자영업자 등 다른 취약계층 종사자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실제 당시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되지 않았던 때였다.

하지만 노동부는 예술인과 다른 노동자 간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이미 2004년 법 개정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다. 정부 반대 속에 결국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노동자 인정과 고용보험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예술인 산재 등 예술인 복지법에서 바라보는 법적 예술인의 지위는 중소기업 사업주 지위다. 문제부의 예술인 복지법, 고용노동부,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예술인의 노동은 사업주 또는 준사업자(사업소특세) 지위이다.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술인은 하루 23시간 40분의 노동을 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계속되는 죽음 속에도 문제부, 재단, 진흥원 등 예술인들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II. 예술인 소득

1. 낮은 소득

문체부의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예술인 개인 수입은 연평균 1,281만 원으로 최저 임금보다 낮고, 한국경영연구원의 2018년 근로자 평균연봉 3,634만 원의 1/3수준이다.

분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평균	549.9	868.8	948.8	329.0	5,808.1	1,127.9	1,749.8
중앙값	50.0	300.0	300.0	0.0	4,500.0	150.0	500.0
표준편차	1,575.3	1,639.1	1,845.5	1,281.1	8,021.1	2,957.4	5,681.2
분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평균	1,297.7	2,065.2	1,029.8	1,891.2	1,510.3	2,177.0	1,331.1
중앙값	300.0	1,000.0	400.0	500.0	700.0	1200.0	500.0
표준편차	2,559.9	3,038.4	1,576.4	10,506.4	3,520.1	3,824.7	2,051.2

2. 보조금 특인가? 실인가?

문체부의 예산 중 상당수가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보조금은 내부 임직원의 인건비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이어진다. 또한 임원의 경비를 득하기 위해페이백이라는 불법이 행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보조금은 취약분야,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우려의 부분은 보조금 사업 자체가 아니라 보조금 예산의 비중이다. 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내부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용역 사업과 달리 보조금 사업으로는 지속 성장의 모델을 추구할 수 없고,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III. 프리랜서와 Fake freelancer

1.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법적 지위, 법적 보호가 없는 분야로서 전태일 열사 시대의 노동과 같이 불법이 만연화되어 있는 노동 분야이다. 정확한 프리랜서의 법적 정의가 없기에 프리랜서 당사자 역시 본인이 용역을 수행하는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개인 창작의 예술가인지 지위의 혼란이 있다.

필자의 프리랜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프리랜서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행하는 자.”

직업별	일감 수주 방법	일에 대한 계약 유형
다양한 직업	1. 지인 소개 2. 영업 3. 플랫폼 4. 입찰	1. 도급(용역) 계약 2. 근로 계약 3. 특수형태 근로 계약 4. 위임계약

2. Fake freelancer 분야의 노동조합 역할

계약은 용역 계약으로 프리랜서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프리랜서에게 출퇴근, 업무지시, 고정된 임금 등 사실상 근로자성 노동을 부여하고, 해고, 연차수당,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의 법적 의무를 하지 않기 위한 사용사업주의 불법적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프리랜서가 고용노동부에 구제 요청 시 본인의 상황을 문서로 증빙하는 과정에서 증명의 방법이 용이하지 않기에 고용노동부가 아닌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획득한 분야의 프리랜서들은 고용노동부와 노동조합을 통해 적극적인 근로자의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수형태 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Fake lancer, 비공식 노동자가 뒤섞이고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뒤섞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과 함께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업무를 지원하게 되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인 가입에 따른 보험 관련 사무 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를 말하며, 예술인은 재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및 해지, 보험료 납부, 증명원 발급 등 보험사무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인은 노동자 또는 근로자 신분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술인의 노동에 대해 각 기관 및 행정에서 정의하는 시각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

IV. 예술과 사회적경제

1.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과 지원제도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과 정의

조직유형 (중앙부처)	정의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일반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조직유형 (중앙부처)	정의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	위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 (행정자치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 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행정자치부)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보건복지부)	

2) 사회적경제조직의 주요 현황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도시재생활성화및 지원에관한특별법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작연도	2007년	2012년	2011년	2000년
주참여자	취약계층 중심	이해당사자, 이해관계자 중심	지역주민 중심	저소득층 중심
정책목표	고용창출, 사회서비스공급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시장경제 문제점 보완	지역공동체 활성화	탈빈곤
활동내용	2,161개소 (2017년 기준)	12,431개소 (2017년 기준)	1,446개소 (2016년 기준)	1,189개소 (2017년 기준)

설립방식	인증제	신고제: 일반협동조합 인가제: 사회적협동조합	심사제	신고제
사업주체	대부분 대표자 1인	공동출자자 (최소 5인 이상)	공동출자자 (최소 5인 이상, 주민 70% 이상)	대표자 1인
유형	- 인증사회적기업 : 2,161개 인증 : 1,877개 활동 중 -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292개 : 지역형 903개	- 일반협동조합: 11,603개 - 사회적협동조합: 828개	- 자립형: 909개 - 신규: 120개 - 1,2차년도: 111개 - 기타: 133개	- 지역자활기업: 1,055개 - 광역자활기업: 34개 - 전국자활기업: 4개
고용	약 40천명	약 30천명	약 16천명	약 15천명
특징	- 일자리 제공 유형이 70%를 차지	- 일반협동조합: 사업자협동 조합이 전체 75%를 차지 - 사회적협동조합: 지역문제해결 목적형이 전체 40%를 차지	- 지역농산물 가공· 판매업종이 58%를 차지	- 5대표준화사업 중 청소 소득이 21% 차지

3) 사회적경제 유형별 주요 지원정책

구분	직접지원	간접지원	
		공통	개별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 개발비	판로지원 교육 및 홍보, 컨설팅, 창업 및 운영 지원, 정책 자금 융자 등	세제(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감면, 기부금 인정 등) 모태펀드 운영 등
협동조합	-		-
마을기업	사업비		-
자활기업	인건비, 사업비, 창업자금, 컨설팅비용		사업 및 시설자금 융자

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이해

1)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1)

문화예술을 통하여 개인이 느끼는 만족과 기쁨이 공감능력을 확장하고 인식 능력을 신장 시켜 사회적 연대나 공동체적 의미를 형성할 수 있음.

(2)

문화예술은 지역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동체 지향적인 삶, 일상적 예술 활동을 통한 재미, 예술교육을 통한 치유와 회복 등을 이루어내면서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함.

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

구분	사회적기업(2017)			협동조합(2017)		마을기업 (2018.3)	자활기업 (2017)
	전체	예비 부처형	예비지역형	일반	사회적		
전체	1,877	292	898	11,599	828	1,514	1,269
문화예술	222 (11.8%)	65 (22.2%)	158 (17.6%)	913 (7.9%)	46 (5.6%)	146 (9.6%)	16 (1.2%)

(1) 사회적기업 :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초기인 2007년에는 3개에 불과하다가 2009년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2010년을 기점으로 총 64개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17년 222개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소	3	11	18	64	87	119	161	194	190	205	222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 연구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인증사회적기업(총 1,877개소) 중에서 서비스분야 별로는 기타(904개, 48.2%)를 제외하고 문화예술이 222개로 전체의 11.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구분	문화, 예술	청소	환경	교육	사회 복지	간병, 가사 지원	관광, 운동	보육	보건	문화 재	산림 보전 및 관리	고용	기타
개소	222	191	113	153	107	95	45	13	14	8	7	5	904
비율	11.8	10.2	6	8.1	5.7	5.1	2.5	0.7	0.7	0.4	0.4	0.3	48.2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 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한 2017년 말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매출액은 연평균 4.2억 원으로 전체 인증기업(평균 19.4억 원)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도 평균 2.4백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증사회적기업 50백만 원의 20분의 1로 경제적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17년 기준 전체 협동조합수 대비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총 913개(7.9%),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46개(5.6%)를 차지하고 있었다. 협동조합 유형에는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있다. 문화예술분야 일반협동조합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13개소 중 사업자협동조합이 642개(6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221개(24.0%), 소비자협동조합 28개(3.0%), 직원협동조합 28개(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은 46개소 모두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었다.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200인 이상 또는 직전년도 출자총액이 30억 원 이상의 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조합이 경영공시가 의무이나 실제 사회적협동조합 1,047개 중 435개(41%)만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협동조합은 88개 중 33개 조직이 경영공시를 실행하였고,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평균 매출은 442,865천 원이며, 평균 영업이익은 -13,560천 원으로 나타났다.

고용인원은 평균 9명이며, 이 중 취약계층은 평균 1명으로 취약계층 고용인원은 인증 사회적기업 대비 1/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사회적기업 평균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문제부 사회적협동조합
유급고용	23	14	14
취약계층고용	8	3	1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 연구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226개소(2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 126개소(13.0%), 강원 90개소(9.3%), 광주 77개소(8.0%) 순으로 나타났다.

3)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필요 지원 사항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 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는 ‘사업비 지원’이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건비 지원’(22.8%), ‘운영비 지원’(12.8%), ‘시설(인프라) 지원’(9.2%), ‘기업연계 지원’(4.2%), ‘다양한 세제 지원(임팩트금융 등)’과 ‘공공기관 사업서비스 위탁 지원’(각 2.4%), ‘기업 컨설팅 지원’(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순위 응답기준) 기타 응답으로는 ‘마케팅비 지원’, ‘운영자에 대한 직접 지원’, ‘차량 지원’, ‘공헌 보상 시스템 마련’ 등이 있었다.

4) 문화예술과 사회적경제의 방향성

(1)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경제는 2017년 말 기준 서비스 분야에서 업종 비중이 가장 높을 정도로 저변 확대가 잘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가장 낮은 매출, 낮은 고용은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2)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의 Scale-Up 정책을 통한 매출 증대 → 고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큰 방향성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V.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의 Scale-Up 사례

1. 규모화의 경제를 이뤄낸 SMart 협동조합

1) SMart 협동조합의 역사

(1)

1998년에 창립된 스마트는 벨기에 문화예술분야의 복잡한 행정 구조에 대응하여 앙테르미탕 예술인, 기술자, 노동자들을 위한 공제회사로 시작됨.

(2)

창립 이후 ‘예술인의 전국 플랫폼(Plateforme Nationale des Artistes, PFNA)’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사회보장, 저작권 등 창작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벨기에 문화예술인의 대변자로 자리매김.

(3)

2008년에는 스마트 프랑스(SMartFR) 설립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각국에서 예술인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유럽 내에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국가 간 이동 등)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스마트 모델을 확산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

2) SMart 협동조합의 역할

(1)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약 및 사업관리(행정, 회계, 재무, 법무 등)과

창작활동을 위한 인프라(공간, 장비, 네트워크 등) 서비스, 지불보증기금, 사회보험 혜택 등을 제공.

(2)

비즈니스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자신의 사업체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없으며 자영업자나 독립적인 프리랜서의 지위로 있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임.

3) 협회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

(1)

2015년부터 ‘SMart In Progress’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SMart는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과 사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18개월간 긴 논의와 숙고의 시간을 가졌음.

(2)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500여 명이 참여하여 거버넌스의 문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새로운 경제모델, 이용자 범주의 정의 등 다양한 의제들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음.

(3)

당시 진행된 ‘SMart의 미래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73% 이상)가 ‘SMart는 문화예술인을 넘어 모든 분야의 프리랜서까지 이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4)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벨기에 SMart는 지난 2016년 12월 모든 직종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인 ‘SMartCoop’으로 전환.

4) 조직 구조

참여 거버넌스 조직,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이용자 범주 확대 등의 목적을 협동조합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크게 4개의 본부로 조직 구조를 재편했다.

운영 본부	스마트의 조합원과 잠재적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는, 즉 컨설턴트, 안내업무 담당자들이 소속
행정·재무 본부	스마트의 일상 경영관리(재정, 행정, 위험관리, 시설 관리 등), 사업지원, 개인 지원 등 지원과 공급 기능을 담보
전략과 개발 본부	국내외 개발 지원, 협동조합 활동, 상시 교육, 연구조사, 유공간, 커뮤니케이션, 후원자 모집 등을 담당
정보 서비스 본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시설과 장비 관리를,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정보시스템 개발을 수행

상근 직원 148명 중 과반수가 전문 컨설턴트들인데, 이는 SMart의 역할 확대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인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5) 비즈니스 모델

SMart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계약관리와 사업관리,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계약관리 서비스 :

- 계약관리는 프리랜서의 고용 및 사회보험 관련 복잡한 행정 처리를 대행해주는 업무임.
- 기관(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명의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SMart에 행정 서비스를 아웃소싱함으로써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음.
- 실질적인 고용 계약관계는 프리랜서 회원과 고객(프리랜서에게 사업을 의뢰한) 사이에서 이뤄지고, SMart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 및 사회보험 신고 등 위임받은 행정 업무를 처리.

(2) 사업관리 서비스 :

- 사업관리는 프리랜서가 혼자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여러 명의 조력자와 함께 그가 의뢰받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무임.
- 사업관리 서비스에는 기본적으로 행정, 회계, 재무, 온라인 즉각 대응 관리, 보수 및 용역비 입금(7일 이내), 선금 지급 및 부가세 환급, 미지급금(체불임금)에 대한 보증기금 운영, 법률 지원, 포괄 보장보험, 저작권료 청구, 보조금 관리, 협약(계약) 관련 자문 등이 포함.

-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프리랜서 회원과 고객 사이에서 이뤄지는 계약관리 서비스와 달리 사업관리 서비스에서는 SMart와 프리랜서 회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 프리랜서 회원이 SMart의 근로자라는 지위를 갖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임. SMart에 등록한 회원은 개별 면담을 가진 후 자신의 사업계정을 열고 독자적인 웹 공간(mini structure virtuel)을 부여받음.
-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사업계정을 통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이 의뢰받은 여러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음.
- 사업관리 서비스는 프리랜서 각각의 계정을 담은 그릇과 같은 공유기업 플랫폼 기능을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들은 별도의 회사를 설립, 운영하지 않고도 적법하고 안전하게 여러 발주처와 다수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음.

(3) 보증기금 :

- SMart는 서비스 수수료로 받는 6.5% 가운데 2%를 보증기금으로 적립하는데, 이는 미지급금 또는 선금 지급, 신규 서비스 및 수단 개발에 사용. 예를 들어 SMart는 ‘Take Eat Easy’라는 자전거 음식배달업체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위한 계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업체가 2016년 7월 파산하면서 임금을 체불하자 보증기금 ‘SMart펀드’에서 340,000유로를 지급한 경우도 있음. 또한 브뤼셀 테러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일을 하지 못한 회원에게 2015년에는 95명(19,660유로), 2016년에는 48명(4,600유로)에게 보상금을 지급.

(4) 재무적 성과 :

- 2016년 기준 스마트 이용자 매출 구성을 보면 사업관리 서비스(59.6%)가 계약관리 서비스(40.4%)보다 비중이 높은 편은 것으로 나타남.
-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 계약관리 서비스에서 사업관리 서비스 주축으로 이동하고 있고, 기타 주요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스마트는 2016년 한해 총 2,100만 유로를 벌어들이고 총 지출 1,700만 유로를 지출하여 400만 유로의 순수익을 기록함.

VI. 향후 과제

1. 기존 예술 분야의 문제 정리

1) 보조금

보조금은 임직원 인건비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익금을 남길 수 없다. 이에 프리랜서 계약이 활성화되고,페이백이 있을 수 있다.

2)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으로의 보호가 불가능하고, 기초안전망인 4대보험 가입이 어려움. 예술인의 낮은 소득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보호, 실업급여 보호, 국가훈련교육 등 고용노동부의 안전망 진입이 어렵다.

3) 직장인

예술인이 직장인이라고 하면 국립극단 빼고 생각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술의 노동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없다.

4) 실연자

실연자는 많으나, 기획자, 경영자의 부재로 문화예술의 기업 현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다.

위 문제들을 해결할 사회적경제 방식, 협동조합 방식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2. 문화예술인의 스스로 목표점 발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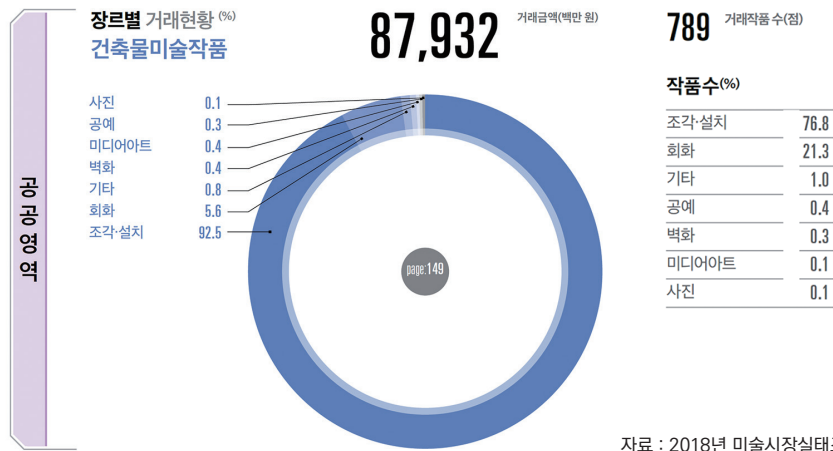
해외 사례에 나타난 문화예술인들이 왜, 어떻게 자기 고용을 창출하는지, 예술작업을 기업가정신 차원으로 발현시키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문화예술 시장구조 속에서 어떤 비즈니스 지원이 필요한지, 문화예술인의 고용 불안정성의 심화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행정의 인식 변화

1)
순수 예술의 육성만이 예술이 아닌 창작자들의 예술 노동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실업급여를 받는 안전망이 필요하고, 프리랜서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어 카드 리볼빙을 받고 있는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창작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에서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2) 예술분야의 입찰과 인식 변화

(1)
공공 미술시장의 약 879억 원 중 92.5%가 조각·설치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술가 중 조각·설치 분야는 수입이 높고 다른 분야 작가는 수입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 미술 작가가 공공영역에 원청으로 일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하청에 하청으로 일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조각·설치를 공공에서 예술이 아닌 공사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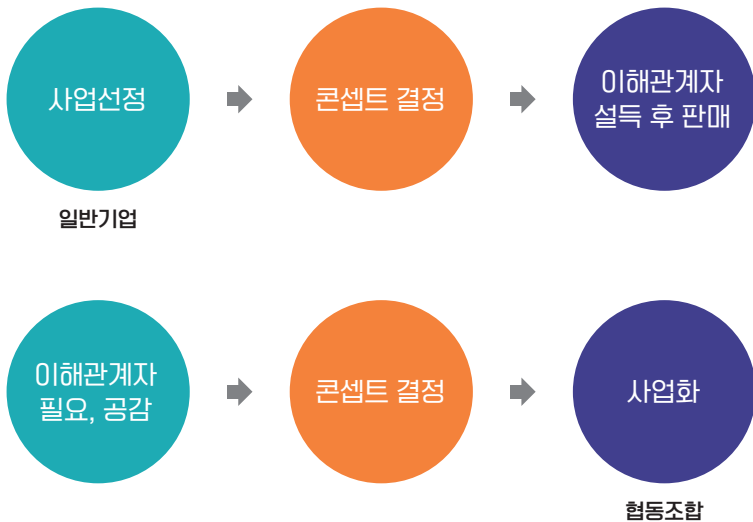


예술의 가치를 벽화 정도로 치부 할 것이 아닌 공익에 도움이 되고, 예술인의 일자리도 창출 될 수 있는 사업 변화가 필요하다.

(2)
창작자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매출과 일자리 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경영인과 기획자의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 협동조합의 관점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콘셉트 결정 방식은 일반 영리법인과 매우 다르다. 일반 영리기업의 사업방식인 사업 모델을 선정하고 콘셉트를 결정하여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방식의 역순이다. 이해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사체를 이루고 사회문제와 자신의 욕구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시작으로 콘셉트와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에 거버넌스 중심의 지원이 아닌 행정 주도의 방식은 꼭 피해야 할 방법일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 연구 - 연수현
- 한국노동연구원 - 프리랜서들의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 장종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프리랜서 협동조합 Smart 성공이야기 - 신재민



예술인 조합을 통한



예술인 지원정책 연구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정책실
발행인	강현
발행일	2020년 10월 1일
총괄 및 담당	원준호, 이지희
디자인	주식회사 소이정

©경기문화재단

본 보고서에 수록된 이미지와 글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문화재단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H www.ggcf.kr